

# 생활문화 범위 설정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 방안

2021-09

정책연구

The Scope of Culture-into-Life and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Culture-into-Life Centers

노수경  
손유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생활문화 범위 설정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 방안

The Scope of Culture-into-Life and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Culture-into-Life Centers

노수경·손유진





### 연구책임

---

노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

---

손유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생활문화 범위 설정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 방안



## 연구개요





# 1. 서론

##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2014년 이후 문화의 일상화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생활문화 정책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됨
- 생활문화의 개념은 「지역문화진흥법」 상에 근거하고 있으나,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생활문화 정책 사업에서 활용하는 개념으로는 광범위하여 이해와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생활문화센터는 2014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시행 이후 양적 확대가 되고 있으나 건립·조성 및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이므로 정확한 운영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생활문화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정책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둘째, 생활문화센터의 현황을 파악하여 필수 건립 및 조성 기준을 도출함
  - 셋째, 생활문화센터의 조성 유지 및 운영 관리방안을 제언함

##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시공간적 범위
  - 생활문화 개념은 생활문화 정책이 시작된 2014년 이후부터 2021년 현재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생활문화센터는 2020년 12월까지 조성된 시설을 대상으로 함
  - 공간적 범위는 17개 시·도의 생활문화센터 및 소관기관, 정부 지원을 받은 생활문화센터와 운영주체를 포함함

- 내용적 범위
  - 생활문화의 개념 재정립(법적 정의, 정책 지침상의 개념 등)
  - 생활문화센터의 건립·구성 및 운영 기준
  - 생활문화센터의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 2) 연구 방법

- 문헌분석: 법률, 제도, 조작적 정의 등을 분석하고 기존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조사,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등의 문헌 분석으로 개념을 도출함
- 현장조사: 2020년 12월 기준 정부 지원을 통해 건립 및 조성된 생활문화센터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소관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 대국민을 대상으로 2종의 설문조사를 진행함
- 소관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 인터뷰: 현장조사 시 생활문화센터 담당자, 지역주민을 인터뷰 하였으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추진함

## 2. 생활문화 정의 및 생활문화센터 현황

### 가. 생활문화 정의

- 제도적 정의
  - 법적 정의: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에서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활동을 말함
  - 지자체 조례 상 정의: “생활문화예술”과 “생활문화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는 「지역문화진흥법」을 준용하고 있음
- 조작적 정의
  - 생활문화는 자발적 문화 개념으로 ① 전문예술이 아닌 아마추어 예술 및 향유자 중심의 문화활동, ② 문화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수용하는 예술 이외의 장르적 개념으로 접근, ③ 문화의 생활화·일상화, ④ 시민의 주체적·참여적 활동, 총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sup>1)</sup>

〈표 1〉 생활문화 개념(2016)

관점	내용 및 특성
행위자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예술/창작자가 아닌 일반시민/아마추어의 문화활동</li> <li>문화향유, 문화학교, 문화교육 등</li> <li>비전문가의 창작활동</li> </ul>
장르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적·심미적 개념에서 확장된 생활양식 등 다양한 문화활동</li> <li>전통생활문화, 가정생활문화, 정서적 취미활동 등</li> </ul>
공간/시간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시간과 분리된 여가활동으로서가 아닌 일상속, 생활속의 문화활동</li> <li>전문문화공간, 생활문화공간 등 장소 여부는 기준이 아님</li> </ul>
활동의 방식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활동의 방식에서 주체적 활동이 기준</li> <li>창작활동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문화활동 기획과 과정의 주체적 참여가 기준</li> <li>수동적인 문화강좌 등은 문화관람 등의 관점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제외</li> </ul>

자료: 정광렬(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8쪽

■ 사업 추진 시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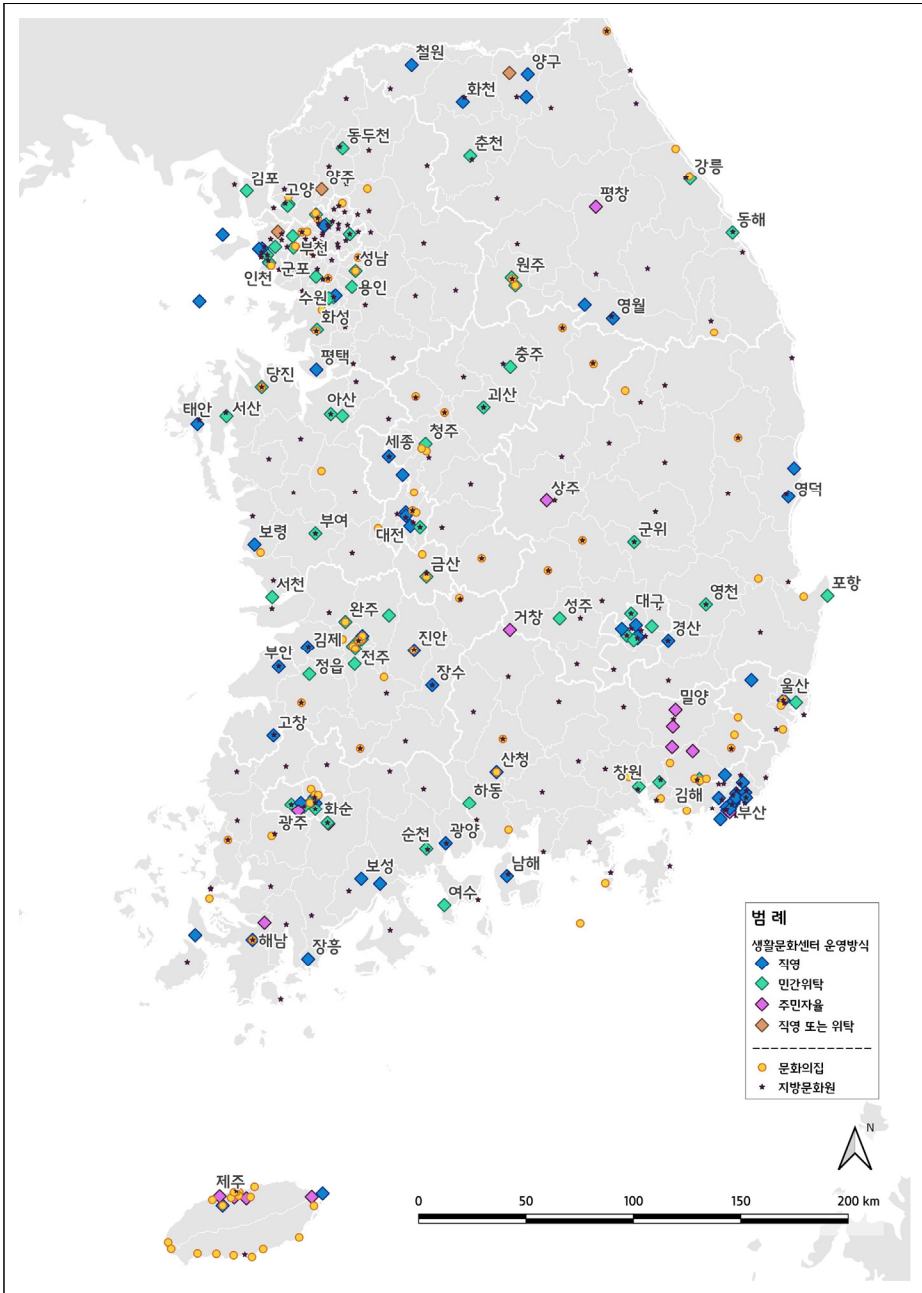
- 문화예술 향유와 예술교육, 여가생활을 포함하는 범위로 파악하거나 동호회, 공동체모임 등으로 한정적으로 구분 짓는 경우로 다양화 되어 있음
- 생활예술, 생활공예, 생활기술, 생활운동, 생활지식/언어, 생활취미/오락, 사회관계활동, 미디어, 기타 등 9개 대분류 아래 31개 중분류로 구분하여 여가생활에 포함된 대다수의 활동이 '생활문화' 범주로 포함 돼 있음

나.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조성 현황

-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를 근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 운영할 수 있음
-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조성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1,154.3억 원이 국고로 지원되었으며 총 339개소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
- 이 중 복합화시설은 190개소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조성된 생활문화센터는 총 149개소로 파악됨
- 149개소 중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등과 함께 설치된 곳은 49개소로 파악됨

1) 정광렬(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7~18쪽

[그림 1] 전국 생활문화센터 / 문화의 집 / 지방문화원 분포도



#### 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

- 2020년까지의 생활문화센터의 유형은 운영환경에 따라 도시형, 농촌형으로 구분되고 공간 형태에 따라 독립형(건물전체형), 공동형(건물 일부형)으로 분류하고 있었음
- 운영형태는 민간위탁, 주민자율, 지자체직영, 혼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분석결과 민간위탁형은 문화원, 문화재단 등 기간 위탁 사례와 민간 조직 위탁으로 세부 유형 구분이 가능함

### 3. 유사 분야 분석

#### 가. 생활 관련 타 분야

- 생활과 관련한 타 분야 사례로는 ‘생활체육’ 분야가 있음
- 「생활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생활체육은 전문적인 활동과는 구분되는 일반인의 일상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체육 활동으로 정의함

#### 나. 유사시설 현황

- 생활문화센터와 유사한 시설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지역문화활동시설’인 문화의 집이 있음
- 유사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가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생활문화시설을 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을 그 밖의 고시 또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함
- 생활문화센터가 함께 조성되는 SOC 사례로 지역자치센터, 마을회관 등이 있음
- 표준-거점형 생활SOC 복합화 시설로는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실내체육관, 다함께 돌봄센터, 주차장 등이 포함됨

## 4.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센터 관련 의견조사

### 가. 대국민 설문조사

-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추진함
- 주요 조사 내용은 문화기반시설 이용 실태와 생활문화센터 이용 경험, 생활문화센터 인지 및 의식 조사,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임
- 주요 조사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음

<표 2> 대국민 설문조사 주요 내용

대분류	주요 내용
문화기반시설 이용 실태와 생활문화센터 이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응답자 중 33%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생활문화센터를 방문하였으며, 9.5%가 2021년에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였음</li> <li>• 2021년도에 가장 방문율이 높은 문화시설은 도서관(38.7%), 영화관(36.3%) 순으로 생활문화센터 방문율과 큰 차이를 보임</li> </ul>
생활문화센터 인지 및 의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 중 52.5%가 생활문화센터를 인지하고 있으며, 그 중 주거지 또는 직장(학교) 근처에 있어서 알게된 비율이 48.2%로 가장 높음</li> <li>• 생활문화센터를 인지한 응답자 중 65.1%가 방문한 적이 있음</li> <li>• 방문자는 1~3회 방문 비율이 81.6%로 장 많았음</li> <li>• 방문 이유는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34.6%로 가장 많았고 공용 공간 이용을 위해서가 33.0%로 뒤를 이음</li> <li>• 전체 응답자 1천 명 중 65.3%가 향후 생활문화센터에 방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li> </ul>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 중 생활문화가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데 64.5%가 동의하였고 내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73.9%가 동의하였음</li> <li>• 또한 생활문화는 혼자하는 문화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60%가 동의하였고, 내가 즐기는 모든 활동이 생활문화에 포함 된다는 데에는 68.2%가 동의하였음</li> <li>• 생활문화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누릴 수 있다는 데에는 66.9%가 동의하였고 생활문화는 적절한 장소가 있어야 누릴 수 있다는 데에는 74.4%가 동의하였음</li> <li>• 생활문화가 예술활동과 다른 개념이라는 데에는 49.8%의 동의율을 보였고 생활문화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도 된다는 데에는 66.0%가 동의함</li> </ul>
생활문화센터 서비스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는 생활문화센터에서 문화예술 교육 서비스가 제공(32.2%)되길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주민 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길 희망(22.5%)하였음</li> </ul>

## 나. 전문가 및 생활문화센터 소관 담당자 설문조사

- 문화기반시설을 연구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교수 등 전문가 집단과 생활문화센터 및 관련 업무를 소관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집단,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운영인력 혹은 위탁운영기관 소속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총 90명이 조사에 응함
- 주요 설문 문항으로는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건립 인식조사, 생활문화센터 서비스 수요 등이 있음
- 주요 조사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음

<표 3> 전문가 및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주요 내용

대분류	주요 내용
생활문화센터 관련 업무 수행 경험 및 방문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의 78.9%가 생활문화 관련 업무 및 연구를 추진한 경험이 있음</li> <li>• 업무 외의 목적으로 생활문화센터에 방문한 비율은 63.3%로 나타남</li> </ul>
생활문화 인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의 법적 정의의 변화 필요성은 66.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생활문화의 장르적 구분의 필요성은 52.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li> <li>• 이와 관련된 개방형 의견으로는 '생활문화 범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생활문화의 개념 확장이 필요하다' '구체적이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li> <li>• 생활문화가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50%가 동의하였고, 내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57.8%로 나타남</li> <li>• 혼자하는 활동도 생활문화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78.9%가 동의하였고 내가 즐기는 모든 취미활동을 뜻한다는 데에는 72.2%가 동의하였음</li> <li>• 생활문화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누릴 수 있다는 데에는 38.9%가 동의하였고,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37.8%로 유사한 비율을 보임</li> <li>• 생활문화를 누리기 위해 적절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48.9%가 동의함</li> </ul>
생활문화센터 서비스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센터가 제공해야하는 서비스로는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습실,회의실 등 공간대여가 28.9%, 카페, 도서관아웃지 등 상시 공간 활용 서비스가 27.8%로 나타남</li> <li>• 문화예술 교육(강의)제공은 11.1%에 그쳐 대국민 설문과는 차이를 보임</li> </ul>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정책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주체로는 공모를 통한 운영주체 선정이 36.7%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지자체 소속 문화기관이 33.3%로 뒤를 이음</li> <li>• 생활문화센터에는 상주관리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94.4%가 동의함</li> <li>• 생활문화센터 건립은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54.4%로 동의(25.6%)하는 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남</li> <li>•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에 관한 정책 개선의 중요성 중에서는 '정부차원의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침 수립'이 73.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 추진'이 83.3%, '상주인력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 추진'이 84.4%로 높은 동의율을 보임</li> </ul>

## 5. 생활문화 정의 및 생활문화센터 기준 도출

### 가. 생활문화 정의

- 생활문화의 법적 정의는 유지하며 생활문화 분야를 통해 창의적으로 생산되는 새로운 문화 장르, 문화 특성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함
- 생활문화에 대한 정책 개념은 기존에 합의되었던 관점에서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여 6개 관점으로 구분하여 정립함
- 장르적 관점은 보존과 진흥이 필요한 문화 및 예술활동을 인정하고 투기, 사행성을 띠 위험이 있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 활동은 제외하며, 지역문화진흥 정책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범주로 기준을 세워 정리함
- 즉, 정책적 개념을 모든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구분 없이 일상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장소의 구분 없이 행하는 융·복합 문화 활동으로 재정립 함

〈표 4〉 생활문화의 정책적 개념 정립

관점 구분	내용 및 특성	
행위자 (대상) 관점 (누가)	모든 국민	
시간적 관점 (언제)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구분 없는 일상성	
공간적 관점 (어디서)	장소의 구분은 없음: 어디서든 가능	
장르적 관점 (무엇을)	문화예술진흥법 상 '예술활동', 공예활동 등 사회 통념상 예술 분야의 범주에 포함되는 융복합 문화 활동 (생활기술, 생활체육, 오락, 여행과는 구분되는 문화활동)	
	대분류	중분류
	생활 예술	미술, 문학, 무용, 댄스, 서양 음악, 전통 음악, 연극, 사진, 만화, 웹툰, 영화, 건축
	생활공예	생활공예
생활지식언어	인문/역사/경제, 언어	
활동방식의 관점 (어떻게)	단순관람이 아닌 참여 문화활동 기획과 과정의 주체가 되어야 함 (전문 예술인을 통한 단순 예술교육 수행은 '교육'의 범주이므로 생활문화 향유가 아닌 '예술교육 참여 활동'임)	
목적의 관점 (왜)	삶의 질 향상	



## 나. 생활문화센터 최소 건립 및 조성 기준

- 생활문화센터의 건립 및 조성 기준은 2021년 현재 반영되고 있는 ‘22년도 생활 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의 안에서 변경하는 방향을 제시함
- 현장조사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도출한 생활문화센터의 4개 유형 구분을 기준으로 유형별 특징을 반영한 필수시설 변경 안을 두 가지 제안함

〈표 5〉 생활문화센터 공간구성 변경(안)

구분	유형 특징	필수시설 변경 1안	필수시설 변경 2안
단독형	유류건물을 단독으로 활용하여 조성되거나 신축으로 전체 공간을 생활문화센터로 건립한 유형 야외공간을 특성화공간으로 조성한 사례가 많은 특징을 가짐	마주침공간 1개소 이상 -가변형 가능, 최소 50㎡ 이상 확보 방음공간 1개소 이상 -최소 30㎡ 이상 확보 마루공간 또는 학습공간 1개소 이상 -가변형 가능, 가변시 최소 30㎡공간 확보	마주침공간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간 대비 8% 이상 확보 방음공간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간 대비 5%이상 확보 마루공간 또는 학습공간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간 대비 5% 확보
문화 복합형	문화관련 시설이 모여있는 형태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등 문화관련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된 유형임 마주침공간, 학습공간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넓은 특징을 가짐	단독형과 동일 ※단, 생활문화센터 전용 공간으로 확보, 타 문화기반시설과 공용 공간 조성 시 인정하지 않음	마주침공간 또는 학습공간 - 가변형 가능,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간 대비 8% 이상 확보 방음공간 -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간 대비 5%이상 확보 마루공간 -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간 대비 5%이상 확보 ※단, 생활문화센터 전용 공간으로 확보, 타 문화기반시설과 공용 공간 조성 시 인정하지 않음
행정 복합형	주민센터, 체육시설, 복지시설, 여성회관 등과 함께 건립 또는 조성된 형태 마주침공간, 학습공간의 활용율이 높으며 방음공간이 미흡할 시 민원 발생율이 높은 특징을 가짐	마주침공간 또는 학습공간 1개소 이상 -가변형 가능, 가변시 최소 50㎡ 이상 공간 확보 방음공간 또는 마루공간 1개소 이상 -최소 30㎡ 이상 확보	마주침공간 또는 학습공간 -가변형 가능,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간 대비 8% 이상 확보 방음공간 또는 마루공간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간 대비 5%이상 확보
기타 복합형	공공시설, 문화시설 회 시설과 함께 있는 형태 근린상가 등과 함께 조성되어 접근성이 높지만 방음, 층간소음 등에 유의한 형태로 조성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음	행정복합형과 동일	행정복합형과 동일

## 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가이드라인은 현재 정부 지침으로 제공되는 것은 없음
- 생활문화센터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운영의 방향성과 시설 설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함
- 기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제공한 가이드라인은 필수요건이 아닌 운영 방향에 대한 컨설팅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임
- 컨설팅을 위한 가이드라인 중 생활문화센터 조성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운영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제안함

〈표 6〉 생활문화센터 운영 최소 가이드라인

운영 영역	세부영역	구체적 실무 영역
운영계획	지역현황 분석	센터 이용자층 분석, 이용자 욕구 조사
	비전 및 전략 수립	센터의 비전과 이행을 위한 전략 수립
	실행계획 수립	세부 프로그램 등 세부계획 수립
	연차별 계획 수립	연차별 추진 계획, 조직개선방안 등 수립
인력	운영조직	기본 조직 구조, 상근조직과 운영위원회
	인력확보 및 관리	자격기준, 채용방법, 직원교육, 직원복지 등
	업무분장	업무분장 내용, 주요 업무
공간운영	기본방향 수립	운영시간, 공간대관 방식, 특성화공간 검토
	시설 안전관리	안전점검, 관리, 보험가입, 화재 및 전염병 예방 등
프로그램	정책프로그램 참여	공모사업 추진
	주민 제안 프로그램	주민 제안 의견 수렴 및 프로그램화 추진
	지역 연계활동	타 기반시설 및 문화 조직과의 협력
홍보	이용자 조사와 개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용자 유치 등
	홍보	홍보 방법, 대상 등 계획 수립
재원조성	예산편성과 수립	예산편성, 예산 수립
	예산 확보	지자체 보조금, 공공기금, 중앙정부 공모사업, 자체수입, 후원금 등
성과관리	성과관리	성과관리 방식, 방법 기획
	피드백	시기 및 방법, 대상 등 검토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2019),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북」, 8쪽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영역”의 틀에서 수정 제안

## 라. 생활문화센터 정책 제도 안 도출

- 생활문화정책과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운영을 도울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이 수립 될 필요성이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문화센터 운영 기반 마련안을 제시함

〈표 7〉 생활문화 정책 및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제도 안

	생활문화센터 등록제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지자체 합동평가	생활문화 성과평가 및 포상제
방안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모든 생활문화센터의 등록을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원기관(예: 지역문화진흥원)이 일정한 평가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 도입.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베키니아 호텔체인 가맹'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 가능	지자체 합동평가 내 지표를 통한 평가	지자체가 수행하는 생활문화 정책과 지역문화진흥원의 공모를 받은 생활문화 프로그램, 생활문화센터를 대상으로 성과평가제도를 실시
장점	문체부 및 중앙정부(생활SOC) 건립 지원을 받은 시설의 모니터링 가능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생활문화센터의 현황까지 범위 확장 가능	건립 및 조성 지원을 받은 시설의 경우 정기적인 인증을 받도록 건립 지원 시 필수 제도로 제안 가능(2년마다 한 번 등) 건립 시 요구되었던 필수공간 등을 유지하는지 모니터링이 가능	생활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정책 전반을 정책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음. 생활문화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정책 전반의 성과 확인 가능	생활문화센터 및 운영주체, 생활문화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문화정책 및 센터 운영의 동력이 될 것
단점	행정 절차 추가로 인해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조성의 동력 저하	건립 및 조성 지원을 받은 시설 중 인증을 원하는 시설에만 적용이 가능	지자체 합동평가의 지표는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함. 생활문화센터와 관련된 개관일, 프로그램 수, 운영 동호회 수, 만족도 등은 지표가 될 수 없음.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지자체의 정책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보완 방안	-	성과대회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참여 동력을 높임	생활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생활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함 초반 지표로 '생활문화 시설(또는 센터) 조성 중 가용'이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수/동호회원의 만족도' 등의 지표를 추가로 하여 지속적인 정량지표 개발이 가능함	지역문화진흥원의 공모사업 대상 기관 및 담당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추진하여 인증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평가 포상제를 도입



---

# 목차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6
<b>제2장 생활문화 정의 및 생활문화센터 현황</b> .....	11
제1절 생활문화 정의	13
1. 제도적 정의	13
2. 학술적 정의	18
3. 사업 추진 시 개념	23
제2절 생활문화센터 현황	30
1. 생활문화센터 조성 근거 및 역할	30
2.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황	34
3.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	52
제3절 유사사례 정의 및 운영 사례	65
1. 생활체육 정의	65
2. 유사시설 현황	66
3. 생활문화 관련 해외사례	95

<b>제3장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센터 관련 의견 조사 .....</b>	<b>103</b>
제1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105
1. 조사 개요	105
2. 문화시설 이용 실태와 생활문화센터 이용 경험	107
3. 생활문화센터 인지 및 의식 조사	108
4.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	116
제2절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126
1. 조사개요	126
2. 생활문화 인식 조사	128
3.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건립 인식조사	136
제3절 시사점 분석	141
1. 생활문화의 정의 및 개념	141
2. 생활문화센터 인지 및 수요	144
3. 생활문화센터 관련 정책 방향	145
<b>제4장 생활문화 정의 및 생활문화센터 정책 방안 .....</b>	<b>147</b>
제1절 생활문화 정의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조성 기준	149
1. 생활문화 정의 및 정책개념 정립	149
2.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건립 기준	155
3. 생활문화센터 운영 기준	163
제2절 생활문화센터 정책 방안	166
1. 타 시설 제도 검토	166
2. 건립 및 조성 정책 방안	179
3. 지속성 담보를 위한 정책 제언	180
<b>제5장 결론 .....</b>	<b>187</b>
제1절 연구 결과	189
1. 생활문화의 정의	189
2. 생활문화센터 최소 기준	190

제2절 정책 과제	193
1.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건립·조성 과제	193
2. 생활문화센터 모니터링 제도	195
3. 연구 한계	197

참고문헌 / 199

ABSTRACT / 203

부록 설문조사 양식 / 207

---

# 표 목차

〈표 1-1〉 생활문화센터 현장조사 개요	6
〈표 1-2〉 자문회의 추진 개요	8
〈표 2-1〉 문화부 생활문화국(1990~1993년) 부서별 분장사항	14
〈표 2-2〉 생활문화 관련 지자체 조례	16
〈표 2-3〉 생활문화의 개념속성 구체화 및 범위한정(조광호 2015: 101)	20
〈표 2-4〉 생활문화 개념의 변화단계(정광렬 2016: 18)	20
〈표 2-5〉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 틀	21
〈표 2-6〉 생활문화의 조작적 정의	22
〈표 2-7〉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	23
〈표 2-8〉 지역문화진흥원 2021년 생활문화사업 사업 개요	24
〈표 2-9〉 생활문화 분야 분류표	26
〈표 2-10〉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중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변경 전·후 비교	31
〈표 2-11〉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 예산 및 규모(2021.1.기준)	32
〈표 2-12〉 생활문화센터 조례의 기본 항목 제안 사항	34
〈표 2-13〉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황(2020.12.기준)	35
〈표 2-14〉 지역별 생활문화센터 건립 특징 분류	37
〈표 2-15〉 전국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	39
〈표 2-16〉 서울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	42
〈표 2-17〉 인천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	43
〈표 2-18〉 대전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	45
〈표 2-19〉 전주·완주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	46
〈표 2-20〉 광주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	47
〈표 2-21〉 대구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	48
〈표 2-22〉 울산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	49
〈표 2-23〉 부산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	50
〈표 2-24〉 제주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	51
〈표 2-25〉 역할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구분(2014년 기준)	52



〈표 2-26〉 생활문화센터 지원 조건 및 공간구성(2021년 기준)	53
〈표 2-27〉 운영환경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구분	53
〈표 2-28〉 공간형태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구분	54
〈표 2-29〉 지역별 생활문화센터 조성 특징 분류	55
〈표 2-30〉 생활문화시설의 분류	67
〈표 2-31〉 문화시설의 분류	68
〈표 2-32〉 공연시설의 분류	71
〈표 2-33〉 전시시설의 분류	73
〈표 2-34〉 도서시설의 분류	74
〈표 2-35〉 도서관 공급목표	74
〈표 2-36〉 지역문화활동시설의 분류	77
〈표 2-37〉 문화 보급·전수시설의 분류	79
〈표 2-38〉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80
〈표 2-39〉 종합시설 및 창작공간	81
〈표 2-40〉 문예회관	82
〈표 2-41〉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83
〈표 2-42〉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84
〈표 2-43〉 생활문화 관련 조례제정 현황	86
〈표 2-44〉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86
〈표 2-45〉 생활문화공간 공급목표	87
〈표 2-46〉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90
〈표 2-47〉 생활SOC 지원 사업 분야	92
〈표 2-48〉 체육시설 조성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92
〈표 2-49〉 국민체육센터 공급목표	93
〈표 2-50〉 실외체육시설 공급목표	94
〈표 2-51〉 표준-거점형 생활SOC 복합화 시설 표준 공간구성(안)	95
〈표 2-52〉 일본 문화예술기본법의 예술 구분	96
〈표 3-1〉 대국민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06
〈표 3-2〉 대국민 설문조사 주요 내용	107
〈표 3-3〉 2019~2021년 문화시설 직접 방문 응답률	108
〈표 3-4〉 생활문화센터 인지도 응답자 현황	109
〈표 3-5〉 생활문화센터 인지 경로 지역별 응답 특징	110
〈표 3-6〉 나이대별 생활문화센터 방문 경험 응답률	111

〈표 3-7〉 생활문화센터 방문 목적	114
〈표 3-8〉 생활문화센터 향후 방문의향 성별, 나이별, 직업별 결과표	115
〈표 3-9〉 생활문화의 정의 구분에 대한 동의를	123
〈표 3-10〉 생활문화 영위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125
〈표 3-11〉 전문가 대상 설문 응답자 특성	127
〈표 3-12〉 전문가 설문조사 주요 내용	128
〈표 3-13〉 생활문화의 법적 정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	129
〈표 3-14〉 생활문화의 장르적 구분 필요성 응답 결과	130
〈표 3-15〉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전체 결과표	141
〈표 3-16〉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전문가 의견	145
〈표 3-17〉 생활문화센터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146
〈표 4-1〉 생활문화의 정책적 개념 정립	150
〈표 4-2〉 문화관련 법률 내 정의 요약	153
〈표 4-3〉 생활문화 장르 분류표	154
〈표 4-4〉 2014년 및 2022년 기준 생활문화센터 지원 조건 및 공간구성	161
〈표 4-5〉 생활문화센터 공간구성 변경(안)	162
〈표 4-6〉 생활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 단계별 방안	164
〈표 4-7〉 생활문화센터 운영 영역	164
〈표 4-8〉 등록제도의 기능과 문제점(박소현, 2012)	166
〈표 4-9〉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등록제도	167
〈표 4-10〉 제1,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개별 요건	169
〈표 4-11〉 인증제도의 개념 및 운영방식	172
〈표 4-12〉 부처별 법정인증제도 현황	172
〈표 4-13〉 문화체육관광부 인증제도	174
〈표 4-14〉 국립박물관 평가지표 체계	176
〈표 4-15〉 공립미술관 평가지표 체계	177
〈표 4-16〉 공립박물관 평가지표 체계	178
〈표 4-17〉 생활문화센터 등록제도 안	181
〈표 4-18〉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안)	183
〈표 4-19〉 생활문화 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안	184
〈표 4-20〉 생활문화 성과평가 및 포상제	185
〈표 5-1〉 생활문화의 정책적 개념 재정립 결과	189
〈표 5-2〉 생활문화 장르적 분류	190

〈표 5-3〉 생활문화센터 공간구성 변경(안)	191
〈표 5-4〉 생활문화센터 운영 최소 가이드라인	192
〈표 5-5〉 생활문화 정책 및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제도(안)	196

---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9
[그림 2-1] 생활문화센터 개념	33
[그림 2-2] 전국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36
[그림 2-3] 전국 생활문화센터 / 문화의 집 / 지방문화원 분포도	40
[그림 2-4] 지역별 생활문화센터 및 문화의 집 분포도	41
[그림 2-5] 서울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42
[그림 2-6] 인천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43
[그림 2-7] 경기북부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44
[그림 2-8] 경기남부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44
[그림 2-9] 대전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45
[그림 2-10] 전주·완주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46
[그림 2-11] 광주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47
[그림 2-12] 대구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48
[그림 2-13] 울산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49
[그림 2-14] 부산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50
[그림 2-15] 제주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51
[그림 2-16] 독립형 조성 사례인 월곶생활문화센터, 상주시생활문화센터	54
[그림 2-17] 공동형 조성 사례인 서산생활문화센터	54
[그림 2-18] 생활문화센터의 12개 유형 분류 방법	54
[그림 2-19] 태안생활문화센터	57
[그림 2-20] 웅천생활문화센터	58
[그림 2-21] 광산생활문화센터	59
[그림 2-22] 영천생활문화센터	60
[그림 2-23] 성주생활문화센터	61
[그림 2-24] 울산 북구생활문화센터	62
[그림 2-25] 서창생활문화센터	63
[그림 2-26] 상주생활문화센터	64

[그림 2-27] Maison de la culture	100
[그림 3-1] 2019~2021년 문화시설 직접 방문 여부	108
[그림 3-2] 생활문화센터 인지도	109
[그림 3-3] 생활문화센터 인지 경로 전체 결과	110
[그림 3-4] 생활문화센터 방문 경험	111
[그림 3-5] 지난 3년간 생활문화센터 방문 횟수	112
[그림 3-6] 생활문화센터 방문 동반자 조사 결과	112
[그림 3-7] 생활문화센터 방문 목적	113
[그림 3-8] 생활문화센터 향후 방문 의향	115
[그림 3-9] 생활문화센터 필요한 서비스 의견	116
[그림 3-10] 생활문화의 지역 및 공동체성 인식 조사 결과	117
[그림 3-11] “생활문화는 내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 중심으로 이뤄져야한다”의 응답 결과	117
[그림 3-12] “생활문화는 내가 즐기는 모든 취미활동이다”의 응답 결과	118
[그림 3-13] “생활문화는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의 응답 결과	119
[그림 3-14] “생활문화는 혼자 활동하는 문화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응답 결과	119
[그림 3-15] 생활문화 시·공간성에 대한 인식	120
[그림 3-16] “생활문화는 적절한 장소가 있어야 누릴 수 있다”의 응답 결과	120
[그림 3-17] “생활문화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누릴 수 있다”의 응답 결과	121
[그림 3-18] 생활문화의 예술성에 대한 인식	122
[그림 3-19] “생활문화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도 된다”에 대한 응답 결과	122
[그림 3-20] 생활문화의 구분에 대한 인식	123
[그림 3-21] “생활문화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누릴 수 있다”의 응답 결과	124
[그림 3-22] 평소 생활문화 영위 여부	125
[그림 3-23] 생활문화의 법적 정의 변화 필요성	128
[그림 3-24] 생활문화의 장르적 구분 필요성	129
[그림 3-25] 전문가 대상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131
[그림 3-26] 전문가 대상 생활문화의 시공간성 인식 조사 결과	131
[그림 3-27] 전문가 대상 생활문화의 예술성 인식 조사 결과	132
[그림 3-28] “생활문화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도 된다”의 전문가 응답 결과	132
[그림 3-29] “생활문화는 예술활동과 다른 개념이다”의 전문가 응답 결과	133
[그림 3-30] 전문가 대상 생활문화의 구분에 대한 응답 결과	133
[그림 3-31] “생활문화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문화활동이다”의 전문가 응답 결과	134
[그림 3-32] “생활문화는 단순 감상이 아니라 직접 활동을 해야한다”의 전문가 응답 결과	134

[그림 3-33] “생활문화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누릴 수 있다”의 전문가 응답 결과	135
[그림 3-34] 전문가 대상 생활문화센터 관련 업무 또는 연구 수행 경험	136
[그림 3-35] 전문가 대상 생활문화센터 방문 여부	136
[그림 3-36] 전문가 대상 생활문화센터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의견	137
[그림 3-37] 전문가 대상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	138
[그림 3-38] 전문가 대상 생활문화센터 정책 방향 의견	139
[그림 3-39] 전문가 대상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 개선 중요성 인식	140
[그림 4-1] 단독형 생활문화센터 사례	157
[그림 4-2] 문화복합형 생활문화센터 사례	158
[그림 4-3] 행정복합형 생활문화센터 사례	159
[그림 4-4] 기타복합형 생활문화센터 사례	160
[그림 4-5] 박물관(미술관) 등록 절차	171

생활문화 범위 설정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 방안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 1. 연구 배경

2014년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생활문화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1년 현재 생활문화 관련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생활문화 정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정책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생활문화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는 정의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명확성이 떨어져 정책사업 추진 근거로서의 미약점이 한계로 대두되어왔다.

정광렬(2016)은 생활문화의 개념이 “활동유형/범주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생활문화 활동의 유형과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sup>1)</sup>고 하였으며, 김나영·유영미(2020)는 “각 문화도시나 생활문화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 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sup>2)</sup>고 하였다. 약 4년 동안 생활문화 정책은 고도화되었으나 여전히 생활문화의 개념 정의에 대한 화두는 남아있는 것이다.

한편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한 대표적인 생활문화 지원 사업이다. 유희공간 리모델링 또는 복합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상적·자발적 생활문화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339개 조성에 지원이 되었고, 7년 동안 투입된 정부 예산은 총 1,154.3억이다. 해당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운영되고

---

1) 정광렬(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쪽 발췌

2) 김나영·유영미(2020), 「생활문화 관련 조례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1호, 379쪽 발췌

있기에 정부예산 수행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성 이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지역문화진흥원을 통해 ‘운영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성비용을 부담하고, 조성 이후의 운영비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되어있어 현시점에서 운영비 혹은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강제할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건립 목적에 맞는 센터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료의 마련이 필요하다. 전 국민 대상으로 생활문화센터 인식조사를 진행해 전체 국민들의 생활문화센터 인지도를 검토하고 생활문화센터가 각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8)<sup>3)</sup>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진다.

첫째, 생활문화의 개념 재정립이다. 기존 법률에서 정의하는 생활문화의 개념과 기타 사업 추진 시 지침으로 제안하는 사업 내 생활문화의 개념 등을 총체적으로 확인하여 생활문화가 어떠한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재정립한다.

둘째, 생활문화의 정의에 근거하여 생활문화센터의 현 위치를 검토하고 필수 건립기준을 도출한다.

셋째, 생활문화센터의 조성 유지 및 운영 관리방안을 제언한다. 생활문화센터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운영권이 있으나, 건립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지 검토한다.

---

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2018). 「2018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조사」. 152쪽 참조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 1. 연구 범위

#### 가. 시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생활문화 정의와 개념의 경우 생활문화 정책이 시작된 2014년 이후부터 2021년 현재까지의 자료를 검토하되 필요시 이전 자료 일부를 대상에 포함한다. 생활문화센터는 2020년 12월 건립 및 운영 중인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공간적 범위는 17개 시·도의 생활문화센터 및 소관기관이며, 여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 지원을 받은 생활문화센터와 운영 주체(시·군·구,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의 집, 민간 위탁기관 등)가 모두 포함된다.

#### 나. 내용적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생활문화의 개념 재정립으로 법적 정의와 정책 지침상의 개념, 고시 및 관련 사업 내 개념이다. 또한 국내외의 유사 개념 사례도 함께 포함한다. 두 번째는 생활문화센터의 건립·운영 기준이다. 생활문화센터의 건립 기준은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펴낸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필요시 2014년~2021년도 가이드라인을 함께 검토하여 향후 생활문화센터의 필수 건립·운영 기준을 도출한다. 세 번째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방안이다. 앞서 재정립한 생활문화 개념을 기반으로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 방안을 분석한다.

## 2. 연구 방법

### 가. 문헌분석

생활문화 범위 설정에 대해 관련 법률 및 제도, 학술적 정의 등을 분석하고 기존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조사,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등의 문헌을 분석한다. 생활과 관련한 타 분야의 정의, 생활문화센터 유사 시설 현황, 통계 등의 문헌검토를 실시한다.

### 나. 현장조사

지역문화진흥원이 파악한 2020년 12월 기준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지역별, 역할별, 운영환경별로 구분하여 현장조사 대상 생활문화센터를 선정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발간한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에 근거하여 건립 및 운영계획 대비 현재 운영 실태, 상주인력 유무, 운영시간과 상시 활용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공공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2020년 이전에 비해 2021년 현재 변화한 운영 현황 등을 함께 파악하였다.

현장조사 대상 생활문화센터는 운영 방식, 건립시기, 조성방식을 고려하여 광역 단위로 1차 설정하였다. 또한 도시권역과 도농복합, 농촌지역을 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배분하였다. 또한 현장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인근 지역에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된 경우 함께 조사하였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으로 운영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하였으나 조사 예정지 인근에 위치할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 미운영 공지 등을 확인하였다. 현장에서는 운영인력, 담당자, 이용자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요청에 따라 면담자는 공개하지 않는다.

〈표 1-1〉 생활문화센터 현장조사 개요

날짜	권역	지역	센터명	비고
2021.3.12.(금)	서울	서울	가산생활문화센터	
	경기	군포시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2021.3.16.(화)	경기	양주시	777 생활문화센터	
2021.3.16.(화)	경상	울산시	울주 생활문화센터	
			중구 생활문화센터	
			북구 생활문화센터	

날짜	권역	지역	센터명	비고
2021.3.17.(수)	경상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2021.3.26.(금)	경기	김포시	월곶 생활문화센터	
2021.3.26.(금)	경기	고양시	아람마당 생활문화센터	
			호수마당 생활문화센터	
2021.4.1.(목)	충청	부여군	부여 생활문화센터	
		서천군	기벌포 생활문화센터	
		보령시	웅천 생활문화센터	
2021.4.2.(금)	충청	태안군	태안 생활문화센터	
		서산시	서산 생활문화센터	
		당진시	당진 생활문화센터	
2021.4.8.(목)	서울	서울시	서대문 천연어울림생활문화센터	
2021.4.8.(목)	경상	상주시	상주 생활문화센터	
		군위군	군위 생활문화센터	
		성주군	성주 생활문화센터	
		영천시	영천문화원 생활문화센터	
2021.4.9.(금)	경상	대구시	달성군 서재행복 생활문화센터	
			행복북구 생활문화센터	
			서구 비산5동 생활문화센터	
			동구 생활문화센터	
2021.4.9.(금)	경기	인천시	동구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미추홀구 학산 생활문화센터 마당	
			중구 칠통마당 생활문화센터	
2021.4.28.(수)	서울	서울시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	
2021.6.15.(화)	충청	세종시	조치원생활문화센터	
			부강생활문화센터	
2021.6.15.(화)	전라	광주	광산생활문화센터	
			서창생활문화센터	
			치평생활문화센터	
2021.6.16.(수)	전라	광주	전일생활문화센터	
			남구생활문화센터	
			농성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서구생활문화센터	
2021.7.2.(금)	경상	창원시	중앙생활문화센터	
			성호생활문화센터	
		김해	다어울림생활문화센터	
2021.7.9.(금)	제주	제주	내도동생활문화센터	
			해안동생활문화센터	
			사평마을생활문화센터	
2021.7.10.(토)	제주	제주	영평하동 알무드내 생활문화센터	
			우도생활문화센터	
			종달리생활문화센터	

## 다. 설문조사

생활문화의 범위와 생활문화센터의 건립·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는 대상을 두 분야로 나누어 실시한다. 첫 번째는 대국민 설문으로 생활문화의 개념에 대한 인식,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인식, 생활문화센터의 활용에 대한 경험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동호회 참여, 여가생활 등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두 번째는 문화기반시설 운영 담당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생활문화의 개념에 대한 인식,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인식, 생활문화센터의 건립과 운영에 대한 의견, 생활문화센터의 문화기반시설로서의 관리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한다.

## 라. 소관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 인터뷰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센터 운영 담당자 및 위탁운영 담당자, 문화재단의 생활문화 관련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생활문화센터 건립의 배경, 센터 운영 방식, 운영의 한계점 등을 청취하고 이용자 실태 등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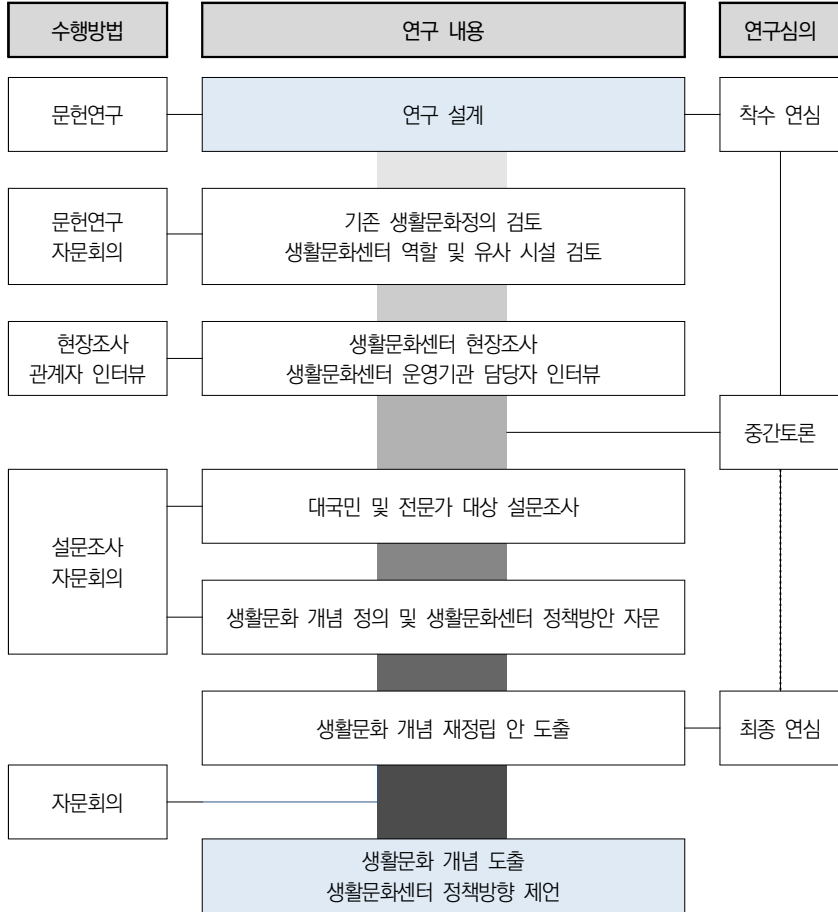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원연합회 등 유사시설 및 관련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시설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또한 생활문화, 생활문화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등록·평가제, 생활문화의 범위 등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 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변화, 정책 방향성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표 1-2〉 자문회의 추진 개요

일자	인터뷰 대상자	비고
2021.2.2.(화)	신효진(지역문화진흥원 문화사업부 부장) 이정진(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 주임) 김슬기(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 주임)	전국 생활문화센터 현황 및 실태조사 추진 방안 공유
2021.2.26.(금)	신효진(지역문화진흥원 문화사업부 부장) 한송이(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 팀장) 이현주(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 주임)	전국 생활문화센터 운영 방식 및 사례 자문
2021.3.16.(화)	정수희(덕성여대 미술사학과 교수)	문헌 상 생활문화 관련 조직적 정의 현황, 일본 사례 자문
2021.4.28.(수)	송은옥(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혁신팀 팀장)	지방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의 역할 구분 및 운영 방안 자문
2021.4.28.(수)	최해재(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생활문화센터 등록 및 인증평가제 자문
2021.5.28.(금)	이병민(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임학순(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생활문화 정의, 생활문화센터 운영방안 자문

일자	인터뷰 대상자	비고
2021.7.23.(금)	강가연(상주생활문화센터 운영인력) 이창진(금수문화예술마을 팀장) 박예진(기벌포생활문화센터 주임)	생활문화센터 운영, 정부 및 지자체 역할, 정책방향 자문
2021.8.25.(수)	김진환(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팀장) 정광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한송이(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 팀장)	생활문화 정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관련 정책 방향 자문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생활문화 범위 설정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 방안

제2장

생활문화 정의 및  
생활문화센터 현황



# 제1절 생활문화 정의

## 1. 제도적 정의

### 가. 법적 정의

생활문화에 대한 법적 정의는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규정돼 있다. 해당 법 제2조(정의)에서는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지역’, ‘주민’, ‘자발적’, ‘일상적’, ‘참여’라는 단어에 주목할 수 있다. 법에 근거한 생활문화의 정의는 공간적 범위를 지역으로, 주체는 주민 그리고 주민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참여를 행하는 문화적 활동으로 보고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나. 정책 흐름과 정의

‘생활문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논의는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5년 문화의 날 기념식에 문화예술의 생활화와 생활의 문화화를 강조하거나, 건전문화 혹은 문화복지의 개념으로 언급되긴 했지만 생활문화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1990년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서 ‘생활문화 진흥’이라는 정책으로 생활문화가 처음 등장하였고, 주로 문화향유와 참여적 문화활동을 강조하였다. 해당 계획에서는 문화나 전통문화의 생활화 전략을 제시하여 전통문화 중 생활문화의 효과적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접근 방법의 개선과 양질의 생활문화 보급

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이동문화 프로그램, 계층별 대상의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기구 설치, 여가문화 프로그램 적극 개발, 지역문화축제 창설 등을 제시하였다.<sup>4)</sup>

같은 해 1월 문화부 분리와 동시에 생활문화국이 신설되었고, 생활문화과, 지역문화과, 박물관과, 문화시설과를 두었다. 생활문화국은 <표 2-1>과 같이 주로 여가문화, 지역문화, 박물관 관리 및 진흥, 문화시설 등을 분장하였다.<sup>5)</sup> 이는 1993년 문화부 생활문화국에서 문화체육부 생활문화국으로 지속하다가 1994년 12월 23일 폐지되었다. 이 시기에는 명확한 생활문화의 개념 규정 없이 예술, 종무, 어문, 출판을 제외한 분야를 주로 다룬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문화부 생활문화국(1990~1993년) 부서별 분장사항

구분		분장사항
생활문화국	생활문화과	1. 국민의 취미·여가문화생활에 관한 사항 2. 공공문화기관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시·도 문화행정에 관한 지도·감독 4.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5. 기업체문화활동의 육성 및 지도 6. 문화단체의 지도·육성 및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 전문요원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전승·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관리소 및 독립기념관의 지도·감독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지역문화과	1. 지역문화발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지방문화시설의 조성·확충에 관한 사항 3. 지역간 문화교류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4. 지방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
	박물관과	1. 박물관 진흥종합계획 수립 2. 공·사립 박물관의 육성·지원 3. 민속박물관등 특수박물관의 지도·육성 4. 국립중앙박물관의 지도·감독
	문화시설과	1. 문화시설의 설치기준 및 기능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건립공사의 지도·지원 3. 문화시설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823#0000>)

생활문화 개념의 경우 학술 연구, 법 개정안, 법제 연구로 제시되었다. 처음으로 생활문화의 정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자 했던 시도는 1994년에 제안된 문화예술진흥법 개

4) 정광렬(2017),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3쪽

5) 1990년 1월 3일 제정된 「문화부직제」 내 생활문화국 내용을 발췌함

정안에서부터다. 해당 개정안은 문화행정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개정안 제2조 2항에서는 생활문화 정의를 “의식주, 생활예절, 전통놀이, 취미여가생활 등의 생활양식으로서 국민의 문화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sup>6)</sup> 이는 생활문화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범위 내의 장르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대상에도 추가하고자 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이며,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추가하기에 기금의 활동 취지 및 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후 2006년 문화기본법안을 제시하고 있는 「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 연구(2006)」에서도 생활문화의 정의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생활문화를 “의·식·주 등 일상 생활에서 공유된 것으로서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생활양식과 관련된 문화”라고 정의 내렸다.<sup>7)</sup> 해당 법안 또한 생활문화 정의를 공식적인 법적 개념으로 규정하지 못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지역 생활권 단위에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문화향수를 높이고 지역 내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목적을 통해 생활문화가 지역사회와 공동체 중심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문화임을 알 수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에는 ‘문화가 있는 삶’이라는 새로운 문화정책의 틀을 ‘자율’, ‘상생’, ‘융합’이라는 3대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문화융성-문화가 있는 삶의 8대 정책 과제에 생활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데, ‘문화참여로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생활 속 문화 확산’과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역문화 정책의 흐름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은 생활문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2015년부터 각 지역에 맞는 생활문

6) 의안정보시스템(문화예술진흥법개정법률안-강용식의원 외 24인 제안)

7) 문화체육관광부(2006), 「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 연구」

화 정책의 시행을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하였다. 법규명은 ‘생활문화 진흥’ 혹은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현재 총 70개의 지자체에서 73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 현황은 <표 2-2>과 같이 나타난다.

<표 2-2> 생활문화 관련 지자체 조례

구분(조례 수)		조례 제정 지자체
특별시, 특별자치도(2)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4)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2개), 인천광역시
도(3)		경기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시(24)	강원도	동해시, 원주시
	경기도	과천시, 고양시, 군포시, 부천시,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충청남도	공주시, 당진시, 보령시
	경산북도	경산시, 포항시
	경산남도	창원시
	전라북도	경주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전라남도	나주시, 순천시(2개)
군(21)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2개), 정선군, 화천군
	경기도	양평군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충청남도	태안군
	경상북도	군위군, 성주군
	전라북도	부안군, 순창군, 청송군
	전라남도	신안군, 완도군, 영광군, 해남군, 화순군
그 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19)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악구, 노원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 달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하구, 수영구, 연제구
	울산광역시	북구,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서구
합계	73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자(2021.09.29.)

생활문화 관련 조례 중 25개의 조례가 정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대부분 상위법과 동일

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생활문화’, ‘동아리’, ‘생활문화예술’, ‘생활문화단체’, ‘생활화시설’의 정의를 담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문화예술’, ‘생활문화단체’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 해당 법 제2조에 나타난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즉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적 활동에 구체적 주체를 부여한 것이다.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정의)

1. “**생활문화예술**”(이하 “생활문화”라 한다)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과 그 결과물의 총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1.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동아리 간 결성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 관련 조례에는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또는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과 같이 문화예술활동을 기능으로 포함하고 있고,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행사’와 같이 예술 장르적 접근으로 기능을 규정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문화활동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같이, ‘생활문화 활동’을 주요 업무로 먼저 기재하고 있으나,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영화, 음악, 무용, 미술 등의 상영 및 공연 전시행사’와 같이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예술장르의 구분을 따르는 형식을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가 예술활동에 더욱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업무 및 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2. 학술적 정의

### 가. 1980~2000년대 생활문화의 정의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는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등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 1980~90년대에 발간된 문헌들에서는 전통·민속적 관점에서 생활문화를 바라보고 있다. 1988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촉대사업프로그램 지침서의 일환으로 발간된 『생활문화 프로그램』에서는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의 문화,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창조하고 추구하는 기본 요소로서의 문화라는 일반적인 성격을 갖고 불리어지기 시작하였을 것”이라고 하며,<sup>8)</sup> 생활문화를 가족의 생활문화, 마을의 생활문화, 세시풍속, 의식주, 전통예능, 대중문화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991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발간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에서는 생활문화를 “조상 대대로 살아온 생활양식 즉,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양식”으로 보고, “우리의 생활양식과 결부된 문화형태를 의미하며 대중문화와 민속문화를 포함한다”고 한다.<sup>9)</sup> 해당 연구에서는 ‘생활문화’, ‘가정생활문화’, ‘전통생활문화’를 혼용하고 있으며, 연구 내용에도 전통적·한국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생활문화의 보급방안으로 반사회를 통한 생활문화 전달’과 ‘지역사회 축제 또는 행사를 통한 생활문화 전달’을 제시하고 있어 이 시기에도 지역사회 네트워크적 측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장섭(1993)은 전통적 생활문화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생활문화의 개념 규정을 비판하며 사회경제적 차이로 생활문화를 동일 범주 안에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생활문화는 “일상생활의 총체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을 포괄하여 인간이 기성과 더불어 시작되는 활동에서부터 식사, 생활활동, 여가활동, 그리고 일과가 마감되는 시간까지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망라한다”는 학술적 측면과 “일상생활중 대표적인 문화적 활동인 의식주생활을 기점으로 비일상적인 문화적 행위인 세시적 의례나 명절문화, 나아가 통과의례적 문화를 전통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하는 영역까지 포함”한다는 정책적 측면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sup>10)</sup>

8) 임광진(1988), 『생활문화 프로그램』, 정음사, 5쪽

9)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1991), 「생활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11쪽

10) 이장섭(1993), 「전통생활문화 실태조사 조사시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제5집, 179~180쪽



이와 같이 1980~2000년대에 논의되었던 생활문화의 개념은 일상생활, 생활양식을 포괄하며, 전통문화, 민속문화와 혼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시풍속, 통과의례, 의식주 문화 등과 같이 생활문화의 장르적 범위를 설정하여 장르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나. 2010년대 이후 생활문화의 정의

2010년에 들어서는 민속문화, 전통문화 등의 장르적 범위는 구분보다는 일상성과 참여성이 강화된 개념이 논의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참여적 문화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생활문화 개념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생활문화시설 및 생활문화단체·동호회 지원 등의 생활문화 정책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양건열(2014)은 생활문화를 공동체 예술(community arts), 참여 예술(participatory arts), 일상 예술(everyday arts), 비공식 예술(informal arts), 자발적 예술(voluntary arts), 아마추어 예술(amateur arts) 등의 다양한 의미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개념으로 보았다.<sup>11)</sup> 또한 생활문화에서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발성·지속성·여가성을 언급하며, 세 가지 요소가 사회자본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생활문화의 발전은 단순관람에서 예술교육으로 나아가 창작·발표, 문화봉사로 전개된다고 하며, 개인의 문화활동은 개인 및 단순 향유에서 공동체와 창조활동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조광호(2015)는 생활문화 개념과 범위를 더욱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표 2-5>와 같이 이론적 개념속성을 구체화한 구분인 생활적 일상성, 자발적 주체성, 장르적 다양성, 문화적 인지성과 실제적 개념전개 범위를 한정하여 사회적, 시간적, 공간적 전개 범위를 구분하였다.<sup>12)</sup> 이와 더불어 지역현장 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생활문화 활동 양상 및 패턴을 파악하여 예술향유적, 자기개발적, 생활교류적 문화활동을 구분했으며, 나아가 장르 범위까지 구분했다. 장르범위는 생활예술, 생활기술, 생활교류, 생활기타로 구분했는데, 문학·미술·음악에서부터 네일아트·꽃꽂이·바리스타, 마을만들기 활동, 전통교육 및 보존까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11) 양건열(2014), 「생활문화형성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역할제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3쪽

12) 조광호(2015),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1쪽

〈표 2-3〉 생활문화의 개념속성 구체화 및 범위한정(조광호 2015: 101)

구분		개념파악	
생활문화 개념정의	이론적 개념속성 구체화	생활적 일상성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함께 발현되는 동시적이며 반복적인 삶의 문화
		자발적 주체성	누군가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문화를 원하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하며 활동하는 주체적 성격이 강한 문화
		장르적 다양성	일반적인 문화예술 활동에서부터 일상에서의 학습 및 기술까지 모두 포괄하면서 생활에 근접되는 다양한 행위를 포괄하여 나타나는 문화
		문화적 인지성	생활문화를 행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이 문화로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본질적 속성을 유지해야만 인지되는 문화
	실제적 개념 전개범위 한정	사회적 전개 범위	지역주민이 사회생활을 영위 및 유지하는 가운데 원하게 되는 문화적 욕구로부터 발생하는 문화활동이어야 함
		시간적 전개 범위	주민 개개인의 생애주기 안에서 동일계열의 내용 범주 및 구조에 의한 활동이 반복적 또는 주기적 활동패턴을 생성하는 문화활동이어야 함
		공간적 전개 범위	지역 주민의 일상적 생활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활동이어야 함

자료: 조광호(2015),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1쪽

정광렬(2016)의 경우 생활문화는 ‘living culture’ 개념이 아닌 특성에 초점을 둔 자발적 문화 개념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생활문화의 개념의 변화단계를 제시하였는데, ① 전문예술이 아닌 아마추어 예술 및 향유자 중심의 문화활동, ② 문화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수용하는 예술 이외의 장르적 개념으로 접근, ③ 문화의 생활화·일상화, ④ 시민의 주체적·참여적 활동, 총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sup>13)</sup> 앞서 조광호가 구분한 장르 범위와 다르게 “수동적인 문화강좌 등은 문화관람 등의 관점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하였다.

〈표 2-4〉 생활문화 개념의 변화단계(정광렬 2016: 18)

관점	내용 및 특성
행위자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예술/창작자가 아닌 일반시민/아마추어의 문화활동</li> <li>문화향유, 문화학교, 문화교육 등</li> <li>비전문가의 창작활동</li> </ul>
장르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술적·심미적 개념에서 확장된 생활양식 등 다양한 문화활동</li> <li>전통생활문화, 가정생활문화, 정서적 취미활동 등</li> </ul>
공간/시간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시간과 분리된 여가활동으로서가 아닌 일상속, 생활속의 문화활동</li> <li>전문문화공간, 생활문화공간 등 장소 여부는 기준이 아님</li> </ul>
활동의 방식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활동의 방식에서 주체적 활동이 기준</li> <li>창작활동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문화활동 기획과 과정의 주체적 참여가 기준</li> <li>수동적인 문화강좌 등은 문화관람 등의 관점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제외</li> </ul>

자료: 정광렬(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8쪽

13) 정광렬(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7~18쪽

최혜자(2018)는 생활문화를 “일상을 기반하고, 스스로의 욕구와 결핍이 동력이 되어 누군가를 만나고 도모하는 활동 전반에서 배어 나오는 문화적 방식”이라고 하였다.<sup>14)</sup> 이와 더불어 생활문화를 이전 사회의 생활문화와 오늘날의 생활문화로 구분하여 이해를 제시했다.

〈표 2-5〉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 틀

구분	이전 사회의 생활문화	오늘날의 생활문화
생활문화의 영역	한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가치 체계에 수용되거나 편입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문화주체로서 표현하는 영역
다른 문화 가치와의 공존	사회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는 문화 이외의 다른 문화와의 공존이 어려움	다양한 문화와의 공존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의 문화수용 능력 요구
주체	사회 구성원	개인(당사자)
생활권	일과 휴식 외의 일상의 영역이 축소	일과 휴식 외 일상의 영역이 확장
표현방식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양식과 방식을 통해 표현	개인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표현/ 표현방식의 다양성 존재

자료: 최혜자(2018), 「지금 다시 짚어보는 생활문화의 개념」, 생활문화 토론회: 지역이 문화다 생활문화와 지역화 발제문, 22쪽

양건열(2014)과 추미경(2018, 2019)은 주민 주체의 일상성과 참여적 문화활동에서 나아가 ‘공동체 내의 구성원’, ‘사람과 공동체 간의 관계맺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지역문화 정책이 지향하는 지역 공동체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문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정책적 측면에서 개념을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민속문화, 전통문화, 의식주문화의 관점에서 생활문화를 해석하고자 했으며,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 2010년대에는 지역, 일상, 참여, 공동체 등이 주요 키워드로 구성된 개념이 주를 이룬다. 또한 법적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이를 지적하고 생활문화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있다.

14) 최혜자(2018), 「지금 다시 짚어보는 생활문화의 개념」, 생활문화 토론회: 지역이 문화다 생활문화와 지역화 발제문, 22쪽

〈표 2-6〉 생활문화의 조작적 정의

출처	생활문화 정의
임광진(1988), 『생활문화 프로그램』, 정음사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의 문화,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창조하고 추구하는 기본 요소로서의 문화라는 일반적인 성격을 갖고 불리어지기 시작하였을 것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1991),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생활양식 즉,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양식으로 보고, 우리의 생활양식과 결부된 문화형태를 의미하며 대중문화와 민속문화를 포함
이장섭(1993), 『전통생활문화 실태조사 조사시안 연구』	생활문화는 의식주와 같은 일상생활 문화(협의)와 함께 비일상적인 명절문화, 통과례, 관습 등의 범위까지 확대
강윤주(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생활예술이란 "시민 혹은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
양건열(2014), 『생활문화형성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역할제고 방안』	생활문화에서는 자발성·지속성·여가성이 중요한 개념으로 사회자본(Social Capital: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의 이해와 발전을 촉진시키는 상호 신뢰, 가치 및 네트워크)을 형성함 생활문화의 발전은 단순관람→예술교육→창작·발표→문화봉사 등으로 전개되면서 개개인들의 문화활동이 개인에서 점차 공동체로, 단순 향유에서 창조활동으로 전환됨
전병태(201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방안』	생활문화예술은 소수의 직업적 엘리트에 의해 독점된 예술이 아닌 시민 혹은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을 의미함
조광호(2015), 『생활문화활동소사를 위한 기초연구』	생활적 일상성, 자발적 주체성, 장르적 다양성, 문화적 인지와 실제적 개념전개 범위를 한정하여 사회적, 시간적, 공간적 전개 범위를 구분 예술향유적, 자기개발적, 생활교류적 문화활동을 구분했으며, 장르범위는 생활예술, 생활기술, 생활교류, 생활기타로 구분(문학·미술·음악에서부터 네일아트·꽃꽂이·바리스타, 마을만들기 활동, 전통교육 및 보존)
정광렬(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지역의 주민 및 문화수요자들이 문화시민으로서의 주체적인 문화적 삶을 위해 일상에서 문화기획과 과정에 자발적·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유/무형의 문화활동
최혜자(2017),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주민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주도적 문화활동
최혜자(2018), 『지금 다시 짚어보는 생활문화의 개념』, 생활문화 토론회: 지역이 문화다 생활문화와 지역화 발제문	일상을 기반하고, 스스로의 욕구와 결핍이 동력이 되어 누군가를 만나고 도모하는 활동 전반에서 배어 나오는 문화적 방식
추미경(2018),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끼리 예술활동은 물론이고 소통의 방식, 삶을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보다 폭넓게 전개될 수 있는 것. 즉 예술활동이라는 대상이 점차 확장하여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적 문화활동으로 확장하였고, 생활예술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생활문화로 점진적 확장이 가능해진 것
추미경(2019),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안』	생활문화는 생활예술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개입하고 장르기반 예술을 넘어 삶의 태도와 기술, 사람과 공동체 간의 관계맺음의 방식과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생활문화의 사전적, 법적, 조작적 정의를 정리해보면 <표 2-7>과 같이 나타난다.

<표 2-7>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

구분	정의
사전적 정의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내는 문화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 내지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뜻한다.
법적 정의	지역의 주인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조작적 정의	1980~2000년대: 민속문화, 전통문화, 의식주문화의 관점에서 생활문화를 해석 2010년대 이후: 지역, 일상, 참여, 공동체 등이 주요 키워드로 구성된 개념

### 3. 사업 추진 시 개념

#### 가. 생활과 문화의 정의

‘문화’는 삶의 양식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뜻하고, ‘생활’은 삶에서 영위하는 모든 행동이라는 의미를 가진다.<sup>15)</sup> 때문에 ‘생활문화’는 그 어떤 문화적 분류체계보다 광의적인 뜻을 포함한다. ‘생활문화’라는 용어가 문화정책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생활문화에서 의미하는 ‘문화’의 영역을 예술활동의 영역으로 좁게 파악하여 문화 예술 교육 분야와는 별개로 일상에서 향유하는 예술활동의 영역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문화의 다양성이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고, 약 6년 동안 다양한 정책사업이 추진되며 생활문화를 영위하는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생활문화에 대해 논의되어 온 보편적 인식은 혼자든 공동체든 상관없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일상성과 장소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에서 영위하는 모든 ‘활동’이 현재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문화활동의 범주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생활문화’라 부를 수 있는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자율성이 생활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뚜렷한 형태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주었고,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광의적 문화 그 자체로 받아들여져

15)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정책의 불필요함으로 다가오게 하였다.

즉, 생활문화는 개념적인 접근으로 문화예술 향유와 예술교육, 여가생활을 포괄하는 범위가 되거나 공동체가 함께하는 문화생활, 동호회, 모임 등으로 한정적으로 인식되어 정책 수혜자의 범위를 매우 좁게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지역문화진흥원이 2021년 현재 생활문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개 주요 사업의 내용에서 드러난다.

〈표 2-8〉 지역문화진흥원 2021년 생활문화사업 사업 개요

번호	사업명	사업개요
1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지역의 자율적이고 자생적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기반 마련</li> <li>• (사업기간) '14년 ~ 단년도 계속사업</li> <li>• ('21예산/회계명) 900백만원/일반회계</li> <li>• (지원대상) 2021년 5월 기준, 개관·운영 중인 생활문화센터</li> <li>• (지원규모) 48개소(총 723백만원) - (일반) 44개소, 643백만원 / (지역형) 4개소, 80백만원</li> <li>• (지원내용) 생활문화센터 기반 지역주민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지원</li> </ul>
2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일상생활의 관계 확장지원 활동을 통한 지역관계망 형성 및 주민의 문화적사회적 참여 활성화</li> <li>• (사업기간) '09년 ~ 단년도 계속사업</li> <li>• ('21예산/회계명) 1,300백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li> <li>• (지원대상) 마을 주민조직 및 문화예술 단체·기관·시설</li> <li>• (지원규모) 45개 단체 내외(총 1,026백만원)</li> <li>• (일반) 23개 단체, 482백만원 / (지역형) 22개 단체(5개 지역), 544백만원</li> <li>• (지원내용) 일상적 삶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주민주도의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li> </ul>
3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의 교류·협력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 및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li> <li>• (사업기간) '14년 ~ 단년도 계속사업</li> <li>• ('21예산/회계명) 397백만원/일반회계(국민문화활동 지원의 '문화가 있는 날 사업')</li> <li>• (지원대상) 생활문화 관련 기관·단체·시설</li> <li>• (지원규모) 45개 단체 내외(총 1,026백만원) - (일반) 28개 단체, 398백만원 / (지역형) 32개 단체 내외, 456백만원</li> <li>• (지원내용) 생활문화 주체 간 교류·협력 활동을 통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li> </ul>
4	전국생활 문화축제 개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국민의 생활문화 인식 제고와 참여 기회 확대</li> <li>• (사업기간) '14년 ~ 단년도 계속사업</li> <li>• ('21예산/회계명) 500백만원/일반회계(국민문화활동 지원의 '문화가 있는 날 사업')</li> <li>• (지원대상) 광역시 및 시군구 기초 단위 지역 *축제 개최 전년도 개최 및 주관단체 선정</li> <li>• (지원내용) 지역 생활문화 및 전국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2021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 지원</li> </ul>

번호	사업명	사업개요
5	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예술동호회의 교류·협력 활동 지원을 통해 참여자의 문화적 역량 강화 및 지역문화 주체로의 성장 도모</li> <li>• (사업기간) '18년 ~ 단년도 계속사업</li> <li>• ('21예산/회계명) 1,800백만원/일반회계</li> <li>• (지원대상) 16개 광역 지역 주관기관(문화재단, 문화원)을 통한 예술동호회 지원</li> <li>• (지원내용) 동호회의 주체적 참여를 담보로 하는 동호회 발표, 전시, 교육, 동호회 간 교류 등 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li> </ul>
6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목적) 지역 현장의 다양한 환경을 반영한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추진으로 건강한 생활문화생태계 조성을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 및 지역 발전 기반 마련</li> <li>• (사업기간) '21년 ~ 단년도 계속사업</li> <li>• (지원규모) 5개 지역(총 1,080백만원) ※ 생활문화공동체(544백만원), 생활문화동호회(456백만원), 생활문화센터(80백만원) 예산에 포함</li> <li>• (지원대상)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공공/민간 단체 및 시설</li> <li>• (지원내용)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생활문화 주제 발굴·확장 활동 지원, 생활문화 자원 간 연계·협력 활동 지원)</li> </ul>

자료: 지역문화진흥원(2021), 「2021년 생활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 사업내용서」

생활문화와 주요 사업 6개 중 절반인 3개 사업이 공동체 형성 및 교류 사업으로 생활문화의 개념을 사회적인 교류와 공동체 확장성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동호회 활성화 사업이 생활문화 동호회, 예술동호회 두 개 분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지원 대상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생활문화 동호회는 민간단체가 대상이 되는 반면 예술동호회는 지역의 주요 문화기관을 통한 지원이다. 예술동호회는 '예술'이라는 범주 내 장르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반면, 생활문화 동호회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광의의 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해당 분야 지원의 가능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주요 예시로는 게임제작 동호회, 드론을 통한 마을지도 만들기 동호회, 민속놀이(웃놀이·민화투 등) 동호회 등이 있다.

한편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에서도 생활문화의 범위에 따른 고충이 따른다. 생활문화의 지역성은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 지역성의 범위는 주관적이며, 지역 발전이라는 평가가 어려운 개념이 합쳐졌을 때에 정부 지원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진다. 즉, 현재까지 논의되었던 생활문화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수록 '생활문화'의 범주는 더욱 광범위해지며 정책지원의 방향성은 이와 비례하여 불투명해지게 된다. 생활문화의 범위에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이 생활문화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한 '생

활문화에 대한 의견'에 '생활문화의 범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1%를 차지하였다. 생활문화의 개념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10%, 생활문화의 개념이 구체적이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8.3%로 낮으며, 전문예술과의 구분이 필요하다(5%), 생활문화 정의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변화가 필요하다(3.3%)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문화진흥원, 기초 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운영자의 인터뷰에서도 '생활문화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이해하는 개념이 모두 다르다', '해당되는 장르와 지원이 불가능한 장르가 명확해야 더욱 공정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생활문화 정의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2014년 이후 생활문화 분야의 생태계를 구축해온 현장 전문가, 문화재단, 문화원 등에서는 생활문화의 행위자적 관점, 공간적 관점, 시간적 관점, 활동 방식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생활문화의 분야 확장과 사업을 추진을 해 왔기 때문이다.

#### 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분야 분류

생활문화 분야의 정책 사업을 주관하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구분하는 생활문화 장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9〉 생활문화 분야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생활 예술	미술	3D, 그래픽디자인 / UI&UX, CI디자인 / 그림그리기 / 모형 도색/ 낙서 / 도예 / 동양화 / 수묵화 / 사군자 / 문인화 / 드로잉 / 소묘 / 스케치 / 디지털 드로잉 / 미술사 / 사물화 / 인물화 / 풍경화 / 추상화 / 서양미술 / 벽화 / 섬유미술 / 수채화 / 파스텔화 / 색칠 / 일러스트 / 삽아트 / 회화 / 캘리그래피 / 기타 미술활동
	문학	분야별 독서 / 독서모임, 교실 등 / 시문학 낭독, 창작 / 작품 집필, 전시 / 저자와의 대화 / 글짓기 / 논술, 스테디 / 서점, 도서관 방문 / 독서온라인활동 / 독서치료 / 독서 프로그램 / 동화, 어린이독서 / 기타문학활동
	무용, 댄스	KPOP / 방송댄스 / 건강댄스 / 다이어트댄스 / 댄스스포츠 / 전통무용 / 현대무용/ 폴댄스/ 댄스동아리 / 모임 / 재즈, 라인, 라틴, 발리, 사교, 살사, 스윙 댄스 / 발레 / 비보이댄스, 팝핀, 힙합 / 세계전통춤 / 기타 무용활동
	서양 음악	오케스트라 / 합주 / 합창 / 오페라감상 / 기타, 피아노, 오르간, 난타, 그림, 리코더, 색소폰, 오카리나, 바이올린, 하모니카 연주 / 우쿨렐레, 플루트, 칼림바, 클라리넷 연주 / 기타 서양음악활동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통 음악	가야금, 거문고 / 판소리, 민요 / 퓨전국악 / 장구, 팽과리, 북, 단소, 소금, 해금, 대금 연주 / 고전, 전통음악 / 기악, 합주 / 트롯트 / 노래교실 / 사물놀이, 풍물 / 기타전통음악활동
	연극	공연기획 / 공연연극 관람 / 극단, 공연활동 / 대본, 시나리오 / 뮤지컬, 희극 / 소극장 연극 / 아동뮤지컬 / 연극평론 / 동아리활동 / 마임 / 영어연극 / 기타연극활동
	사진	DSLR촬영 / 개인, 소장용촬영 / 고공, 문화유적촬영 / 동영상촬영, 편집 / 드론 / 모형 제작 사진촬영 / 사진 교육, 기획, 전시 / 출판, 출사 / 사진리뷰, 블로그, 온라인갤러리 / 동호회활동 / 사진프로그램 / 인물, 사물, 여행지 촬영 / 촬영보조 / 사진테라피 / 풍경, 꽃 등 촬영 / 액자, 앨범만들기 / 기타사진활동
	만화, 웹툰	SNS활동 / 웹툰감상 / 감평, 토론 / 구독, 후원 / 플랫폼에공모 / 고전만화 창작 / 만화리뷰 / 스토리, 기획 / 애니메이션 창작 / 동호회, 웹카페 / 강좌 / 캐리커처 / 기타 만화활동
	영화	시청, ott감상 / 품평, 공유 / 사이트,블로스 / 고전영화 / 공동체 상영회 / 교육자료, 다큐멘터리 제작, 번역 / 생활영상 / 센터, 프로그램 활동 / 스마트폰 영상제작 / 영화, 영상 스튜디오, 이해 / 영화리뷰 / 지역, 홍보영상 제작 / 영화출연, 기획 / 시나리오제작 / 영화, 동영상촬영, 제작 / 영화관이용 / 영화동아리, 모임 / 유튜브 활동, 컨텐츠 편집 / 음향, 특수효과 연출 / 기타 영화활동
	건축	diy조립, 모형제작 / 가구 디자인, 제작, 배치 / 건축강의, 공부 / 건축관련 직업 및 창업 / 건축물감상, 관람, 박람회 / 산업, 실내디자인 / 건축설계, 설계디자인, 도면 / 건축시공, 공사관리, 방수작업 / 건축연구, 토목공학 / 건축판매, 건축해설 / 아웃테리어, 실외 디자인 / 도배 / 도시재생, 환경심리 / 목공, 목재수업 / 인테리어, 리모델링, 디스플레이 / 인테리어사진촬영 / 전원주택 개보수, 짓기 / 정리정돈 / 한옥 인테리어, 한옥체험 / 건축양식 관련 / 기타 건축 활동
생활 공예	생활공예	3D종이, 펜아트 / 페이퍼아트, 종이공예, 북아트 / 캔들만들기, 향기제품 / Diy만들기, 조립 / 주얼리공방 / 전통매듭, 한지공예, 한복 / 건축공예 / 가구제작 / 목공 / 가죽공예 / 조각 / 옷만들기 / 냅킨아트 / 유리공예 / 뜨개질, 미싱, 바느질, 쉼트, 십자수, 서양지수 / 라틴공예 / 풍선, 리본아트 / 소목, 천연염색 / 마크라메 / 미선가, 악세서리 제작 / 보자기아트 / 양모펠트, 워빙 / 비누공예, 비즈공예, 레진아트 / 새활용 / 기타 공예활동
생활 기술	요리	가족을 위한 요리, 생활 요리 / 간편식, 건강식, 김치, 반찬 만들기 / 일식, 중식, 베트남, 양식 등 세계요리 / 한식요리 / 남성요리교실 / 디저트 / 레시피개발, 연구 / 퓨전요리 / 수산물 요리 / 시식 및 제조참여 / 요리 배우기, 자격증, 조리사과정, 학원, 강습, 프로그램 참여 / 블로거, 유튜브채널, 인터넷레시피 / 실버푸드연구 / 음식만들어서 지인 모임 / 요리 봉사 / 기타 요리활동
	제과 제빵	가정용 제빵 / 구움 과자, 제빵, 잼, 케이크 만들기 / 제빵봉사 / 아이들을 위한 제빵, 아버지 교실 / 동호회 / 레시피 개발 / 비건제빵 / 빵먹기, 맛평가 / 세계, 지역특성 빵 만들기 / 조리사 과정, 자격증, 전문학교, 클래스, 문화센터 / 기타 제과제빵 활동
	바리스타, 다도	다도 / 소믈리에 / 바리스타동호회, 모임 / 라떼아트 / 커피 로스팅, 커피만들기 / 바리스타 기술, 자격증, 클래스, 문화센터 / 바리스타 봉사활동 / 커피, 티 식음 / 커피음료의 이해, 공부 / 컵, 커피공예, 예술접목 / 카페 방문 / 카페운영 / 업무 / 커피행사
	미용	미용 자격증 / 네이버 카페 가입 / 네일 강좌, 셀프네일아트, 손발톱 관리 / 문신 / 반영 구화장 / 마사지 / 메이크업 / 속눈썹 연장 / 미용, 헤어, 염색 / 미용 봉사활동 / 시술, 얼굴관리, 피부미용 / 아이 미용 / 애견 미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생활 운동 여행/ 캠핑	요가 (필라테스 등)	관절운동 / 국선도 / 근력, 스포츠요가 / 가구 필라테스 / 기본, 기초, 종합요가 / 하타, 핫, 반야사, 플라잉 요가 / 명상요가 / 발레핏, 스트레칭, 체형교정 / 요가 / 체조 / 동호회 / 건강단련 / 기타요가
	야외 활동	가족여행, 자유여행 / 개인활동 / 걷기, 산책 / 캠핑, 글램핑, 차박캠핑 / 낚시 / 골프 / 썬씨클, 로드라이딩 / 다양한 체험활동 / 야외 활동 동호회, 모임 / 드라이브 / 등산 / 레저활동 / 해외 여행 / 맛집탐방 / 명소, 박물관관람, 답사, 백사 방문, 마을 관광 / 산림욕장 방문 / 여행 블로그 운영 / 행사, 축제 / 기타 야외활동
생활 지식 언어	인문 역사 경제	인문학도서, 역사도서, 고전읽기 / 고궁 역사해설 / 경제 / 국사, 세계사 공부 / 근대 문화해설 / 역사모임, 동아리 / 철학 수강 / 지역역사, 지역문화 탐방 / 고고학, 지리학, 기후환경, 생활문화 연구 / 역사 강의 공부 / 민속 민화, 민속, 전통 놀이, 민속 문화 / 민속, 전통 놀이, 민속문화 / 박물관, 유적지, 문화재, 사찰, 현지 답사 등 / 서포터즈 활동 / 기타 인문역사 활동
	과학	천문, 별자리, 은하, 위성 등 관측, 우주관련 탐구 / 과학관, 박람회 견학활동 / 과학기사 읽기 / 과학놀이, 실험 / 과학동아리, 모임 열지도측정 / 환경보호, 환경운동 / 물리학, 기후학 등 과학 관련 공부, 연구 / 발명, 사업 개발 / 기타 과학활동
	언어	언어강의, 공부, 검정고시 관련 / 국어, 한글교실 / 다문화가정 지원 / 언어 관련 모임, 동호회 / 외국어, 생활 외국어 / 한자 배우기, 교육, 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 필체 연습
	심리 치료	심리 음악, 미술치료 / 개인심리 상담, 치료 / 명상, 힐링을 위한 활동 / 언어치료 / 미술치료사, 상담사 전문 과정 / 상담 모임 / 아동 심리 치료 / 기타 심리 치료 활동
생활 취미 오락	놀이	가족 활동 / 개인 활동 / 게임, 동호회 모임 / 게임(오목, 체스, 바둑 등) / 온라인, 모바일 게임, 블로그 / 당구 / 문화화관 프로그램 / 사교, 교류 / 볼링 / 기타 지도사 자격증 / 기타 놀이활동
	꽃꽂이, 원예	가드닝, 정원가꾸기, 조경 / 꽃꽂이, 플로리스트 / 꽃다발 만들기 / 나무 심기, 가지치기 / 꽃꽂이 관련 동호회 / 드라이 플라워 / 부케만들기, 웨딩플라워 / 플라워공예 / 식물기르기 / 원예 분재, 분갈이 / 유튜브 시청 / 식물관련 자격증 공부
	수집	개인적 수집, 취미활동 / 고전 마을 사진 수집 / 골동품, 고가구, 도자기 수집 / 구권 및 동전, 기념주화 수집 / 문구류, 굿즈 수집 / 레고, 게임 수집, 어덜트 토이, 인형 등 수집 / 담배 수집 / 도서, 고서, 포스터, 우표, 음반 수집 / 술, 와인잔, 병뚜껑수집 / 수집동호회모임 활동 / 소품 수집 / 수집품 전시 및 정리 / 기타 수집활동
사회 관계 활동	삶공유 워크숍, 토론	생활문화, 건강 워크숍 / 공유 워크숍, 소식 공유 / 교육, 복지 분야 / 온라인 워크숍 / 나눔활동, 봉사활동 / 학회, 강의 참가 / 스트레스 해소 활동 / 마을 사회 활동 / 인생 2막 대비 공부 / 블로그 공유, 탐방 / 삶에 대한 주제별 토론 / 청년정책 워크숍 / 기타 토론 / 기타 삶 관련 활동
	마을 활동	교육나눔활동, 마을 문화 학교 / 농사돕기, 텃밭관리 / 도시문화사업 / 마을 꾸미기, 청소, 도심변화 / 마을 봉사활동 / 마을 소개, 운영 / 마을 활동 모임, 동아리 / 마을 이야기, 마을 신문 만들기 / 마을 행사, 축제 / 마을 탐방, 마을 지키기 / 기타 마을 활동
	장터 마켓	개인마켓 / 공유활동 / 기부 및 구매 / 나눔장터, 시민시장, 플라마켓 / 도서기증 / 마을 로컬 푸드마켓, 푸드마켓 / 마켓 관련 봉사활동 / 중고마켓, 구제, 당근 마켓 / 행사
미디어	미디어	유튜브, SNS, 블로그 활동 / UCC공모전 신청 / 감상 / 개인방송, 개인채널 / 교내, 교육 동영상 편집 / 기사, 잡지, 신문 작성 / 뉴스, 신문 분석, 정리, 토론 / 다큐멘터리 제작 / 온라인 동호회 / 동영상, 사진 제작, 촬영, 편집 / 인터넷신문, 언론 / 미디어 서포터즈 활동 / 촬영보조 / 컴퓨터수리 / 포토샵 / 홍보 / 기타 미디어 분야 활동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타	기타 활동	기타 강연, 강의 / 나라별 문화 교류 / 부동산 동호회 / 불꽃놀이 / 자동차동호회 / 육아 관련, 학부모모임 / 정보공유, 친목 / 자원봉사 센터, 에너지 센터 / 대회참여 / 문구정리 / 패러글라이딩 / 안내도우미 / 미술 / 특허권, 출원 / 논문 제작 / 사회체육 / 스포츠 활동 / 종교 활동 / 장애인단체활동 / 기타 생활문화활동
	융합 활동	가상현실, 시 등 융복합 활동 / 홈 트레이닝(운동+음악/영화/오디오북/sns 등) / 정보화 교실 / 반도체 / 문화관광융합활성화 / 자기개발관련 / 농,축산업 체험 / 여러분야융합 활동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2020), 「2020 생활문화 실태조사 및 효과성 연구」 발췌

지역문화진흥원이 분류한 생활문화 장르는 매년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제안된 중분류와 소분류는 생활문화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포함된 것으로 생활문화의 기준점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한 재분류라고 할 수 있다. 이 재분류 체계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문화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고, 생활문화 관련 정책 공모사업 추진 시 대상으로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 제2절 생활문화센터 현황

### 1. 생활문화센터 조성 근거 및 역할

#### 가. 생활문화센터 건립 근거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를 근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 운영할 수 있다. 해당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이에 근거하여 2014년에 첫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유휴 공간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2조 제4조 규정에 의한 ‘생활문화시설’ 중 하나로 동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의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속한 문화시설로 구분되어왔다. 당시 고시에는 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이 포함되었고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로 정의해 왔다. 그러나 2021년 6월 22일 시행령 개정이 되어 동법 시행령 제2조 4항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로 변경되었다.<sup>16)</sup> 그러나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활문화시설 내 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이 포함되는 점은 동일하므로 생활문화시설은 ‘문화시설’과는 구분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16)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 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표 2-10〉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중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변경 전·후 비교

시행령 변경 전	시행령 변경 후
<p>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p> <p>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p> <p>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화관</p> <p>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p>	<p>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p> <p>1. &lt;현행과 같음&gt;</p> <p>2. &lt;현행과 같음&gt;</p> <p>3. &lt;현행과 같음&gt;</p> <p>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p> <p>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p>

#### 나.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 현황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정부의 ‘문화 참여기회 확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지역 내 유휴 공간 및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조성 방향이 구성되었고, 거점형(1,000㎡ 내외), 생활권형(200㎡ 내외)로 구분하여 건립지원이 이뤄졌다. 동아리방, 다목적 공간을 의무시설로 갖추되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미디어실, 공작소, 작은영화관 등 특성화 공간을 구성하도록 장려되었다.

2020년부터는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할 수 있게 되어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복합시설로서 건립이 가능해졌다. 이때 생활문화센터에는 주민공동체공간(마주침공간), 주민자율공간(방음공간, 마루공간 등 연습실), 특성화 시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하며 단일 시설일 경우 국비 40%, 복합시설일 경우 국비 50%(용지매입비 제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성면적은 600㎡를 기준으로 최대 9억 원까지 지원하나 기준 면적 이하 조성 시 비율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2021년 추진 사업(2022년 건립)부터는 필수시설인 마주침 공간 1개소 최소 50㎡, 방음공간 1개소 30㎡ 이상, 마루공간 또는 학습공간 1개소 최소 30㎡ 이상인 세 가지를 미조성하게 될 경우 보조금 전액 반납을 하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생활문

화센터가 갖추어야 할 기본 공간을 명시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건립된 센터의 수 또한 증가하였기에 이에 대한 건립유지 현황과 운영의 안정성 그리고 지속성의 점검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표 2-11〉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 예산 및 규모(2021.1.기준)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 예산 (억원)	1,154.3	96.3	92.4	94.6	63.2	78.3	170.3	559.2
지원 규모	339개소	13개 시·도 34개소	14개 시·도 34개소	16개 시·도 37개소	14개 시·도 22개소	9개 시·도 13개소	14개 시·도 46개소	16개 시·도 152개소

#### 다. 생활문화센터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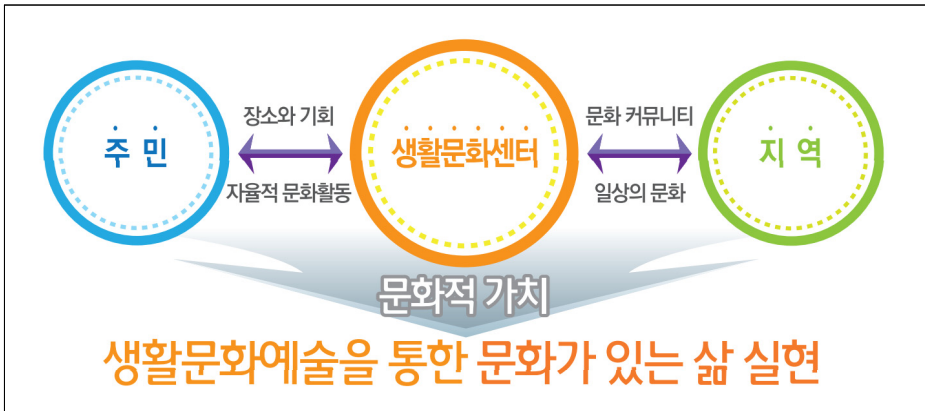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발간한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생활문화센터는 단순히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sup>17)</sup>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동아리 양성 프로그램 및 교류 프로그램 지원, 동아리-지역사회 연계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의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공간은 하나의 용도가 아닌 다목적 공간이어야 하며, 다목적 공간일지라도 지역 특성과 주민 활동의 내용에 맞춰 핵심적인 용도를 정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즉,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라면 주민 자율공간을 여러 개 조성해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발표 공간이 없는 지역이라면 다목적 홀이나 공연장을 확보하는 등의 형식이다.

생활문화센터의 건립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조직, 예산, 공간운영,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계획을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때 운영자는 지역주민들과 만나며 관계를 맺는 사람,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문화센터의 상을 그려가는 사람,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문화센터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은 생활문화센터의 상을 그리는 워크숍, 주민매개자 및 문화자원봉사자 양성, 주민 참여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한다. 즉, 생활문

17) 지역문화진흥원(2019),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북」, 10쪽

화센터는 주민 간의 문화적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추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운영자의 도움을 얻어 주민 간 문화적 네트워크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1] 생활문화센터 개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 「생활문화센터 가이드북」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자체적인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생활문화센터의 정체성과 미션, 역할과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운영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조례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설치근거 및 운영, 설립목적과 역할, 운영계획 수립의 시기, 공간운영 기준, 운영주체 규정, 위탁 운영 시 필요한 사항, 자원 조성 및 지원기준, 주민 참여 및 자원봉사자 기준, 지역 네트워크 관련 사항, 기타 지역특성에 따라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내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제안하며, ‘지역주민 중심’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중심으로 운영목적, 운영시간, 업무, 연간계획, 프로그램 운영, 공간운영, 업무분장,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sup>18)</sup>

즉,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생활문화시설’의 정의인 ‘생활문화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목적과 역할,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18)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2019),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북」 16-17쪽 참고

〈표 2-12〉 생활문화센터 조례의 기본 항목 제안 사항

조례 (규정) 기본 항목	생활문화센터 설치 근거 및 운영
	생활문화센터 설립 목적과 역할
	생활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의 시기
	공간운영 기준 : 공간운영 시간, 공간 및 시설 관리 기준, 공간에 따른 각종 설비 기준, 편의시설, 영리시설, 위생 관리, 안전시설 비치 기준 등
	운영주체 규정 : 운영조직 구성, 이사회 및 주민위원회 구성, 운영자에 대한 세부 기준(수, 임기, 신분 등), 보수규정, 재교육 및 복지규정 등
	위탁운영 시 필요한 사항
	재원 조성 및 지원 기준
	주민 참여 및 자원봉사자 기준
	지역 네트워크 관련 사항
	기타 지역특성에 따라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2019),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북」, 16쪽

## 2.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황

### 가.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황

2014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정부 보조사업 지원을 통해 건립된 생활문화센터의 수는 338개소다. 이중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원이 파악한 시설 수는 190개소이며, 이는 ‘복합화시설’로 건립된 센터를 제외한 숫자이다. 190개소 중에서도 2020년 12월 기준으로 개관하여 운영 중인 센터의 수는 149개소로 파악된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문화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일시 중단된 사례로 사업추진은 지속할 계획이나 조성 완료 시점을 늦추거나 시설은 완공되었으나 개관 시점을 늦추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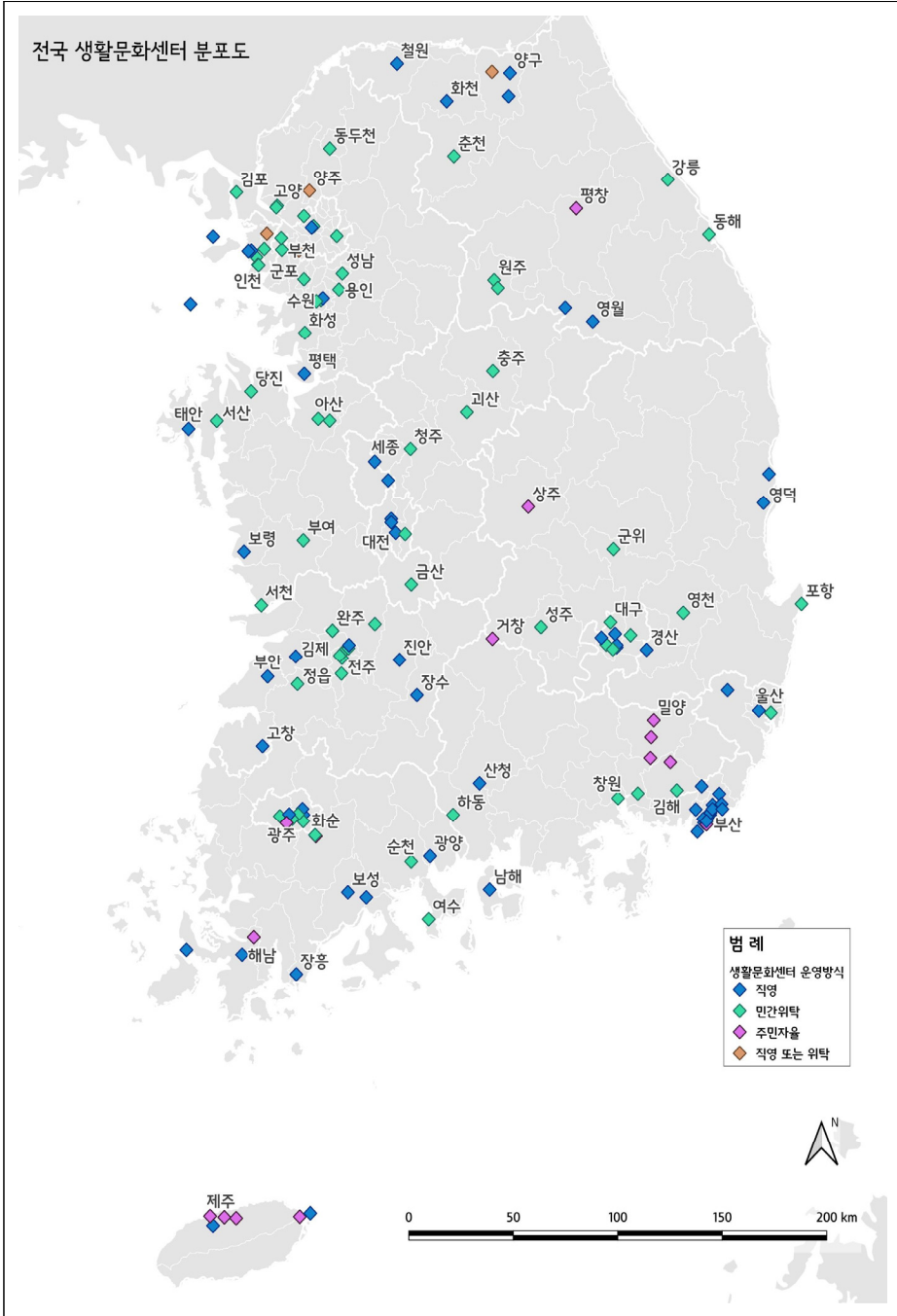
즉, 2020년 12월 기준으로 338개 건립 및 건립예정 생활문화센터 중 운영현황이 파악되는 곳은 149개소이다.



〈표 2-13〉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황(2020.12.기준)

연도 지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건립 센터 합계	복합화 시설 제외합계	개관 센터 수
서울	0	1	2	0	0	4	10	17	6	5
부산	3	3	7	1	1	6	7	28	21	18
대구	2	3	1	1	3	1	0	11	12	8
인천	1	2	3	2	0	2	8	18	11	10
광주	2	1	1	3	1	0	5	13	8	8
대전	1	0	1	1	0	1	12	16	5	4
울산	0	2	1	0	0	0	6	9	5	3
세종	0	0	1	1	0	0	2	4	2	2
경기	6	3	2	3	2	5	21	42	22	15
강원	2	5	1	1	2	8	13	32	17	13
충북	1	2	0	0	0	3	3	9	5	3
충남	3	2	2	1	1	3	14	26	11	9
전북	5	4	3	2	1	3	10	28	17	15
전남	4	1	2	3	0	2	11	23	14	11
경북	3	0	3	2	1	3	12	24	11	8
경남	1	3	4	1	1	4	16	30	15	11
제주	0	2	3	0	0	1	2	8	8	6
계	34	34	37	22	13	46	152	338	190	149

[그림 2-2] 전국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 나. 지역별 조성 특징

생활문화센터의 건축물 유형은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건립한 사례가 100건으로 유휴 공간을 활용한 사례 48건 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건립 유형은 거점형, 생활권형, 준거점형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으나, 준 거점형은 실제 표기한 사례가 없었다. 상대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의 수가 적은 시 이하 단위 도시에는 거점형 시설의 건립 비중이 높았고, 도시의 규모가 크고 거주자가 밀집한 곳일수록 생활권형 시설 건립 비중이 높았다. 또한 이러한 구분 없이 설립된 센터도 15개소가 있었다.

〈표 2-14〉 지역별 생활문화센터 건립 특징 분류

	개관 센터 수	건축물 유형			건립 유형		
		유휴공간 활용	기존시설 이용	혼합형	거점형	생활권형	구분없음
서울	5	3	2	-	2	1	2
부산	18	5	13	-	5	9	4
대구	8	2	6	-	3	5	-
인천	10	2	8	-	3	5	2
광주	8	2	6	-	5	3	-
대전	4	-	3	1	2	1	1
울산	3	2	1	-	1	2	-
세종	2	-	2	-	-	2	-
경기	15	6	9	-	9	6	-
강원	13	5	8	-	6	5	2
충북	3	3	-	-	2	1	-
충남	9	1	8	-	4	4	1
전북	15	2	13	-	7	8	-
전남	11	5	6	-	3	7	1
경북	8	5	3	-	5	3	-
경남	11	5	6	-	1	9	1
제주	6	-	6	-	-	5	1
계	149	48	100	1	58	76	15

## 다. 유사시설 비교 분석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복합시설의 기능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선행되어 개설된 대표 시설로 문화의집이 있다. 문화의집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근거하여 “지역문화활동시설”로 구분되지만 조성 목적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생활문화센터와 유사하다. 한편 비교 분석 대상으로 지방문화원도 포함하였다.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별도의 운영 목적을 지녔으나, 생활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는 데 주요한 의미가 있다. 즉, 지방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가 동시에 역할을 하는 곳을 확인함으로써 복합화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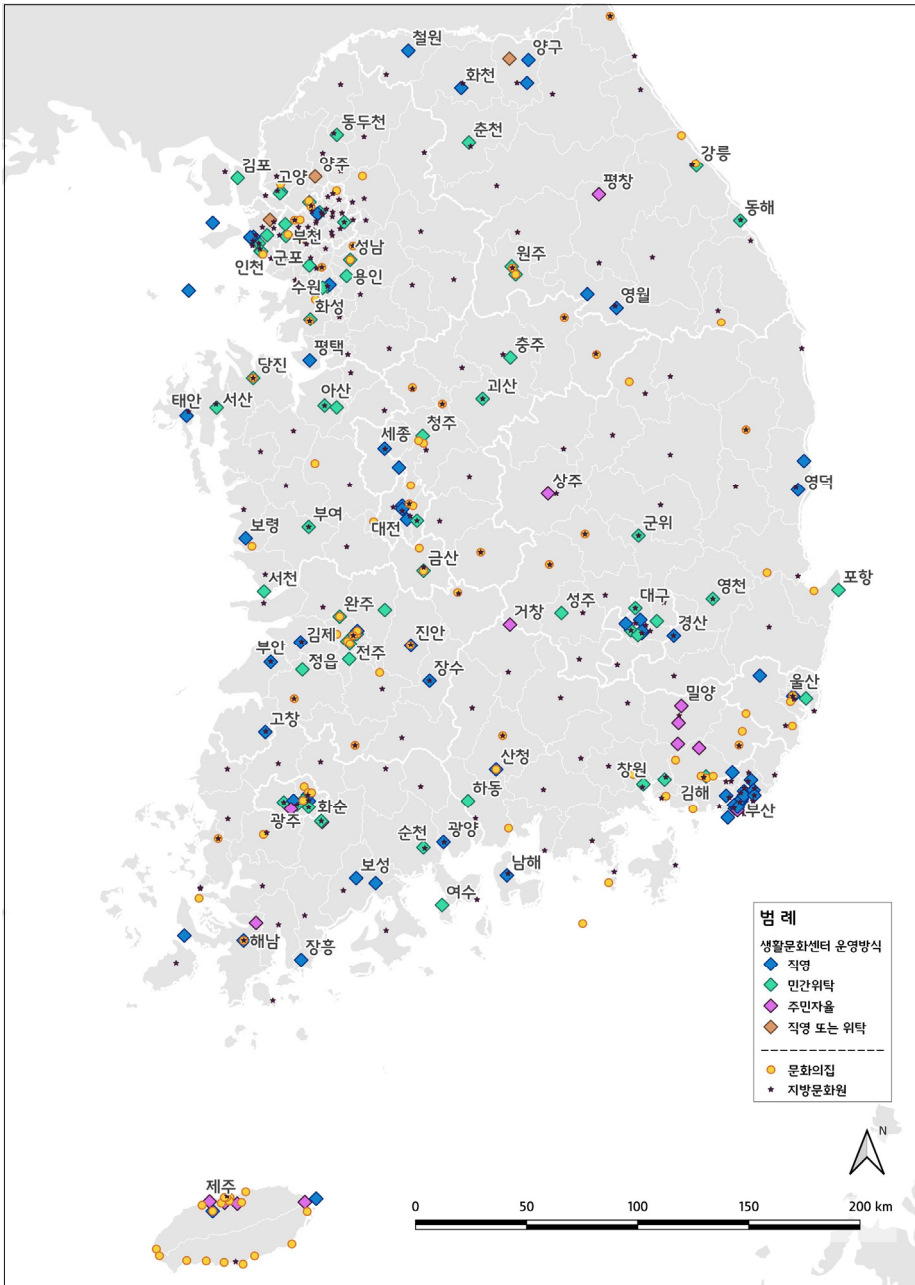
각 시설의 기준은 각 2021년 6월 기준이며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문화의집은 (사)한국문화의집협회가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현황을 ‘2020 문화기반시설 총람’ 과도 비교한 결과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기준 149개소였으나 총람에는 129개소로 조사 이후 약 20개소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화의집은 협회 홈페이지 상으로는 102개였으나 총람에는 101개소로 1개의 차이를 보였는데 ‘산청문화의집’이 총람에는 누락됨을 확인하였다. 지방문화원은 각 시군구별 1개소씩 있어 총 230개소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2020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생활문화센터와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이 함께 조성된 사례 분석은 주소 기준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생활문화센터와 문화의집이 함께 조성된 지역은 광주,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제주에 각 1개소가 있었고 전북이 4개소로 가장 많았다. 생활문화센터와 지방문화원이 함께 조성된 곳은 서울, 인천, 대전, 부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이 각 1개소씩 있었고 광주와 대구는 각 3개소씩, 충남과 경북은 각 2개소로 총 18개소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문화센터와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총 세 개 시설이 함께 있는 사례는 충남, 전남이 각 1개소씩 있었고 전북이 2개소로 총 4개 지역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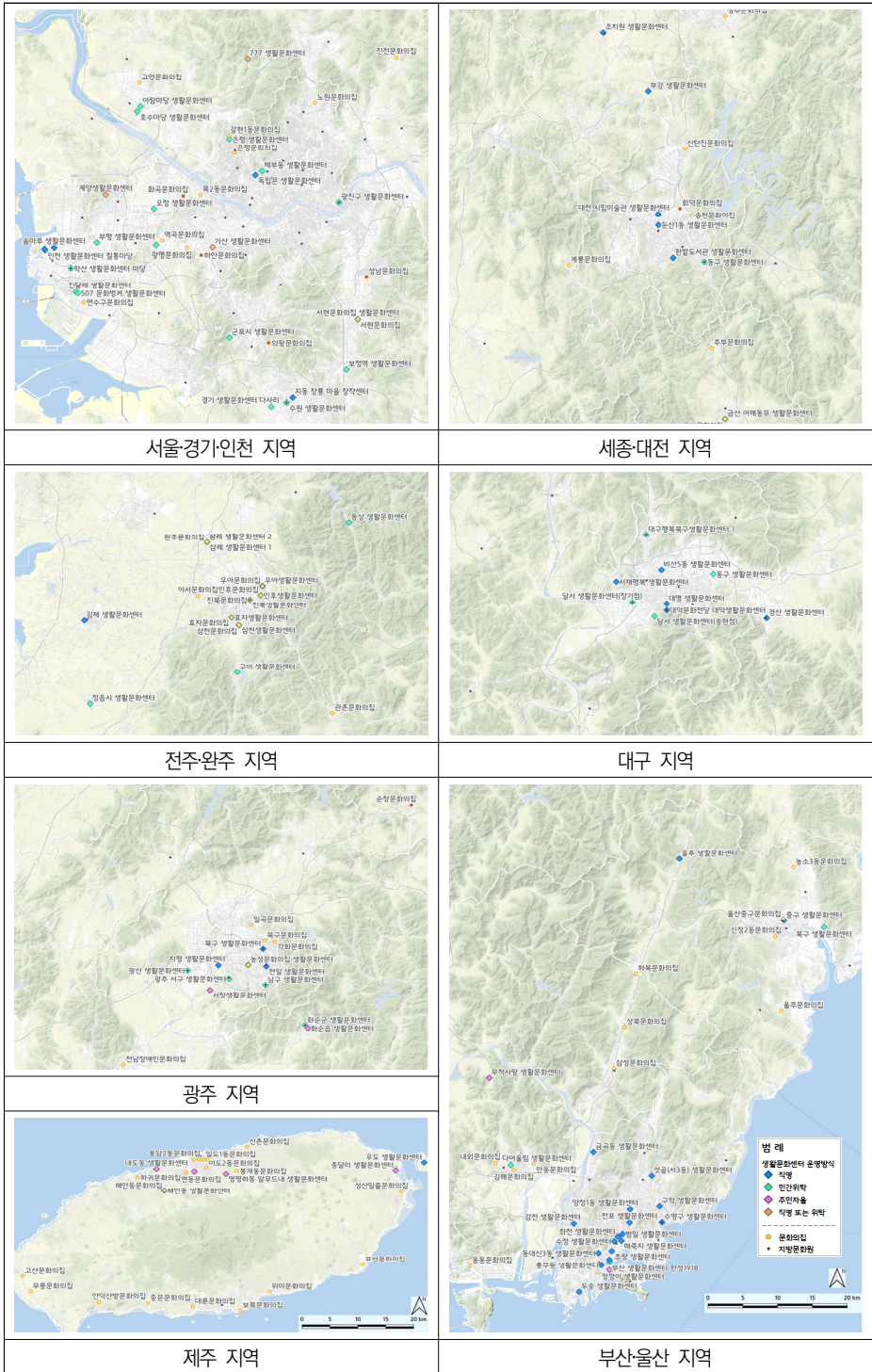
〈표 2-15〉 전국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

시도	시설구분				시설이 함께 설치된 곳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계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생활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계
서울	5	5	25	35	-	1	1	-	2
인천	10	1	10	21	-	1	-	-	1
세종	2	-	1	3	-	-	-	-	0
대전	4	3	5	12	-	1	1	-	2
광주	8	4	5	17	1	3	-	-	4
대구	8	-	8	16	-	3	-	-	3
울산	3	4	5	12	-	-	-	-	0
부산	18	-	15	33	-	1	-	-	1
경기	15	10	31	56	1	1	4	-	6
강원	13	6	18	37	1	-	2	-	3
충북	3	7	11	21	-	1	3	-	4
충남	9	6	15	30	1	2	-	1	4
전북	15	12	14	41	4	1	2	2	9
전남	11	4	22	37	-	1	1	1	3
경북	8	6	23	37	-	2	2	-	4
경남	11	15	20	46	1	-	1	-	2
제주	6	19	2	27	1	-	-	-	1
계	149	102	230	481	10	18	17	4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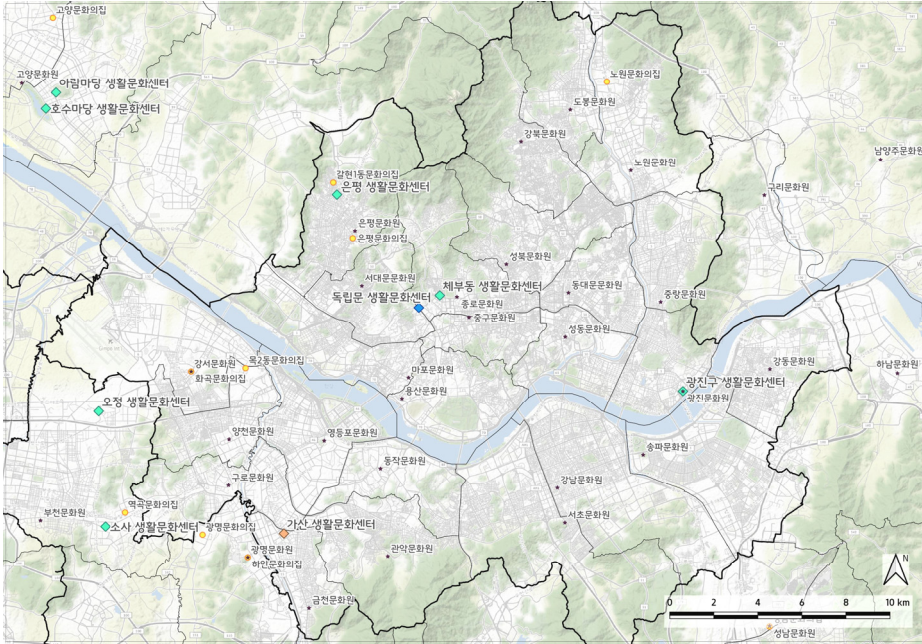
[그림 2-3] 전국 생활문화센터 / 문화의 집 / 지방문화원 분포도



[그림 2-4] 지역별 생활문화센터 및 문화의 집 분포도



[그림 2-5] 서울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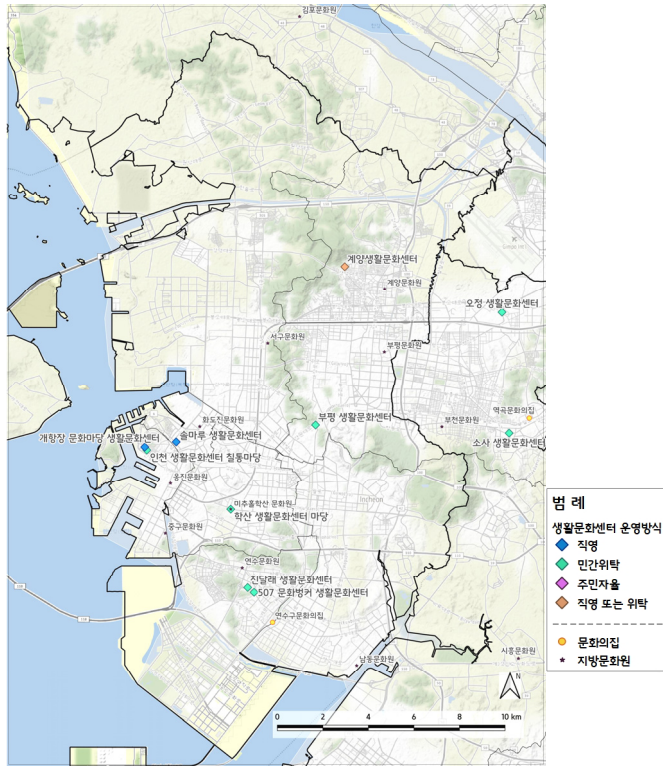
<표 2-16> 서울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

시도	시설구분				시설이 함께 설치된 곳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계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2곳)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2곳)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2곳)	생활+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3곳)	계
중로구	1	-	1	2	-	-	-	-	0
광진구	1	-	1	2	-	1	-	-	1
금천구	1	-	1	2	-	-	-	-	0
은평구	1	2	1	4	-	-	-	-	0
서대문구	1	-	1	2	-	-	-	-	0
강서구	-	1	1	2	-	-	1	-	1
노원구	-	1	1	2	-	-	-	-	0
양천구	-	1	1	2	-	-	-	-	0
그외(17개구)	-	-	17	17	-	-	-	-	0
계	5	5	25	35	0	1	1	0	2

※ 시설이 함께 설치된 곳은 광진구 생활문화센터+광진문화원, 화곡문화의집+강서문화원 등 2곳



[그림 2-6] 인천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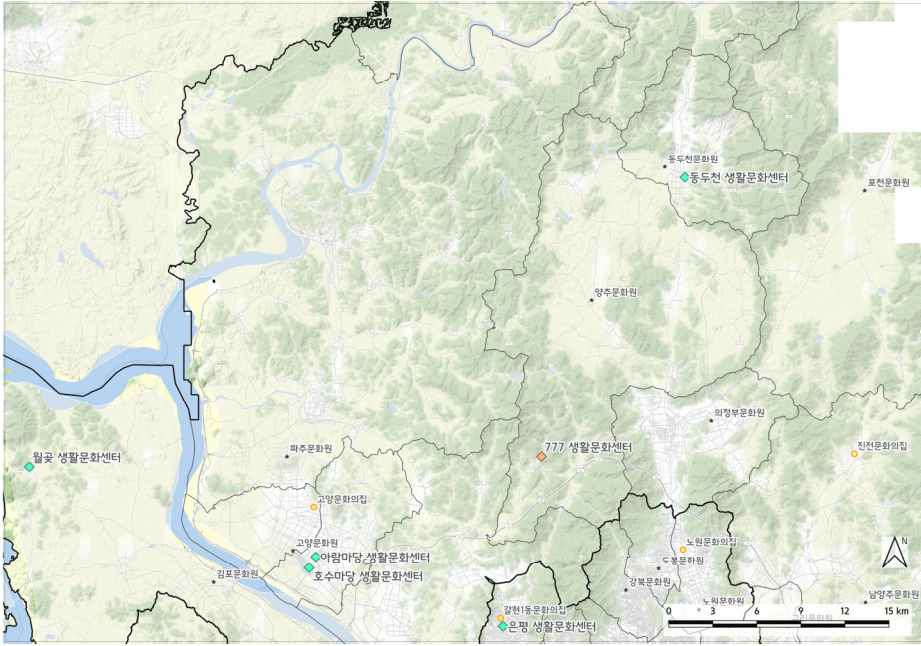


〈표 2-17〉 인천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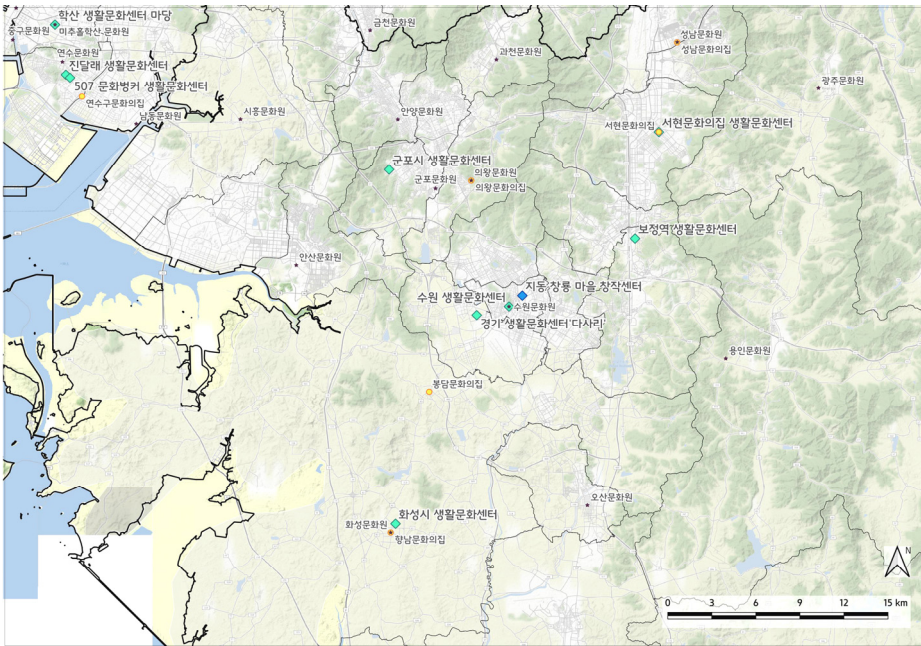
시도	시설구분				시설이 함께 설치된 곳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계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2곳)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2곳)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2곳)	생활+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3곳)	계
계양구	1	-	1	2	-	-	-	-	0
미추홀구	1	-	1	2	-	1	-	-	1
동구	1	-	1	2	-	-	-	-	0
중구	2	-	1	3	-	-	-	-	0
부평구	1	-	1	2	-	-	-	-	0
연수구	2	1	1	4	-	-	-	-	0
옹진군	2	-	1	3	-	-	-	-	0
그 외(3개구)	-	-	3	3	-	-	-	-	0
<b>계</b>	<b>10</b>	<b>1</b>	<b>10</b>	<b>21</b>	<b>0</b>	<b>1</b>	<b>0</b>	<b>0</b>	<b>1</b>

※ 시설이 함께 설치된 곳은 학산 생활문화센터+미추홀학산문화원 1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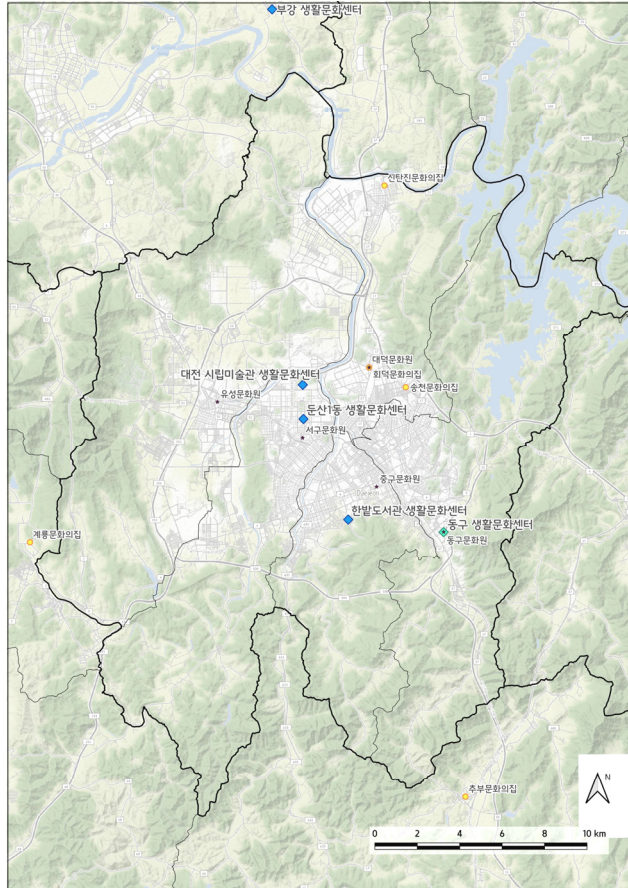
[그림 2-7] 경기북부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그림 2-8] 경기남부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그림 2-9] 대전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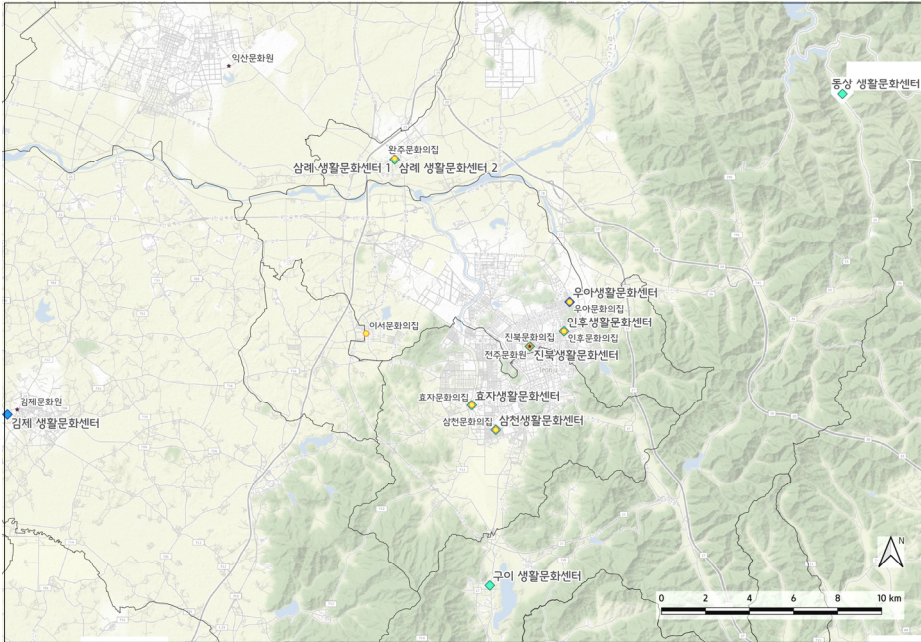


<표 2-18> 대전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

시도	시설구분				시설이 함께 설치된 곳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계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2곳)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2곳)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2곳)	생활+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3곳)	계
서구	2	-	1	3	-	-	-	-	0
중구	1	-	1	2	-	-	-	-	0
동구	1	-	1	2	-	1	-	-	1
대덕구	-	3	1	4	-	-	1	-	1
유성구	-	-	1	1	-	-	-	-	0
계	4	3	5	12	0	1	1	0	2

※ 시설이 함께 설치된 곳은 동구 생활문화센터+동구문화원, 회덕 문화의집+대덕문화원 등 2곳

[그림 2-10] 전주·완주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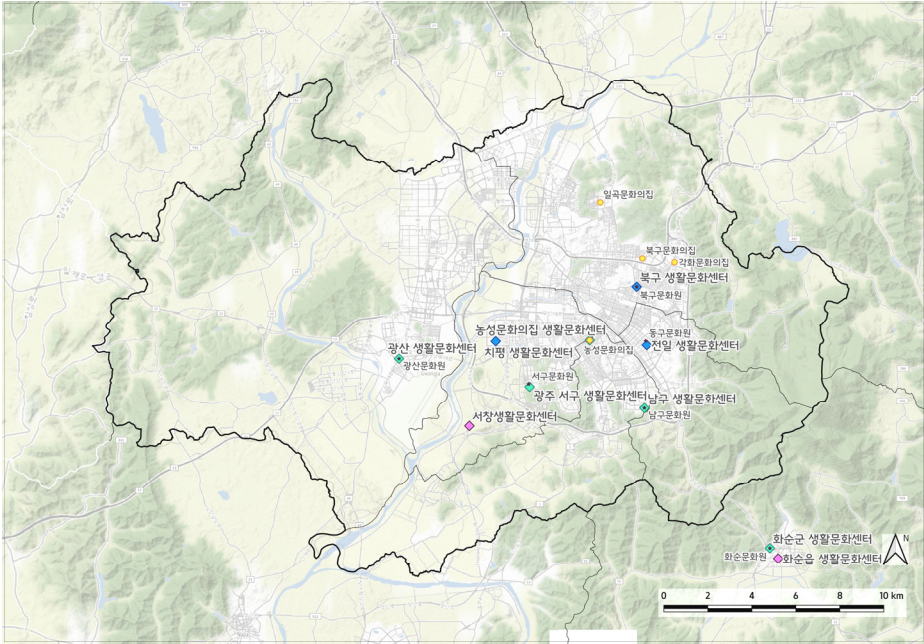


<표 2-19> 전주·완주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

시도	시설구분				시설이 함께 설치된 곳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계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2곳)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2곳)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2곳)	생활+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3곳)	계
전주시	5	5	1	11	4	-	-	1	5
완주군	4	2	1	7	-	-	-	1	1
계	9	7	2	18	4	0	0	2	6

※ 시설이 함께 설치된 곳은 삼천 생활문화센터+삼천문화의집, 호자 생활문화센터+호자문화의집, 인후 생활문화센터+인후문화의집, 우아 생활문화센터+우아문화의집, 진북 생활문화센터+진북문화의집+전주문화원, 삼례 생활문화센터1,2+완주문화의집 등 6곳

[그림 2-11] 광주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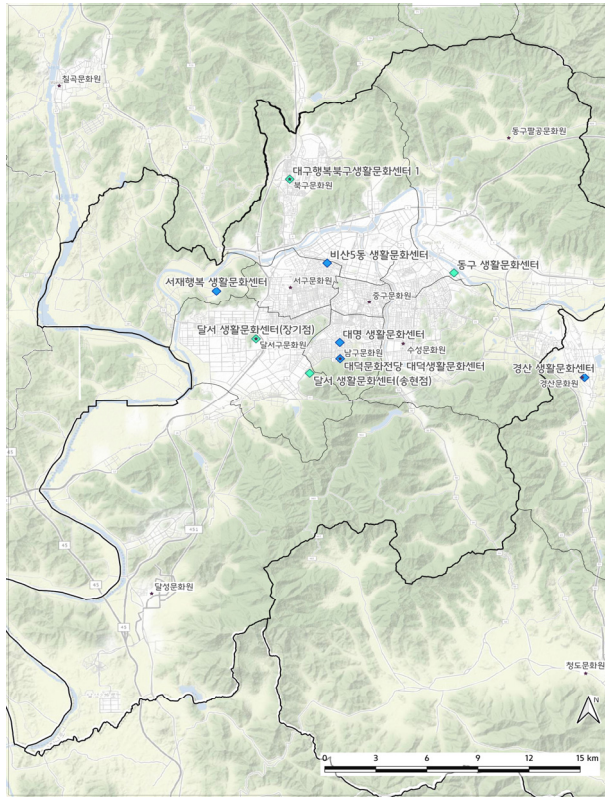


〈표 2-20〉 광주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

시도	시설구분				시설이 함께 설치된 곳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계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2곳)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2곳)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2곳)	생활+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3곳)	계
동구	1	-	1	2	-	-	-	-	0
광산구	1	-	1	2	-	1	-	-	1
남구	1	-	1	2	-	1	-	-	1
북구	1	3	1	5	-	1	-	-	1
서구	4	1	1	6	1	-	-	-	1
계	8	4	5	17	1	3	0	0	4

※ 시설이 함께 설치된 곳은 광산 생활문화센터+광산문화원, 남구 생활문화센터+남구문화원, 북구 생활문화센터+북구문화원, 농성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농성문화의집 등 4곳

[그림 2-12] 대구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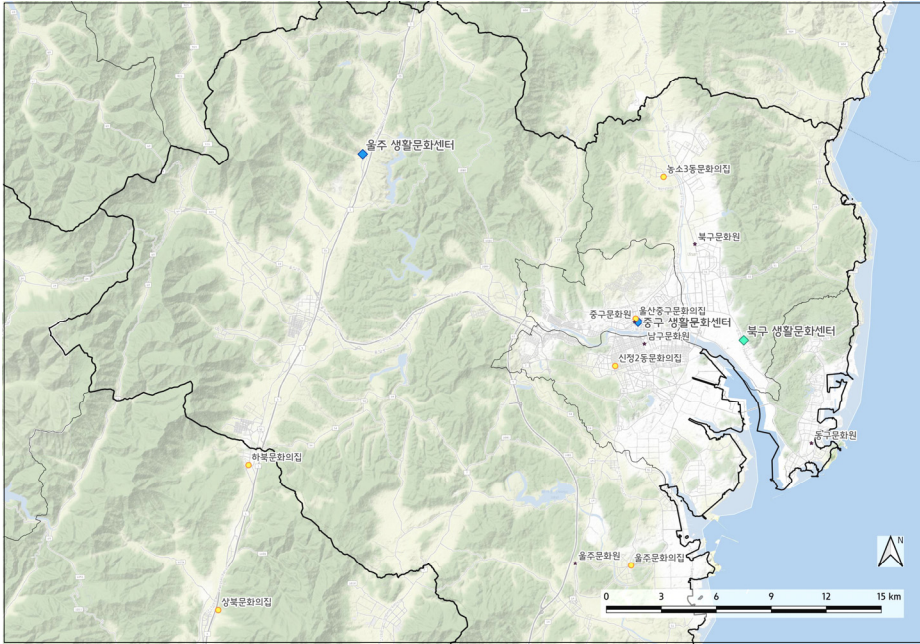


<표 2-21> 대구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

시도	시설구분				시설이 함께 설치된 곳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계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2곳)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2곳)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2곳)	생활+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3곳)	계
남구	2	-	1	3	-	1	-	-	1
달서구	2	-	1	3	-	1	-	-	1
북구	1	-	1	2	-	1	-	-	1
서구	1	-	1	2	-	-	-	-	0
동구	1	-	1	2	-	-	-	-	0
달성군	1	-	1	2	-	-	-	-	0
중구	-	-	1	1	-	-	-	-	0
수성구	-	-	1	1	-	-	-	-	0
계	8	0	8	16	0	3	0	0	3

※ 시설이 함께 설치된 곳은 대덕문화전당 대덕생활문화센터 + 남구문화원, 달서 생활문화센터 + 달서구문화원, 대구행복복구 생활문화센터 + 북구문화원 등 3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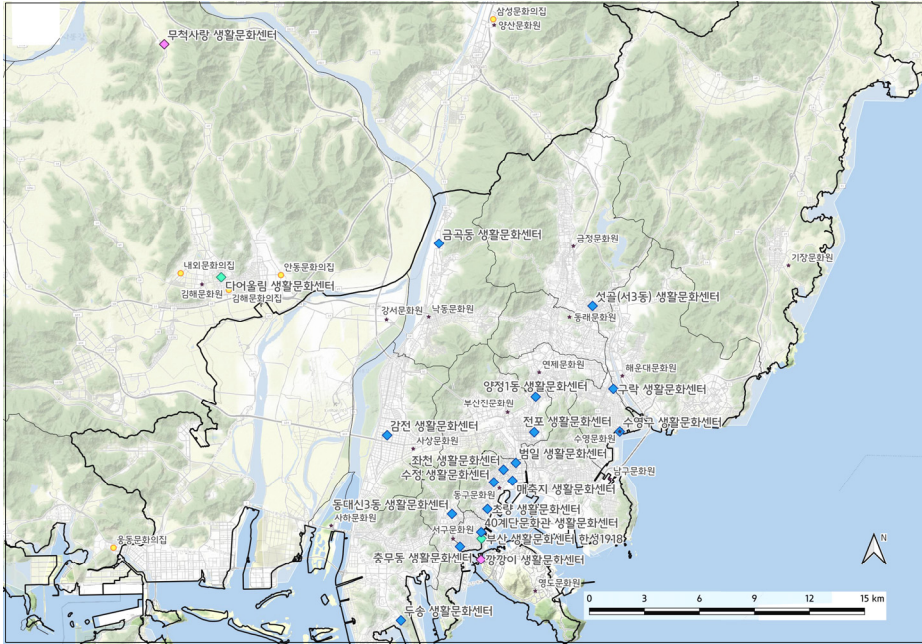
[그림 2-13] 울산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표 2-22〉 울산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

시도	시설구분				시설이 함께 설치된 곳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계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2곳)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2곳)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2곳)	생활+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3곳)	계
북구	1	1	1	3	-	-	-	-	0
중구	1	1	1	3	-	-	-	-	0
울주군	1	1	1	3	-	-	-	-	0
남구	-	1	1	2	-	-	-	-	0
동구	-	-	1	1	-	-	-	-	0
계	3	4	5	12	0	0	0	0	0

[그림 2-14] 부산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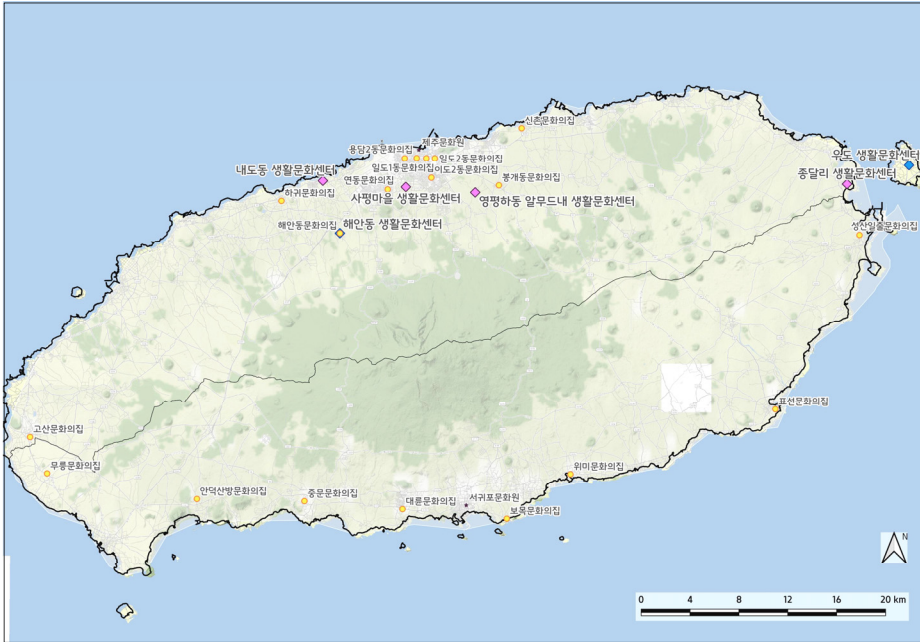
<표 2-23> 부산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

시도	시설구분				시설이 함께 설치된 곳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계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2곳)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2곳)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2곳)	생활+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3곳)	계
금정구	1	-	1	2	-	-	-	-	0
중구	2	-	1	3	-	-	-	-	0
동구	5	-	1	6	-	-	-	-	0
사상구	1	-	1	2	-	-	-	-	0
사하구	1	-	1	2	-	-	-	-	0
부산진구	2	-	1	3	-	-	-	-	0
북구	1	-	1	2	-	-	-	-	0
서구	2	-	1	3	-	-	-	-	0
수영구	2	-	1	3	-	1	-	-	1
영도구	1	-	1	2	-	-	-	-	0
그외(5개구)	-	-	5	5	-	-	-	-	0
계	18	0	15	33	0	1	0	0	1

※ 시설이 함께 설치된 곳은 수영구 생활문화센터+수영문화원 1곳



[그림 2-15] 제주 생활문화센터 분포도



<표 2-24> 제주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시설 현황

시도	시설구분				시설이 함께 설치된 곳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계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2곳)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2곳)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2곳)	생활+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3곳)	계
제주시	6	11	1	18	1	-	-	-	1
서귀포시	-	8	1	9	-	-	-	-	0
계	6	19	2	27	1	0	0	0	1

※ 시설이 함께 설치된 곳은 해안동 생활문화센터+해안동문화의집 1곳

### 3.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

#### 가. 생활문화센터의 유형 구분

##### 1) 역할에 따른 유형 구분

생활문화센터는 역할에 따라 생활권형, 준거점형, 거점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간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지역에 따라서 공간 규모와 관계없이 역할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설정은 2014년 생활문화센터 건립 당시 가이드북에서 제안한 분류로, 2021년 현재는 필수적으로 구분하진 않지만 지역문화진흥원의 시설 조사는 이러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표 2-25〉 역할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구분(2014년 기준)

구분	생활권형	준거점형	거점형
위치	- 지역주민의 생활권 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조성	- 광역 읍면동 단위로 조성 (광역시의 구 단위)	- 시·군·구 단위로 조성
기능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 -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 생활문화동아리 형성 지원 - 지역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학습과 교류의 기회 제공 - 주민상호교류를 위한 주민공동체 공간 제공	- 생활권형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며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창작 및 발표 등을 위한 공간 지원	- 준거점형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며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의 허브기능 및 정보 제공, 컨설팅 지원 등의 멀티 플랫폼 역할 수행 - 전문적인 시설이 필요한 생활 문화 활동 공간 및 발표공간 지원
규모·공간	- 약 200㎡ 내외 - 의무공간 + 필요한 권장공간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	- 약 500㎡ ~ 1,000㎡ 이내 - 의무공간 (다목적홀 포함) + 필요한 권장공간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	- 약 1,000㎡ 이상 - 의무공간 (공연장 포함) + 필요한 권장공간 -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 반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 「생활문화센터 가이드북」

각 유형에 따른 기능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규모와 공간이다. 생활권형은 읍·면·동 단위이므로 약 20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거점형의 경우 시·군·구 단위이므로 약 1,000㎡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현재 건립된 거점형 시설은 의무공간에 공연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나, 2022년부터 건립되는 시설은 필수시설(의무공간)이 마주침공간, 방음공간, 학습·마루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거점형 시설이라도 공연장을 의무적으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표 2-26〉 생활문화센터 지원 조건 및 공간구성(2021년 기준)

구분	시설내용	면적	공간구성
필수시설	마주침공간 1개소 이상	실면적 최소 50㎡ 이상	지역특성과 수요 고려 주민자율공간으로 구분되는 방음공간, 마루공간 또는 학습공간반드시 조성
	방음공간 1개소 이상	실면적 최소 30㎡이상 주민자율공간	
	마루공간 또는 학습공간 1개소 이상	실면적 최소 30㎡이상 주민자율공간	
운영 및 공용시설	물품보관실, 화장실, 수유실, 사무실 등	기준 없음	-
특성화 시설	다목적 공간, 공동체 부엌, 공동체 공방, 야외활동공간 등	기준 없음	개인 공방, 예술가 창작공간, 예술창작스튜디오, 실내영상스튜디오(전문가용) 등 보조금 지급 제외 시설은 조성 불가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71-73쪽 정리

## 2) 운영환경에 따른 유형 구분

생활문화센터의 운영환경에 따른 분류는 크게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되고 하위 구분으로 인구밀도, 중심산업, 커뮤니티, 토지이용 등이 해당된다. 이는 생활문화센터가 건립, 조성되는 위치를 기준으로 하며 도농복합의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 등이 기준이 된다. 그러나 농촌형의 경우에도 목적적인 상호작용의 사례가 있으며, 운영환경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건립·조성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표 2-27〉 운영환경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구분

구분	도시형	농촌형
인구밀도	높은 인구밀도와 큰 인구 규모	낮은 인구밀도와 작은 인구 규모
중심산업	2·3차 산업의 중심	1차 산업의 중심
커뮤니티	목적적인 상호 작용	지속적인 상호 작용
토지이용	상업지구, 주거지역 비율 높음	전답 비율 높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 「생활문화센터 가이드북」

## 3) 공간형태에 따른 유형 구분

생활문화센터의 공간 형태는 독립형과 공동형이 있다. 문화원, 주민센터, 타 행정기관과 함께 건물을 사용하면 공동형이고, 생활문화센터가 독자적으로 있으면 독립형이다. 이 구분은 단순 공간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이며 생활문화센터의 현황 조사에는 포함 돼 있지 않아 현재 조성된 생활문화센터가 독립형인지 공동형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표 2-28〉 공간형태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구분

구분	독립형(건물전체형)	공동형(건물 일부형)
특징	생활문화센터가 독립된 건물형태	생활문화센터가 다른시설(기존공간)에 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 「생활문화센터 가이드북」

〔그림 2-16〕 독립형 조성 사례인 월곡생활문화센터, 상주시생활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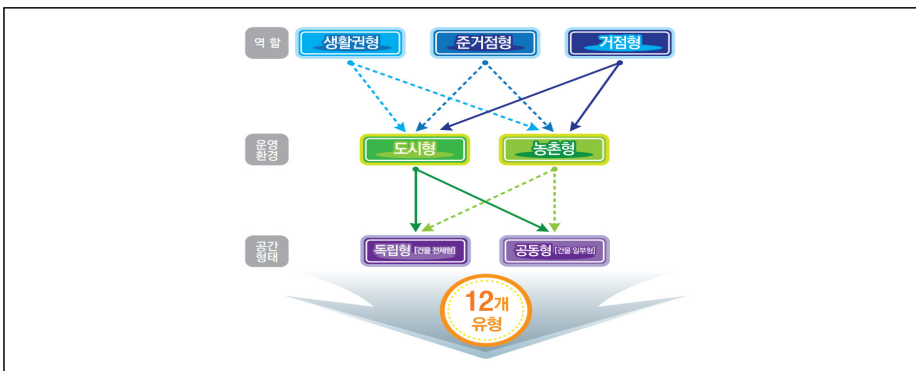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직접촬영

〔그림 2-17〕 공동형 조성 사례인 서산생활문화센터



\*출처: 연구진 직접촬영

〔그림 2-18〕 생활문화센터의 12개 유형 분류 방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 「생활문화센터 가이드북」

## 나.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공무원의 파견, 계약직원고용 등으로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44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단체, 기관에 위탁하는 사례가 87건으로 대개 문화원, 문화의집, 문화재단 위탁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센터는 15개소였다.

〈표 2-29〉 지역별 생활문화센터 조성 특징 분류

	개관센터 수	운영 유형			
		민간위탁	주민 자율	지자체 직영	'혼합형
서울	5	3	-	1	1
부산	18	17	1	-	-
대구	8	4	4	-	-
인천	10	6	-	4	-
광주	8	4	1	3	-
대전	4	1	-	3	-
울산	3	1	-	2	-
세종	2	-	-	2	-
경기	15	12	-	2	1
강원	13	5	1	6	1
충북	3	3	-	-	-
충남	9	7	-	2	-
전북	15	9	-	6	-
전남	11	3	2	6	-
경북	8	4	1	3	-
경남	11	4	5	2	-
제주	6	4	-	2	-
계	149	87	15	44	3

생활문화센터는 운영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정책방안이 다르다. 특히 민간위탁의 경우 민간 조직이 운영하는 경우와 문화재단, 문화의집 등 지자체에 속한 문화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달라 이에 대한 현장 정책 수요를 별도로 검토하였다.

## 1) 지자체 직접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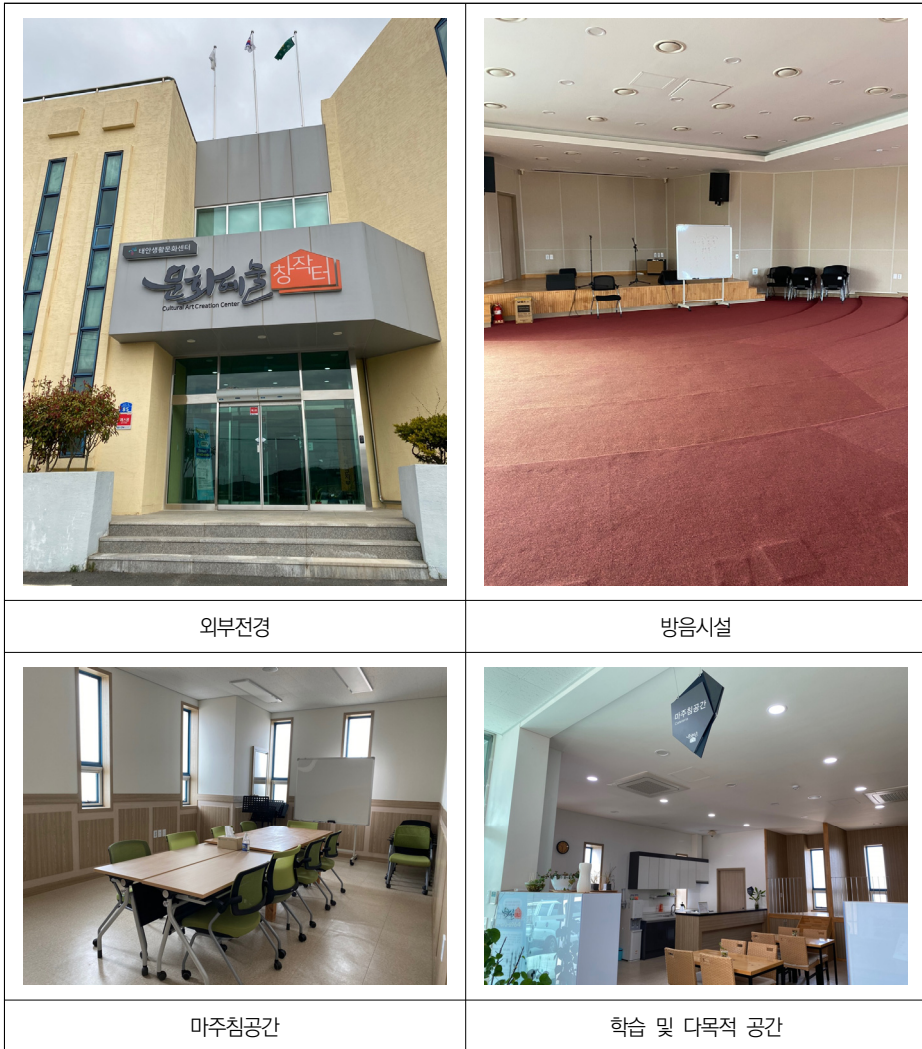
### ① 충남 태안생활문화센터

충남 태안생활문화센터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태안군 문화관광과의 직원 2인이 건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 연습실대여 관리 등을 담당한다. 태안생활문화센터는 2017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통해 거점형으로 조성되었는데, 기존에 태안문화원으로 활용하던 건물을 전체 리모델링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주민에게는 '문화예술창작터'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개인 및 예술동호회의 연습실로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다양한 문예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수를 축소 운영하고 있다. 또한 태안군 내의 여성회관, 문화원과의 프로그램 중복으로 인해 생활문화센터만의 독창적인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필수공간은 1층 로비공간, 각 층의 방음공간, 2층 학습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원으로 운영하던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공용시설 및 특성화 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 특히 1층의 주민자율공간인 공동체 부엌은 조성 당시 주민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생활문화센터의 위치가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이고, 프로그램 이용자 및 공간 대여신청자만을 활용하여 안정적 수익구조를 창출하기 어렵기에 카페 위탁 운영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즉,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보다는 예술활동을 위해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셈이다.

태안생활문화센터는 주로 장년층 이상의 연령대가 많이 활용하는 특징을 보였는데, 기존의 노후화 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형태라 가파른 계단, 엘리베이터의 부재 등으로 2층 이상의 공간은 1층과 지층보다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고민을 안고 있었다. 주민들은 업무를 끝낸 늦은 오후부터 야간 시간대의 공간 활용을 원하고 있어 3월부터 10월은 야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2명의 관리 인력이 유연근무, 야간근무 등의 방법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림 2-19] 태안생활문화센터



\*출처: 연구진 직접촬영

## ② 충남 웅천생활문화센터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충남생활문화센터는 면사무소 건물과 함께 위치하여 복합SOC 형태로 조성되었다. 기존의 면사무소 민원실이 인구감소로 인해 축소되어 유휴공간이 생겨나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였다. 총 2층 건물로 1층은 필수시설을 갖추었고 2층은 주민체육공간(헬스장)으로 조성하였다. 2020년 초반까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방문이 있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전체 시설을 운영 중단하

였다. 면사무소 내 운영 담당자가 상시 상주하고 있지만 소규모 지자체의 특성상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낮아 프로그램 기획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인근에 평생 학습관 등이 위치해 있어 프로그램 강사진이 중복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기존 건물의 공간이 크지 않아 미주침공간을 필요로 할 때 무대로 전환하여 활용하고 있고, 학습공간도 가변형 문을 설치하여 다목적 공간으로 함께 활용하고 있다.

[그림 2-20] 웅천생활문화센터



\*출처: 연구진 직접촬영



## 2) 문화원, 문화재단 등 관련 기관 위탁 사례

### ① 광주광역시 광산생활문화센터

광산생활문화센터는 광산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가 같은 공간에 조성되어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 조성 당시 광산구청에서 장소를 위탁한 것인데, 광산문화원은 생활문화센터의 위탁운영 주체로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는 인력과 운영 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있는데, 생활문화센터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계약직원이다. 담당자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전반과 공모사업 신청 및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광산생활문화센터는 2021년 6월 현재 지역문화진흥원, 광주문화재단을 통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의 특성상 경쟁률이 높아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드러냈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 보조로는 인건비, 운영비 전부를 충당할 수 없어 공모사업이 필수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생활문화센터를 활용하는 이용자는 기존에는 이용료를 일부 지불하도록 돼 있었으나, '광산구 생활문화센터 조례'에 근거하여 최근 이용료가 무료로 전환되었다.

[그림 2-21] 광산생활문화센터



\*출처: 연구진 직접촬영

## ② 경북 영천생활문화센터

영천생활문화센터는 영천문화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문화원 내 공간 일부를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한 사례로 인력은 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를 분리하여 업무를 하고 있으나 사무실은 동일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생활문화센터 담당 인력은 지역문화진흥원의 공모 사업을 통해 채용된 인력으로 지난해(2020년)의 경우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어 영천문화원의 인력이 생활문화센터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영천문화원과 전체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로 정확하게 문화원 공간과 생활문화센터의 공간은 분리되지 않고 있으나, 조성 시 필수시설로 규정하였던 마주침공간, 방음공간, 학습공간 등은 조성 이후 유지관리 및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예술 분야 강의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수요가 많고 동호회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주민의 이용률이 높았다. 주민은 문화활동을 위해 해당 공간을 찾기 때문에 문화원과 문화센터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원 지원 예산이 지자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생활문화센터 운영도 함께 무리 없이 추진이 가능하나 운영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였다.

[그림 2-22] 영천생활문화센터



\*출처: 연구진 직접촬영

## 3) 민간 기관 위탁 사례

### ① 성주생활문화센터

성주생활문화센터는 금수문화예술마을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금수문화예술마을은 폐

교된 금수초등학교를 예술가 창작 거점, 지역주민 체험장소로 운영하는 협의체로 지역주민과 문화예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민간 문화예술조직이다. 성주생활문화센터는 금수문화예술마을이 폐교의 일부 공간을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신청하였고, 비어있던 교실 공간과 강당공간을 생활문화센터 필수시설, 특성화시설, 공용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폐교 전체를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고 일부 공간을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였기 때문에 지역 주민은 생활문화센터의 개념보다는 ‘학교’라 부르며 전체 공간을 문화활동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획자가 상주하고 센터 관리, 행정업무 등을 분담할 수 있는 자체 조직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공모사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이 상주해 ‘생활문화동아리’ 운영, 예술교육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문화센터 공간에 대한 위탁 운영은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계약이 만료될 경우 폐교의 일부 공간은 금수문화예술마을 공간으로 활용되고 생활문화센터로 조성된 일부 공간은 관리 책임이 없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민간 조직이지만 대부분의 조직원이 지역주민이라는 점에서 주민 자치와 운영 방식이 낯이없고, 젊은 전문인력 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다양한 기획으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림 2-23] 성주생활문화센터



\*출처: 연구진 직접촬영

② 울산 복구생활문화센터

울산 복구생활문화센터는 강동미디어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다. 센터장, 실장, 담당자 총 3인이 상근하고 있으며, 주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1년에는 ‘동아리 프로듀스20’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20개 동아리 팀을 지원하고 한 해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한 동아리 20개를 선정하여 시상한다.<sup>19)</sup> 울산복구생활문화센터를 통해 다수의 동아리가 결성되었으며, 지역 내 사업장 소속 주민들도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강사를 초빙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활동도 지원하고 있으며, 특화 시설로 미디어실, 노래연습실 등을 구성하여 주민에게 대관하고 있다. 이는 운영주체인 민간단체의 강점을 살려 생활문화센터의 특성화를 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24] 울산 복구생활문화센터



\*출처: 연구진 직접촬영

19) 경상일보(2021.04.27.), “[우리동네 새공간 생활문화센터] 지역민 주도로 ‘문화마중물’ 역할”

#### 4) 주민 자치 운영 사례

##### ① 광주광역시 서창생활문화센터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서창생활문화센터는 서창동 주민센터 내 건물 일부를 할애하여 조성된 복합SOC 형태로 나타난다. 주로 주민들로 구성된 동호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조성된 동호회를 대상으로는 무료로 장소를 대관한다. 구청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인력 1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무관리 운영비 등은 지원하지 않고 있어 운영 인력이 직접 공모사업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운영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지원(장비지원 등)은 위원회 자체에서 조달하고 있다.

주민센터 건물은 지층 제외 총 3개 층이고 생활문화센터는 2층에 조성되었다. 마주침 공간과 다목적 홀, 일부 방음공간을 갖추어 필수 공간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용 시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지역의 특성상 주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지만 공동부엌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본격적인 진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생활문화센터 운영 방식이 고도화되고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확대되면 생활문화센터의 공간도 이에 맞추어 변화가 필요한데, 예산 등의 문제로 수요를 모두 담을 수 없는 불편함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25] 서창생활문화센터



\*출처: 연구진 직접촬영

## ② 상주생활문화센터

2014년 상주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된 이후 ‘상주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자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주민은 운영인력이 상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 운영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활용 방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상주시의 유휴공간을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여 단독 건물과 넓은 야외공터를 보유하여 지속적인 관리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담 인력은 주민수요에 맞는 전문 강사 섭외,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행정업무 대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지역문화진흥원의 인력 공모 사업을 통해서만 인력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지자체와의 행정 및 예산 협의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여 주민협의체로 이루어진 상주생활문화센터운영위원회가 가장 대응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그림 2-26] 상주생활문화센터



\*출처: 연구진 직접촬영

# 제3절 유사사례 정의 및 운영 사례

## 1. 생활체육 정의

생활체육은 2015년도에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으로 정책 기반을 구축했다. ‘생활체육’의 정의는 동법 제2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하며,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인 ‘전문체육’과 구분하고 있다. 즉 ‘생활’은 ‘전문’적인 활동과 구분되는 ‘일반인의 일상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생활체육의 주목적은 체력을 단련하고 생활에 활력을 가져 보다 밝고 풍요로운 인간관계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다. 종래의 체육·스포츠는 주로 젊은이 중심의 경기 스포츠가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어린이로부터 고연령층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체육·스포츠 활동에 관심이 높아 생활체육의 개발과 그에 필요한 시설·프로그램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sup>20)</sup>

### 「생활체육진흥법」 내 관련 내용 (2019.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내 관련 내용 (2020.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20) [네이버 지식백과] 생활체육 [Sport for all, 生活體育] (두산백과)

## 2. 유사시설 현황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의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센터와 유사한 시설을 검토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서는 총 5개로 생활문화시설을 분류, 정의하고 있다.

‘생활문화시설’ 외 유사시설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한 ‘문화예술교육시설’, 「생활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생활체육시설’ 등이 있다.

### 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문화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는 ①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②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 2), ③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 ④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1항) 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내 생활문화시설 건립 및 지원 근거

#####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을 말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내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2조**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법 제7조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5. 그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복지회관’의 경우 ‘지역문화복지시설(‘지역문화활동시설’로 개정)’로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등과 함께 문화시설에 포함되었으나, 2019년 관련 조항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문화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3항에 따라 민간 설립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민간 생활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에 포함된다. 각 시설별 세부 내용은 해당 법령 별로 다음에서 다룬다.

〈표 2-30〉 생활문화시설의 분류

대분류	시설구분		전국 시설현황 <sup>21)</sup> (개소)	
	중분류	세분류	(2015.12.)	(2019.12.)
①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공연시설	공연장	1,290	1,334
		영화상영관	466	562
		야외음악당	-	-
	전시시설	박물관	826	897
		미술관	219	267
		화랑	-	-
		조각공원	-	-
	도서시설	도서관	978	1,134
		작은도서관 (舊 문고)	5,595	6,330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의 집	114	101
		문화체육센터	467	622
		청소년활동시설	799	799
	문화 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228	230
		국악원	9	11
		전수회관	153	162
		문학관	-	88
	(종합시설)	-	-	
	(창작공간)	-	-	
②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	466	475	
	평생학습센터	92	129	
③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지역자치센터	2,818	3,119	
	마을회관	36,792	5,131 (쉼터 설치한 곳)	
④ 생활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53	129 (미개관 포함시 178)	
⑤ 그 밖의 고시 또는 조례로 정하는 시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43	50	
	지역서점	-	781	
①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현재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화시설)	(지자체) 공연시설	문화회관	229	256
	지역문화복지시설	복지회관**		
	(민간)	민간 생활문화시설		

자료: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7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생활문화센터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영리 목적 시설이 아니며, 복합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시설은 음영 표시함

21) 각 시설별 통계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음

## 나.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문화시설

### 1) 문화시설의 분류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근거하여,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 문학관 등으로 구분되며,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창작공간이 포함된다.

〈표 2-31〉 문화시설의 분류

대분류	시설구분		관련법
	중분류	세분류	
①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법 제2조 4호, 제8조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야외음악당	공연법 제2조 4호
	전시시설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화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조각공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도서시설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제1호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작은도서관 진흥법
	지역문화 활동시설	문화의 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2017),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2015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2020.12), 「2020 공연예술실태조사」(공연장)  
 영화진흥위원회(<https://www.kobis.or.kr/kobis/business/mast/thea/findAreaTheaterStat.do>)  
 지역별 영화상영관 현황. (2021.5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0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문화의 집, 지방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0년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생활체육관)  
 여성가족부(2021), 「20년말 기준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청소년활동시설)  
 문화재청(202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전수교육관)  
 한국문화관광협회 (<http://www.munhakwan.com/>) (문학관)  
 교육부(2021), 「2020년 평생교육통계조사」(평생학습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html&bcode=EADADAA&bmode=view&idx=EADADAA>)  
 행정안전부(2020),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마을회관, 지역자치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rmedia.org/pages/page\\_123.php](http://www.krmedia.org/pages/page_123.php))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서점on <http://www.booktown.or.kr/> (지역서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https://kaswc.or.kr/centerlist> (복지회관)

시설구분			관련법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문화 보급 ·전수시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
		국악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전수회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문학관	문학진흥법 제2조 제5호
	(종합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창작공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지자체)	공연시설	문예회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각 지자체 문예회관 조례 (지자체에서 설립운영), 공연법제8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민간)	문화시설	민간 생활 문화 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3항 (민간 설립 문화시설로서, 상기 문화시설 내용 참조)

자료: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문화예술진흥법」 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문예회관은 지자체 공공기관에 의해 설립되거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이 포함된 문화복합시설(국고지원 포함)로서 등록공연장에 문예회관이 포함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3항에 따라 민간에서 설립한 문화시설인 민간 생활문화시설도 문화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내 문화시설 관련 내용

##### (문화예술, 문화시설 정의)

**제2조**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내 문화시설 관련 내용**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활동시설
  2. 문화 보급·전수시설
-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시행령 제2조 관련)**

1. 공연시설
  -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박물관
  -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4. 지역문화활동시설
  -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 나. 삭제 <2019.4.16. ※ 복지회관>
    -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5. 문화 보급·전수시설
  -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종합시설: 제1호 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 2) 공연법에 근거한 공연시설

공연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및 「공연법」 제2조 4항, 동법 제8조에 근거한 시설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공연장은 객석규모에 따라 종합공연장(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공연장), 일반공연장(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공연장), 소공연장(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으로 구분된다.

통계상에서 공연시설과 공연장으로 구분하는데, 공연시설이란 복합시설 전체(예: 국립중앙극장)를 의미하며, 공연장은 공연시설 내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예: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을 말한다. 공연장은 누구나 이용가능하나 대부분 공연관람 목적에만 사용된다. 최근 주민참여형 프로그램과 지역네트워크와의 연계로 간접 참여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주민 운영 참여 사례는 거의 없으나 주민의 운영 참여를 기획하는 위원회 구성 가능성은 있다.<sup>22)</sup>

〈표 2-32〉 공연시설의 분류

구분	건축법상 분류	법적 시설규정
공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500㎡미만) or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500㎡이상)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조명, 음향 등 무대시설과 방음시설 포함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공연장 •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공연장 •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영화 상영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500㎡미만) or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500㎡이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함. • 영화상영관: 조명, 음향, 방음, 소방, 편의시설을 갖춘 실내 영화상영관 또는 야외 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 바닥면적이 60㎡ 이상일 것 • 비상설상영장: 영화상영일수가 연간 120일 이내이고 계속상영기간이 30일 이내인 영화상영 장소나 시설.
야외 음악당	관광 휴게시설(야외음악당)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자료: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공연법」 제2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참조

22) 문화체육관광부(2017),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 「공연법」 내 관련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대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공연법 시행령」 내 관련 내용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공연법 시행규칙」 내 관련 내용

**제5조(공연장의 시설기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대시설(조명시설·음향시설을 포함한다) 및 방음 시설로 한다.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한 전시시설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서,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또한 미술관은 동법에서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로 정의되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각각 국립, 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한다. 박물관은 국공립(45%), 사립(43%), 대학(12%), 미술관은 국공립(25%), 사립(69%), 대학(6%) 수준이다.

주요 활동내용은 상설 전시 운영 및 기획전시, 문화예술교육 강좌 운영 등 체험학습 및 지역 향토 역사교육, 박물관 소재 지역연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특수목적 하에 운영되는 곳을 제외하고 운영 시간 내에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주민참여 측면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역 거점의 주

민참여형 사업이 늘어나고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sup>23)</sup> 주민 운영 참여 사례는 거의 없으나 주민의 운영 참여를 기획하는 위원회 구성 가능성은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내 관련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표 2-33〉 전시시설의 분류

구분	건축법상 분류	법적 시설규정
박물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미술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
화랑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천㎡미만) or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회화·서예·사진·공예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조각공원	관광 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자료: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참조

4) 도서관법에 근거한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에서,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춘 시설(최소 건면적 264㎡, 열람석 60석, 도서 3천권 이상)로 978개소(2015년 기준)에서 1,134개소(2019년 기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SOC 사업으로 1200여개 이상의 공공도서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3) 문화체육관광부(2017),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67쪽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시설(건면적 33㎡, 열람석 6석, 도서 1천권 이상)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하기 위해 조성하는 시설로 5,595개소(2015년 기준)에서 6,672개소(2019년 기준)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을 기반으로 생활하고 있는 주민에게 대출, 열람, 지역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참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운영시간 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와 함께 동아리 조직과 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좀 더 주민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표 2-34〉 도서관 시설의 분류

구분	건축법상 분류	법적 시설규정
도서관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공공도서관에는 공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공공도서관이 있음 최소 시설기준: 건물면적 264㎡, 열람석 60석, 자료 3천권 이상
작은도서관 (舊 문고)	교육연구시설(도서관) or 단독주택, 공동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는 경우)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천권 이상 보유한 시설

자료: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 1 참조

생활SOC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접근시간을 12분(5km)에서 10분(4km) 이내로 단축하고, 작은 도서관은 기존 수요와 더불어 공공도서관 보급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과 생활SOC 복합시설 내 집중 확충할 예정이다.<sup>24)</sup> 또한 순회사서 파견, 기준미달 도서관 리모델링 등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방안 및 컨설팅 등의 지원정책 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35〉 도서관 공급목표

구분	현재 ('17.12월 기준)		'22년 (착수기준)	
	개소*	접근성	개소	접근성
공공도서관	1,042개 (1개소당 5만명)	12분 (5km)	1,200여개 (1개소당 4.3만명)	10분 (4km)
작은도서관	6,058개 (1개소당 8.5천명)	-	6,700여개 (1개소당 7.6천명)	-

자료: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2019), 생활SOC 3개년계획(안)[2020~2022]

개소\*: 1개소 당 인구수 - 공공도서관(일본 3.9만명, 미국 3.4만명, 영국 1.5만명, 독일 1.1만명)

24)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2019), 「생활SOC 3개년계획(안)[2020~2022]」



## 「도서관법」 내 관련 내용

### 제2조(정의)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공립 공공도서관') 또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이하 생략 -

## 「도서관법 시행령」 내 관련 내용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 2. 개별기준

#### 가. 공공도서관

##### 1)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명)	시설		도서관 자료	
	건물면적(㎡)	열람석(좌석 수)	기본장서(권)	연간증서(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란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에만 해당한다)·읍·면 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 열람실, 연속간행물실, 시청각실, 회의실, 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 범위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가.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 나.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 다. 그 밖의 향토자료, 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 2) 사립 공공도서관

- 1)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 작은 도서관

시설		도서관 자료
건물면적(㎡)	열람석(좌석 수)	
33㎡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이하 생략 -

## 5) 문화의 집<sup>25)</sup>

지역문화활동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로 구분된다.

문화의 집은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였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1996년 제1호 서대문 문화의 집 개관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07년을 170개를 정점으로 2015년 114개소, 2019년 101개소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많다.

정부는 문화의 집을 통해 부담 없이 생활권 내 이용 및 저렴한 수강료 등으로 주민의 문화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마을단위 생활권을 기반으로 지역민들의 문화 및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운영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체험, 교육, 창작 및 발표를 할 수 있는 문화거점이자 자발적 문화 소모임을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지역민들이 일상의 삶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00평 내외의 소규모로 조성되었고 대부분 기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구성하였다. 동사무소, 구민회관,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구민회관, 문예회관 등과 연계되어 조성되었으며, 일반적인 공간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하다.

- ① 문화관람실: 소규모 공연, 전시, 문화강좌, 영화 등 문화프로그램 제공
- ② 문화시청각실: 책, CD, 비디오, 인터넷을 통한 문화예술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인터넷 공간, 영상/음악감상 공간, 영화감상실)
- ③ 문화창작실: 지역주민이 스스로 문화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공방, 연습실)
- ④ 문화사랑방: 가족 또는 지역내 문화동호인들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 ⑤ 정보자료실: 책, CD, 비디오, 인터넷을 통한 문화예술에 관련된 지식과 문화행사 정보 제공

실제로, 지역 내 열린 문화공간으로 문화예술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문화창작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지역주민 뮤지크쇼, 지역축제, 공연프로그램, 생활문화동아리, 생활문화프로그램 등 주민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지역별 사회적·정책적 여건에 차이가 있으나 사회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과 생활문화 활성화 토

25) 정광렬(2017),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지연(2018), 「생활문화공간조성을 통해 본 생활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2권 2호

론회 등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방식은 직영(67%), 위탁(30%), 민간 및 민간위탁(2%) 방식이며, 전국 문화의 집 중 26%가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생활문화협동조합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조성 당시 중점 기능이었던 시청각실 등 PC와 비디오 이용이 감소하고 시설이 노후하면서 현재는 주로 강좌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는 바, 기존 주민자치센터와의 차별성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개인 위주나 자료 이용을 위한 공간이 주를 이루어 있어 공동체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며, 전문 운영 인력의 부재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많아 문화시설이 많은 도시의 경우에는 점차 민간 문화센터 및 타 생활문화시설에 비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정광렬 외, 2016).

〈표 2-36〉 지역문화활동시설의 분류

구분	건축법상 분류	법적 시설규정
문화의 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문화 체육센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탁구장, 체육도장, 500㎡ 미만) or 제2종 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 볼링장 등) or 운동시설(체육도장 500㎡이상, 체육관 1천㎡미만) or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 생활체육관: 농구, 배구 등 구기 종목과 수영, 볼링, 에어로빅, 헬스 등 생활체육 종목의 각종 체육시설이 복합 설치된 체육관(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 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관, 구민체육센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농어촌 복합체육 시설 등)
청소년 활동시설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텔, 청소년 이용시설 등

자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6) 생활체육법에 근거한 문화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생활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을 목적으로 수영, 헬스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운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대관 등을 운영하는 시설이다. 문화체육관은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관'으로 분류되는데, 생활체육관이란, 농구, 배구 등 구기 종목과 수영, 볼링, 에어로빅, 헬스 등 생활체육 종목의 각종 체육시설이 복합 설치된 체육관(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 국민체육센터, 시민체육관, 구민체육센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의 운영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다.

#### 7)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한 지방문화원<sup>26)</sup>

문화 보급·전수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으로 구분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지방문화원은 1950년대 향토문화 보존을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조직되었고, 1965년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되며 공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94년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정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방문화원의 주요 기능은 지역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자료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국내외 교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문화예술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등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한다.<sup>27)</sup> 운영 프로그램은 대부분 전통예술의 이해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역사 인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지방문화원이 다른 문화시설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기능은 향토사 연구와 실버문화프로그램 등이다. 이에 따라 역사, 지역문화, 교양, 예정 등 대부분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문화자원봉사, 전국향토문화공모전, 교육연수, 청소년 지역문화 창조프로그램, 문화이모작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1개의 원을 두며, 전국에 230개(2019.12.기준)의 지방문화원이 있다. 운영주체는 각 지자체 또는 공공으로, 주민이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다. 운영비는 지방비(68%), 기금을 포함한 국고(10%), 자체자금(19%), 기타(3%)로 구성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주민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역동아리 지원 및 생활밀착동호회 지원 등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26) 정광렬(2017),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유지연(2018), 「생활문화공간조성을 통해 본 생활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권 2호

2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표 2-37〉 문화 보급·전수시설의 분류

구분	건축법상 분류	법적 시설규정
지방문화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국악원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or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전수회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or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자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지방문화원진흥법」 내 관련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 구역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8) 국악원 및 전수회관

국악원은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로 전국에 1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국악원에서는 국악 공연 및 국악학술연수, 국악문화 보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악박물관, 악기연구소, 국악자료실 아카이브, e-국악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수회관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즉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서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및 단체의

전승활동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전통공연과 전시, 체험 등 국민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설이다.

국악원 및 전수회관은 국가, 지자체 차원에서 설립되어 지자체 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규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악원은 전국 11개소, 전수교육관은 162개소가 있다. 공연관람,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상성 정도는 낮은 편이며, 주민이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없다.

9)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문학관은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문학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시립, 사립 문학관으로 구분된다.

전국에 88개소(서울 8, 강원 10, 경기·인천 10, 경상 25, 전라 17, 충청 17, 제주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문학관협회에서 전체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표 2-38〉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

구분	건축법상 분류	법적 시설규정
문학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문학관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문학관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요건을 갖춘 시설(국립, 공립, 시립문학관)

자료: 「문학진흥법」 제2조 5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문학진흥법」 내 관련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 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문학진흥법 시행령」 내 관련 내용**

**제2조(문학관 자료의 기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을 것
2. 예술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

## 10) 종합시설 및 창작공간

문화시설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마목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과 동법 제2조 바목의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이 포함된다.

즉, 종합시설은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등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이며, 창작공간은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공연, 전시 등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다.

〈표 2-39〉 종합시설 및 창작공간

구분	건축법상 분류	법적 시설규정
(종합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 or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문화예술 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 시설 공연시설과 문화시설(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창작공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천㎡미만) or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자료: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11) 문예회관<sup>28)</sup>

문예회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주회, 무용 연극 등 공연과 전시, 학술행사 개최, 문화예술교육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이다. 주로 문화예술 작품의 공연 및 전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이 포함된 문화복합시설로서, 등록공연장에 문예회관이 포함된다.

1980년대 ‘문화인프라확충’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문예회관 건립이 본격화되었다. 각 광역시·도를 포함, 각 시·군·구에 1개의 문예회관을 건립함으로써 각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문화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전국에 균형 있는 문화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sup>29)</sup>

28) 문화체육관광부(2017),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1996년부터는 문예회관 간의 교류와 협력 및 발전을 위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전국 256개소의 문예회관이 운영 중에 있다.

대부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설립(95%)되며, 운영주체는 기초자치단체(57%), 재단법인(20%), 공기업(12%), 광역자치단체(6%)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운영을 위해 일부 회원제도(46%) 및 입주공연예술단체(54%)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문예회관 중 문화예술교육장이 설치된 곳은 103개(44.5%)으로 체험형, 감상형, 혼합형 교육 등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한다.

〈표 2-40〉 문예회관

구분	건축법상 분류	법적 시설규정
문예회관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 (지자체에서 설립·운영)	연주회, 무용 연극 등 공연과 전시, 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 지자체 공공기관에 의해 설립되거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이 포함된 문화복합시설(국고지원 포함) (등록공연장에 문예회관이 포함됨)

자료: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각 지자체 문예회관 조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12) 민간 생활문화시설

민간 생활문화시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3항에 따라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sup>30)</sup>

## 다. 평생교육법 및 건축법에 근거한 관련 시설

### 1)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이다. 평생학습관은 시·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로, 전국에 475개소가 존재한다.

평생학습관은 설립주체별로 공공(82%), 법인(14%) 순이며, 운영방식은 직영(84%), 위탁(16%)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목표로 문화예술, 인문교

29) 유지연(2018), 생활문화공간조성을 통해 본 생활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30)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sup>31)</sup> 이와 더불어 평생학습자원 간 네트워크 구축,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등 주민 학습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민간 위탁시 주민의 참여가 가능하며, 주민참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평생학습센터(읍면동별, 舊행복학습센터)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전국 12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주민 참여가 가능하다.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학습동아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2-41〉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시설 구분	관련 법	건축법상 분류	시설규정
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 제21조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학원·교습소)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시도, 시군구)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학원·교습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시군구, 읍면동별)

자료: 「평생교육법」 제21조, 제21조의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2) 건축법에 근거한 지역자치센터

지역자치센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한 시설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는 지역자치센터 외에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사무소 등의 시설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총칭하는 개념(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제1조와 제2조)이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의, 시민교육, 지역사회진흥 기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sup>32)</sup>

3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설립 주체는 지자체로 지역자치센터에 관한 조례를 두어 운영하며,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 주민자치회, 자치센터, 주민회관 등의 명칭으로 존립하고 있다. 지역의 동사무소, 복지센터 기능 등 복합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도가 높은 편이며, 읍면동 별 주민 대표 25명 이내로 주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국 3,119개소에 읍면동 단위로 설치되어 일상성 정도가 높고, 지역사회 수요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 과제를 세워 운영하고 있다.

### 3) 건축법에 근거한 마을회관

마을회관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는 마을회관 외에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등이 해당된다. 마을회관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일상생활, 휴식, 커뮤니케이션, 여가, 서비스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주거공간 역할로 운영되고 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마을회관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설립, 복지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주민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4만여 개의 마을회관이 있으며, 5,131개소는 무더위 쉼터로 함께 운영되고 있다.

〈표 2-42〉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시설구분	관련법	건축법상 분류	시설규정
지역 자치센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자치센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미만인 것
마을회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자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32) 문화체육관광부(2017),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91쪽

## 라.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관련 시설

각 지자체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생활문화 지원)를 법적근거로 제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생활문화정책의 대상이나 지원사업 내용 측면에서 광역차원에서 모법(母法)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3)</sup>

### 「지역문화진흥법」 내 관련 내용

#### (생활문화 지원)

##### 제7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문화시설 운영자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 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민간 설립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제8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문체부, 2018.3.기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생활문화센터: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
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3. 지역서점: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

※ '지역서점'이 신설되고, '지역미디어시설', '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이 폐지됨 (2018.3.)

33) 김세훈·서순복(2015), 「지역문화진흥조례 제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27호, 755쪽

〈표 2-43〉 생활문화 관련 조례제정 현황

구분	생활문화 진흥	문화도시	생활문화시설			계	
			생활문화센터	지역서점	지역영상 미디어센터		
조례	광역자치단체 (특별·광역시,도)	8	5	-	15	-	28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14	29	31	27	15	116
총계		22	34	31	42	15	144

자료: 김나영(2020), 「생활문화 관련 조례 분석」, 재정리

〈표 2-44〉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시설구분	관련법	건축법상 분류	시설규정
생활 문화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자치센터, 마을회관) or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500㎡미만) or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
지역영상 미디어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500㎡미만) or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500㎡이상)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지역서점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천㎡미만) or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서점, 1천㎡이상)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1) 생활문화공간<sup>34)</sup>

생활문화공간은 여가시간 활용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동호회 등을 위한 강연·연습·발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장으로도 활용가능한 공간이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내실화와 4차산업혁명에 따른 메이커스페이스, VR체험공간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다양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34)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2019), 「생활SOC 3개년계획(안)[2020~2022]」

정부는 생활SOC 사업을 통해 생활문화센터를 기초지자체(시·군·구) 당 1개 이상 조성하고, 문화예술교육전용공간(꿈꾸는 예술터)은 광역지자체(시·도) 당 1개 내외 조성할 계획이며, 메이커스페이스는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일반랩과 ‘전문창작과 창업연계’ 기능의 전문랩으로 구분하여 격차해소를 위해 지방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SOC 조성 시 작은 공간으로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생활문화센터를 복합하여 추진하며, 특히, 도서관의 경우 리모델링이나 신축 시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나 VR체험공간을 복합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입지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표 2-45〉 생활문화공간 공급목표

구분	현재 ('18.12월 기준)	'22년 (착수기준)
	개소*	개소
생활문화센터	141개 (시군구당 0.6개소)	300여개 (시군구당 1.3개소 이상)
꿈꾸는 예술터	5개	15개
메이커 스페이스	65개	360여개

자료: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2019), 생활SOC 3개년계획(안)[2020~2022]

## 2) 지역영상미디어센터<sup>35)</sup>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방송법」 제90조의 2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문화시설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미디어 교육 및 상영관 운영, 시민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및 소외계층 미디어활동 지원과 동아리 지원,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 지원 및 지역문화시설 연계사업소 외 계층 미디어 활동 지원 등이 있다.

전국 50개소가 있으며, 비영리 목적의 공공기관을 운영주체(공공 95%, 민간 5%)로 하여 설립되는데, 운영 및 사업 예산을 모두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관련 지원기관의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운영주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역 mbc, 방송문화진흥회, 영화진흥위원회, 자치단체, 재단, 영상위원회, 진흥원, 민간단체로 나뉘어지며, 지역 내 출연기관,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역인근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커뮤니티를

35) 김나영·유영미(2020), 「생활문화 관련 조례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24호

기반으로 주민 참여 및 주체성장 가능성이 높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기초자치단체에는 13곳에서 제정되었으나, 광역자치단체에는 경기도 한 곳만이 제정하였다. 조례의 내용 역시 단순한 계획수립 수준에서 그쳤으며, 계획의 내용은 기본 방향과 활성화방안 및 네트워크 구축 정도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조항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으나, 경기도의 조례는 형식적으로 제정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들 중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제4호를 근거로 하여 제정된 조례가 있고, 목적조항에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거나 ‘시민의 영상문화 역량의 향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가 있어 생활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포함하는 곳이 일부였다. 미디어나 영상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문화 역시 영상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분야가 주류 중 하나이다. 또한 영상미디어는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높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조례를 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모범(母法)이 되어주어야 하며, 조례의 내용 역시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생활문화시설로서 기능하기 위한 조항들의 추가가 필요할 것이다.

### 3) 지역서점<sup>36)</sup>

지역서점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을 말한다.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지역서점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는 생활문화시설로서 기능하기 위한 내용이 아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화를 우선목적으로 제정되어 있다. 그 다음 목적이 지역 내 문화복합공간으로서 활성화 또는 독서문화 진흥이다. 또한 이 법의 책임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조항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한다. 이는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생활문화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36) 김나영·유영미(2020), 「생활문화 관련 조례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24호

목적조항에서 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활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지원사업 내용으로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는 대전시, 전북, 경북으로 세 군데에 불과하다. 대전시와 경북은 ‘협력사업 추진’ 조항에서 각 지방단체자치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서점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그 사업 중 하나로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 포럼’이 포함되어 있다. 독서문화의 침체와 온라인 대형서점의 확장 등으로 인해 지역서점이 위기를 맞았고,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홍보 및 마케팅과 같은 경영컨설팅 지원’이나 ‘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획’이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결국 지역서점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주민이다. 최근에는 지역서점을 중심으로 글쓰기 모임, 독립출판을 위한 모임, 영화모임 등 다양한 성격의 모임들이 열리고 있다. 지역서점의 경우 대형서점에서 다루지 않는 서적들을 다루거나 지역 작가들의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책의 판매 역시 가능하다. 이와 같이 지역서점이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시켜 생활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

#### 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한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3호에 근거한 문화예술교육시설은 문화시설,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여기서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하면 모두 문화시설 등 생활문화시설에 포함되어 내용은 상기 내용과 같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내 관련 내용 (2020.1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시설
  -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내 관련 내용

**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 바. 생활체육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 근거 생활체육시설

### 1) 생활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에는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이 있으며, 이 중 생활체육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생활체육시설은 시군구 단위의 실내·외체육시설과 읍면동 단위의 실외체육시설로 구분된다.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시·군·구 단위의 실내·외체육시설은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읍·면·동 단위의 실외체육시설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등의 실외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표 2-46〉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시설구분	관련법	건축법상 분류	법적 시설규정
실내·외 체육시설 (시·군·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 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 행규칙 제3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500㎡ 미만) or 제2종 근린생활시설 (체력단련장, 볼링장 등) or 운동시설 (체육도장 500 ㎡ 이상, 체육관 1천㎡미만 등) or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 설로(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처럼 체험하는 시설 포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 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함 (시·군·구: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 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 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실외 체육시설 (읍·면·동)	상동	상동	(읍·면·동: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 육시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 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체력단련장 등의 실외체육시 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 여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내 관련 내용 (202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 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나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 관련 내용 (2021.1. 타법개정)**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 (제2조 관련)

구 분	체육시설 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팅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퀘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3조 관련)

구 분	내용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읍·면·동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팅장, 체력단련장 등의 실외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 2) 생활 SOC 지원 사업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는 생산·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회적 기반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도시 기반시설로 인식되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는 모든 국민이 무상 또는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자연, 교육, 법질서, 사회제도 등 공공의 성격을 갖는 사회적 자산을 모두 포함한다.

‘생활 SOC 사업’은 도로와 철도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구분하여, 지역의 문화·체육 시설 등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교육, 의료, 서비스,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복지 사업이다.

정부는 2018년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하고, 2019년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을 통해 생활SOC 투자를 확대편성(’18년 5.8조 → ’19년 8.6조원)하고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련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표 2-47〉 생활SOC 지원 사업 분야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분야	시설	분야	시설	분야	시설
공공체육	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관, 공공수영장)	자녀돌봄	공공부문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온종일돌봄(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기반시설	LPG배관망, 주차장
생활문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취약계층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요양시설	안전	교통, 화재, 지하매설물, 재난(우수저류시설)
		공공의료	지역책임 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자료: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2019), 「생활SOC 3개년계획(안)[2020~2022]」 참고

〈표 2-48〉 체육시설 조성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개소, 억 원)

구분	'97~'09	'10~'13	'14	'15	'16	'17	'18	'19	'20	계 (개소) (지원액)
국민체육센터	138 (3,379)	46 (2,005)	19 (537)	11 (483)	6 (468)	9 (291)	27 (322)	146 (1,865)	139 (2,454)	541 (11,805)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25 (98)	93 (492)	21 (113)	31 (253)	24 (147)	23 (133)	29 (220)	36 (301)	14 (376)	296 (2,133)
운동장생활 체육시설 (’14년 지특사업이관)	996 (3,085)	690 (2,377)	-	-	-	-	-	-	-	1,686 (5,462)

구분	'97~'09	'10~'13	'14	'15	'16	'17	'18	'19	'20	계 (개소) (지원액)
농어촌복합체육시설 (*14년 지특사업이관)	28 (150)	20 (120)	-	-	-	-	-	-	-	48 (270)
레저스포츠시설 (*14년 지특사업이관)	-	34 (120)	13 (40)	14 (50)	-	-	-	-	-	61 (210)
마을단위체육시설 (사업종료)	3,478 (496)	-	-	-	-	-	-	-	-	3,478 (496)
간이체육시설 (사업종료)	88 (28)	-	-	-	-	-	-	-	-	88 (28)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사업종료)	26 (650)	-	-	-	-	-	-	-	-	26 (650)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https://www.kspo.or.kr/kspo/main/contents.do?menuNo=200104>)

### ① 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획일적 구성이 아닌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게 모델화된 체육시설 확대가 필요하여 1997년부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 시설이다. 현재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씩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지자체가 관라운영 중에 있다. 2018년부터 생활SOC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생활밀착형(도시성장형, 도시특화형, 소도시성장형, 소도시특화형), 생활권, 장애인형, 근린형소규모, 개방형다목적체육관 등이 있다.

지원유형에 따라 10~40억 원이 정액 지원되며, 일반형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10% 범위내 차등 지원되고, 추가 사업비(부지 매입비 등)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준공 된지 10년 이상 노후화된 국민체육센터가 약 41%(200개소 중 81개)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리모델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표 2-49〉 국민체육센터 공급목표

구분	현재 ('17.12월 기준)		'22년 (착수기준)	
	개소*	접근성	개소	접근성
수영장	406개 (1개소당 12.6만명)	22분 (9.1km)	600여개 (1개소당 8.5만명)	15분 (6km)
체육관	963개 (1개소당 5.3만명)	13분 (5.5km)	1,400여개 (1개소당 3.4만명)	10분 (4km)

자료: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2019), 「생활SOC 3개년계획(안)[2020~2022]」

개소\*: 1개소 당 인구수 - 수영장(일본 3.3만명, 호주 3.3만명), 체육관(일본 1.4만명)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은 학교 부지 또는 산업단지 부지를 활용하여 학생과 지역주민, 근로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이다. 2009년부터 학교 부지, 2018년부터는 산업단지 부지도 활용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체육관 또는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또는 산업단지이다. 지원 규모는 학교 내 일반형의 경우 4.8~9억 원 이내(기금 30%, 지자체 20%, 교육청 50%), 학교 내 수영장형은 30억 원 정액지원, 산업단지 내 복합형은 50억 원 이내(지자체 50% 매칭)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원시설은 강당 겸용 체육관, 전용 체육관, 수영장,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기본으로 하는 체육·문화 복합 실내체육관 등이 있다.

② 실외체육시설(야구장,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은 야구장, 축구장 등 급증하는 실외체육활동 수요에 대비하여 공급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화 시대 증가하는 노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욕구를 반영하고, 인공암벽, 인라인스케이팅 등 레저스포츠 수요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실외체육시설과 도시공원을 복합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 (예시) 약 5~15만㎡ 규모로 축구장(2면) + 야구장(2면) + 농구장 + 테니스장 + 레저시설(X스포츠, 암벽, 놀이터 등) + 도시공원

〈표 2-50〉 실외체육시설 공급목표

구분	현재 ('17.12월 기준)		'22년 (착수기준)	
	개소*	접근성	개소	접근성
야구장	269개 (1개소당 19만명)	30분 (12km)	400여개 (1개소당 13.7만명)	30분 (12km)
축구장	2,542개 (1개소당 2만명)	"	2,640여개 (1개소당 1.6만명)	"
노인건강 (게이트볼장)	1,479개	-	1,600여개	-
레저스포츠 (인공암벽장)	39개	-	50여개	-

자료: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2019), 「생활SOC 3개년계획(안)[2020~2022]」

개소\*: 1개소 당 인구수 - 야구(일본 1.8만명, 호주 13만명), 축구(호주 2만명, 영국 1.2만명)

또한 각 생활SOC 사업을 개별 진행하기 보다는 복합화를 통해 토지매입비, 공용공간 건축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도록 범부처 공동지원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표 2-51〉 표준-거점형 생활SOC 복합화 시설 표준 공간구성(안)

시설명	선정 사유	관계부처
(작은)도서관	지식·문화 기본시설로서 생활SOC 복합공급 시 기본 플랫폼시설, 이용 빈도가 높으며 외국대비 낮은 공급수준(1개소당 서비스 인구: 선진국 1~4만명 VS 한국 5만명)	문체부
실내체육관	생활체육 기본시설로서 생활SOC 복합 공급 시 기본 플랫폼시설, 이용 수요와 빈도가 높으며, 외국대비 낮은 공급 수준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 제공 가능, 국민체육센터·도서관 등과 복합 공급 시 시너지 효과	문체부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돌봄 포함)	초등 돌봄교실과 함께 초등자녀 필수 방과후 돌봄시설(저출산 대책 핵심시설)로 이용수요와 빈도가 높고 타 시설과 복합 공급	복지부
주차장	시설 이용자 및 주변 거주민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국토부

자료: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2019), 생활SOC 3개년계획(안)[2020-2022]

### 3. 생활문화 관련 해외사례

#### 가. 일본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생활문화 및 공민관

##### 1) 일본 문화예술진흥법

2001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서는 문화예술을 예술, 미디어예술, 전통예능, 예능, 생활문화, 문화재로 나누고 있다. 해당 법 제3장 제12조에서 말하는 생활문화란 차도, 꽃꽂이, 서도, 기타생활과 관련된 문화를 지칭한다. 2017년에는 해당 법이 개정이 되어 생활문화의 범위에 식문화가 추가된다.

#### 생활문화 진흥 및 국민오락 및 출판물 등의 보급

제12조 국가는 생활문화(차도, 꽃꽂이, 서예, 식문화, 기타 생활과 관련된 문화를 말한다.)의 진흥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민오락(바둑, 장기, 기타 국민적 오락을 말한다.)과 출판물 및 레코드 등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이에 관한 활동에 대한 지원,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 生活文化の振興並びに国民娯楽及び出版物等の普及

第十二条 国は、生活文化(茶道、華道、書道、食文化その他の生活に係る文化をいう。)の振興を図るとともに、国民娯楽(囲碁、将棋その他の国民的娯楽をいう。)並びに出版物及びレコード等の普及を図るため、これらに関する活動への支援その他の必要な施策を講ずるものとする。

〈표 2-52〉 일본 문화예술기본법의 예술 구분

구분	정의
예술	문학, 음악, 미술, 사진, 연극, 무용, 기타예술
미디어예술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및 컴퓨터, 기타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예술
전통예능	아악, 농악, 가부키 등 일본 국가 전통 예능
예능	전통 예능을 제외한 예능
생활문화	다도, 꽃꽂이, 서예, 식문화 기타 생활과 관련된 문화
국민오락	바둑, 장기, 기타 국민적 오락

일본에서는 생활문화의 개념을 이룬 시기에 국가법을 통해 정의내리고 제도적 지원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역시 추상적이고 일부 장르(다도, 서예, 꽃꽂이 등 전형적인 일본식 생활문화) 중심의 문화활동을 지칭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일본 내에서도 이에 대한 한계지적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본의 생활문화시설은 우리의 지역문화센터, 문화원 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보인다. 국내의 생활문화 정의가 내포하는 지역기반의 참여형 문화활동과 관련된 기능이 생활문화센터(및 기타기관)와 공민관으로 분리/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다<sup>37)</sup> 이와 더불어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콕걸쳐센터(생활문화협동조합센터), 리빙센터 등이 있으나 이들은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난다.

일본에서는 생활문화 이외에도 국토교통성에서 사용하는 ‘일상문화(暮らし文化)’ 개념도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생활문화의 개념과 일부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문화예술로서 문화향유의 성격보다는 문화인류학적 개념에서의 광범위한 문화적 삶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 역시 ‘지속가능한 일상문화’와 같이 환경-문화-사람의 관계에 집중하는 부분이다.

## 2) 공민관

### ① 설치배경

공민관은 일본의 공적 사회교육시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공공시설이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민주화에 따른 사회교육 시설로서 공민관 설치를 구상하였고, 1946년 7월 문부차관 통첩 ‘공민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를 통해 성립되었다. 해당 문서에서는

37) 이는 일부 조사결과를 통해 추론하는 내용일 뿐임. 그러나 인구감소 등의 문제로 인해 공민관이 감소하고 있고 이를 대체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음. 우리나라식의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음

설치 취지 및 목적을 “앞으로 일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풍부한 문화적 교양을 익히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사물을 생각하고 평화적·협동적으로 행동하는 습성을 양성하는 것이다. (중략) 이를 위해 교육의 보급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공민관은 “이른바 향토 공민학교, 도서관, 박물관, 공회당, 정촌민(町村民) 집회소, 산업 지도소 등의 기능을 겸한 문화교양기관”으로 설정했다.<sup>38)</sup> 즉 공민관은 국민의 문화적 교양 교육과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주민의 자주적·협동적 발전을 위한 기관인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지닌 공민관을 법적 근거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전후 일본의 사회적 재건을 위해 1949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다. 공민관에 대한 법률상의 내용은 제5장(제20조~제42조)에 명시되어 있다. 법에 따른 공민관의 목적은 “시정촌, 그 밖에 일정 구역 내의 주민을 위해 실제 생활에 입각한 교육, 학술 및 문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교양 향상, 건강 증진, 정서 순화를 도모하고 생활문화의 진흥,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sup>39)</sup>

교육기본법 제12조에도 공민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나타나는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사회교육 ‘조건정비’, ‘환경조성’에 관한 구체적 임무로 공민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회교육법」 내 공민관 관련 주요 내용**

**제5장 공민관 (제20조~제42조)**

**(목적)**

**제20조** 공민관은 시정촌, 그 밖에 일정 구역 내의 주민을 위해 실제 생활에 입각한 교육, 학술 및 문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교양 향상, 건강 증진, 정서 순화를 도모하고 생활문화의 진흥,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회관 사업)**

**제22조** 공민관은 제20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대체로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이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기 강좌를 개설할 것.
- 2) 토론회, 강습회, 강연회, 실습회, 전시회 등을 개최할 것
- 3) 도서, 기록, 모형, 자료 등을 갖추고 그 이용을 도모할 것
- 4)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에 관한 집회를 개최할 것
- (5) 각종 단체, 기관 등의 연락을 취할 것
- (6) 해당 시설을 주민의 집회 및 기타 공공적 이용에 제공할 것

38) 이미애(2017), 『일본의 고령화와 공민관의 역할』, 『일본어문학』, 제79호 333쪽

39) elaws.e-gov.go.jp

**(운영 상황에 관한 평가 등)**

**제32조** 공민관은 해당 공민관의 운영상황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그 결과에 따라 공민관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32조의2** 공민관은 해당 공민관의 사업에 관한 지역주민 및 그 밖의 관계자의 이해를 심화하는 동시에 이러한 자들과의 연계 및 협력 추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당 공민관의 운영상황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대변화에 의한 개정

국민들의 다양화 및 고도화되는 학습 요구나 생애학습사회의 발전, 지방분권의 추진 등 새로운 상황의 변화와 함께 향후 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사회교육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2002년 11월 15일 「공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재검토 검토회 설치 요강이 제정되어 2003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앞의 기준의 대강령화, 탄력화 등을 포함해 크게 재검토가 진행되었다. 이는 ‘취지’, ‘대상 구역’, ‘지역의 학습 거점으로서의 기능 발휘’, ‘지역의 가정교육 지원 거점으로서의 기능 발휘’, ‘봉사활동·체험활동 추진’, ‘학교, 가정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 등’, ‘지역 실정에 입각한 운영’, ‘직원’, ‘시설 및 설비’, ‘사업의 자기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의 핵심은 ① 집회와 활용 ‘모이다’ - 지역생활에 근간을 둔 사업, ② 학습과 창조 ‘배우다’ - 생활문화를 고취하는 사업, ③ 종합과 정비 ‘이어주다’ - 지역을 연대하고 강화하는 사업, 총 세 가지로 나타난다. 반면, 초기 제정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시설 기준은 삭제되었고,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이를 설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대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시설의 설비를 갖추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공민관 현황

공민관 설치 개수는 1981년(昭和56年)에 전국적으로 17,222개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平成20年)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40) 2018년 기준 전국에 14,281개의 공민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민관의 감소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현재 공민관은 지역 내 다른 공공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복합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존의 역할과는 다른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40) 国立教育政策研究所(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al Research), 平成26年度 公民館に関する基礎資料 번역 발췌



수행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

공민관은 지역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학습거점일 뿐만 아니라 교류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의 공민관 수(공민관 유사 시설 포함)는 1만 4,281관이었다.(2018년도 사회교육조사)

·공민관에서는 주민의 학습 요구나 지역의 실정에 응한 다양한 학습 기회의 제공을 하고 있다. 더불어 향후에는 사회의 요청에 정확하게 대응한 대처나, 아이나 젊은이, 한창 일할 나이인 세대를 포함하여, 지역 주민 전체가 부담 없이 모일 수 있는, 인간력의 향상 등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거점이 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자료: 문부과학성 홈페이지(<https://www.mext.go.jp/>)

### 3) 일본 공공시설 재정지원<sup>41)</sup>

일본은 인구감소와 지방재정 악화를 고려하여 공공시설의 통폐합 및 리모델링에 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14년~)하고 있다. 종합관리계획을 통해 공공시설의 집약화·복합화 사업의 경우 재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며,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 SOC의 집약 및 복합화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공공시설의 현황 파악 및 이용평가를 통해 개·보수 통·폐합, 이전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적정입지를 선정한다. 이 때 공공시설의 노후도, 기능, 입지 등 3가지 평가를 통해 시설 재배치 방침을 정한다.

## 나. 프랑스 문화의 집(Maison de la culture)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헌법에 문화에 대한 동등한 접근 권리를 규정하게 되면서 1959년에 문화부를 설립하였고, 본격적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sup>42)</sup>

1960년대 문화부가 설립됨에 따라 앙드레 말로(Andre Malraux)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역의 문화적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에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파리를 중심으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고급문화를 각 지역에 보급하고자 문화의 집(Maison de la culture)을 설립하였다. 문화의 집은 파리와 일부 엘리트 계층에만 집중되었던 문화예술을 전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41)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2019), 생활SOC 3개년계획(안)[2020~2022] 참고

42) 강수현(2020),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보정역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20쪽

지역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를 통한 국민의식을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었다.<sup>43)</sup>

[그림 2-27] Maison de la culture



출처: 위키피디아 ([https://fr.wikipedia.org/wiki/Maison\\_de\\_la\\_culture\\_de\\_Bourges](https://fr.wikipedia.org/wiki/Maison_de_la_culture_de_Bourges))

프랑스 문화의 집은 지방분권과 지역 활동의 교혼을 추구하였는데, 1970년대 분권화가 가속화 되며 지역의회 의원들이 지역문화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프랑스 문화의 집은 1980년대까지 건립되었고 90년대 이후부터는 신규로 조성되고 있지 않다.<sup>44)</sup>

## 다. 독일

### 1) 독일 사회문화(Soziokultur)<sup>45)</sup>

1970년 11월 프랑크푸르트 시의회에서 독일의 문화학자 힐마 호프만(Hilmar Hoffmann)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일반시민들을 중심으로 누구나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이를 위한 문화(Kultur für alle)’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새롭게 사회문화(Soziokultur)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소외 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고급 예술이 아닌 영화, 연극, 방송 등과 같은 대중적인 분야의 예술 장르를 지원하였다. 더불어 개인의 문화적 욕구를 통해 문화 창작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졌다.<sup>46)</sup>

이에 독일에서는 ‘모두를 위한 문화’를 표방하는 ‘사회문화’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사회문화란 모든 분야의 문화예술을 포함한 문화적 활동을 말하며, 지역 사회나 문화 단체

43) 배준규(2010),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문화정책」, 『프랑스문화연구』, 제20호, 177쪽

44) 위키피디아 “Maison de la culture” 참조 ([https://fr.wikipedia.org/wiki/Maison\\_de\\_la\\_culture](https://fr.wikipedia.org/wiki/Maison_de_la_culture)) 최종확인 2021.9.29

45) 강수현(2020),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보정역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쪽, 57~58쪽

46) 김면 (2016). 「독일의 문화정책과 국가브랜드 전략」. 『문화콘텐츠연구』 제8호, 146~147쪽

또는 개인의 활동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독일의 '사회문화센터'는 이러한 사회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자유롭게 참여하며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일상적 경험이나 사회적으로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을 문화 향유의 주체이자 적극적인 참여자로 만들고자 한다.

## 2) 사회문화센터(Kulturzentrum)<sup>47)</sup>

독일의 사회문화센터는 공식문화에서 배제된 시민들을 위해 문화예술과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접근성 목적으로 역할하고 있다. 센터 내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하며 특히 장르간의 협업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센터의 회원들은 전문적인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자기개발이 가능하며, 준전문가 수준의 예술가들에게는 리허설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의회나 주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연방정부로부터는 자율적이며 지역, 연방 차원의 위원회나 행정기관에 속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sup>48)</sup>

사회문화센터에서는 음악, 연극, 영화 등 어떠한 형태의 예술이든지 가능하며, 어떤 종류의 예술 이던지 어떻게 표출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 따라서 해당 도시나 지역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사회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형태가 다르다.<sup>49)</sup>

또한, 전문예술가와 일반인들의 협력을 통한 문화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여기며, 일반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밖에도 다문화의 관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 등 소수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독일인과 이들 사이의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 라. 해외사례 시사점

일본의 경우 문화예술진흥의 관점에서 장르를 다양화 하는 노력과 더불어 관련 시설인 공민관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문화 민주주의 관점에서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문화의 집 정책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의 집 조성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90년

47) 강수현(2020), 11쪽, 57~58쪽

48) 정광렬(2017),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7쪽

49) 강윤주(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129쪽

대 이후 프랑스에서는 문화의 집이 조성되고 있지 않고, 이미 건립된 문화의 집은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현황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독일의 사회문화센터의 경우 지역 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교류를 주로 목표로 하기에 생활문화 분야보다 문화다양성,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에 더 적합한 사례인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생활문화'라는 개념이 주민 참여, 주체성, 공동체성에 있어서 타 국가들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관련 정책과 생활문화센터의 조성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생활문화 정책은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문화 범위 설정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 방안

제3장

##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센터 관련 의견 조사



# 제1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분석

---

## 1. 조사 개요

### 가. 조사 목적

대국민 설문은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는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 두 번째는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이해 및 활용 경험이다. 첫 번째로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은 생활문화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일상 경험과 의견에 대한 동의 형태로 질문하여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한다. 두 번째는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경험과 해당 시설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생활문화에 대한 범위의 합의점을 좁히고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인지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 나.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일반국민이다. 단, 표본의 확보를 위하여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설계는 행정안전부 2021년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로 추진되었으며 1,000명이 응답하였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pm 3.10\%p$ 이다. 조사기간은 2021년 7월 4주부터 8월 1주까지 약 10일 간 진행하였다. 대국민 대상 설문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1〉 대국민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표본수(명)	구성비(%)
		(1000)	100.0
성별	남성	(508)	50.8
	여성	(492)	49.2
출생년도	19~29세 이하	(206)	20.6
	30대	(198)	19.8
	40대	(233)	23.3
	50대	(246)	24.6
	60세 이상	(117)	11.7
지역별	서울	(193)	19.3
	경기/인천	(326)	32.6
	충청	(106)	10.6
	전라	(92)	9.2
	경북	(241)	24.1
	경남	(42)	4.2
거주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동지역	(471)	47.1
	일반 시의 동 지역	(439)	43.9
	읍/면지역	(90)	9.0
직업	대학생/대학원생	(79)	7.9
	주부	(132)	13.2
	자영업	(76)	7.6
	회사원/전문직/ 노무/서비스직	(574)	57.4
	은퇴자/무직	(80)	8.0
	공무원/교직원	(59)	5.9
최근 3년 문화시설 방문 경험	방문 경험 있음	(962)	96.2
	방문 경험 없음	(38)	3.8
생활문화센터 인지도	인지	(475)	47.5
	비인지	(525)	52.5

#### 다.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응답자 기본정보, 문화기반시설 이용실태와 생활문화센터 이용 경험, 생활문화 인지 및 인식 조사,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문화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이용 경험을 질문하여 생활문화센터 이용과의 비율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인지와 경험을 조사하여 향후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운영 방향 도출에 기여하고자 설문을 구성하였다.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은 국민이 생활문화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아보기로 함인데, 이는 생활문화에 대한 인지 범위에 따라 정책 수요가 달라질 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설계하였다.

〈표 3-2〉 대국민 설문조사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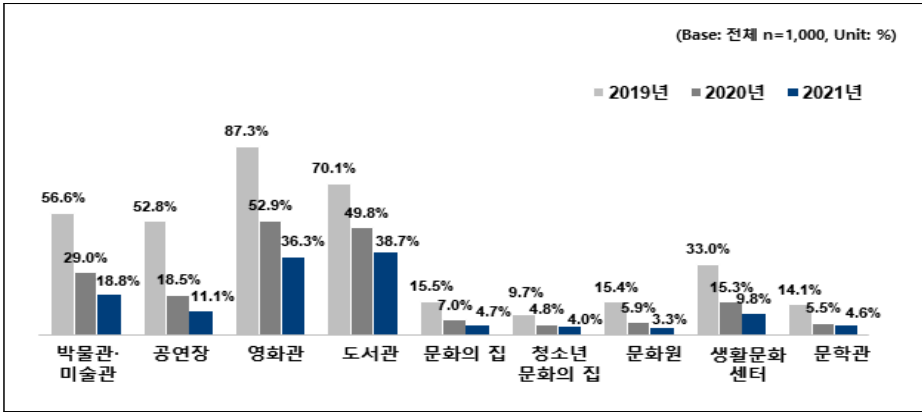
대분류	주요 내용
응답자 기본 정보	성/연령 거주지역 및 거주지역 유형 직업
문화기반시설 이용 실태와 생활문화센터 이용 경험	최근 3년(2019~2021년) 문화시설 방문 경험
생활문화센터 인지 및 인식 조사	생활문화센터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생활문화센터 방문 경험 및 장소 생활문화센터 방문 횟수 생활문화센터 방문 시 동행자 생활문화센터 방문 목적 향후 생활문화센터 방문 의향 생활문화센터에 필요한 서비스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	생활문화에 대한 의견 평소 생활문화 영위 여부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추가 의견

## 2. 문화시설 이용 실태와 생활문화센터 이용 경험

### 가. 2019년~2021년 문화시설 직접 방문 여부

응답자의 문화시설 이용 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대표적인 문화시설의 방문 행태를 질문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되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2019년의 경험과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도, 그리고 거리두기 지침이 정착한 올해의 시설 직접 방문여부를 확인한 결과 3개년도 모두 영화관과 도서관의 방문비율이 높았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영화관-도서관-박물관·미술관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으며, 2021년에는 영화관보다 도서관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2019년에는 이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였으나 2020년 15.3%, 2021년 9.8%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그림 3-1] 2019~2021년 문화시설 직접 방문 여부



<표 3-3> 2019~2021년 문화시설 직접 방문 응답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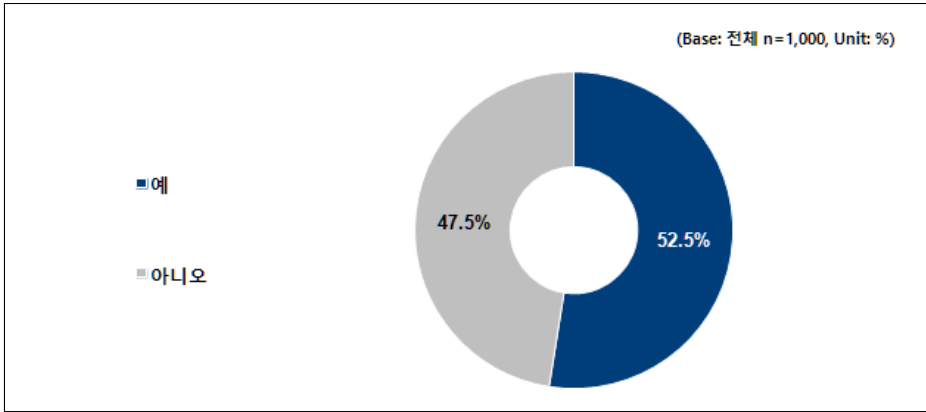
구분 연도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야외 음악당 포함)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작은도서관 포함)	문화의 집	청소년문 화의집	문화원	생활 문화 센터	문학회
2019	56.6	52.8	87.3	70.1	15.5	9.7	15.4	33.0	14.1
2020	29.0	18.5	52.9	49.8	7.0	4.8	5.9	15.3	5.5
2021	18.8	11.1	36.3	38.7	4.7	4.0	3.3	9.8	4.6

### 3. 생활문화센터 인지 및 의식 조사

#### 가. 생활문화센터 인지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반 정도인 52.5%가 생활문화센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세대와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60세 이상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높았던 반면 30~39세 이하가 32.3%, 19~29세 이하가 35.4%로 낮게 나타났다. 노년층이 생활문화센터를 인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청년층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직종에 따라서도 대학생/대학원생이 알고 있다는 응답이 31.6%로 낮아 청년층에서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3-2] 생활문화센터 인지도



<표 3-4> 생활문화센터 인지도 응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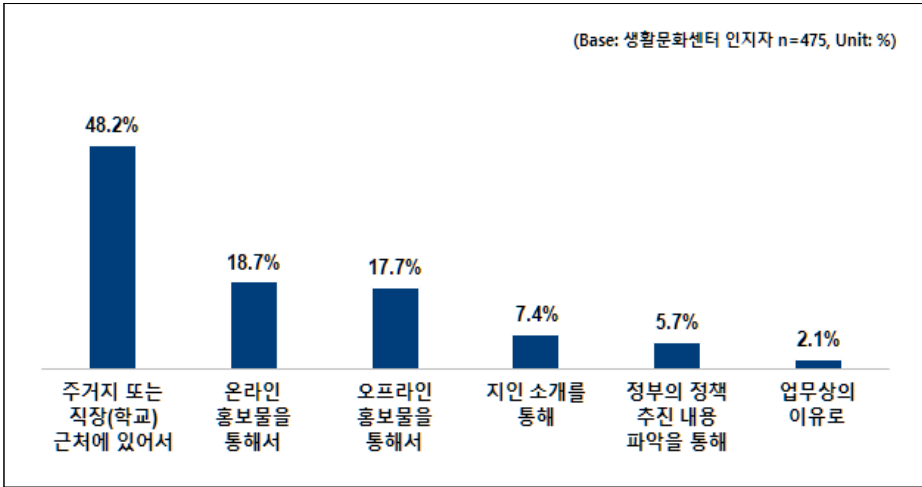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응답자 수	예	아니오
전체		(1000)	47.5	52.5
출생년도	19~29세 이하	(206)	35.4	64.6
	30~39세 이하	(198)	32.3	67.7
	40~49세 이하	(233)	48.5	51.5
	50~59세 이하	(246)	59.8	40.2
	60세 이상	(117)	66.7	33.3
직업	대학생/대학원생	(79)	31.6	68.4
	주부	(132)	57.6	42.4
	자영업	(76)	50.0	50.0
	회사원/전문직/노무/서비스직	(574)	47.7	52.3
	은퇴자/무직	(80)	47.5	52.5
	공무원/교직원	(59)	40.7	59.3

#### 나. 생활문화센터 인지 경로

생활문화센터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주거지 또는 직장(학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알게 됐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홍보물을 통해 생활문화센터를 알게 됐다는 응답이 18.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오프라인 홍보물(17.7%), 지인 소개(7.4%), 정부 정책 추진 내용 파악(5.7%), 업무상의 이유(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 생활문화센터 인지 경로 전체 결과



지역별 응답자 대부분이 ‘주거지 또는 직장 근처에 있어서 생활문화센터를 알게 됐다’고 응답하였지만, 경남의 경우 ‘온라인 홍보물을 통해서’가 36%로 ‘주거지 또는 직장(학교) 근처’라는 응답(40%)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프라인 홍보로 유입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북(24.1%)이었다.

〈표 3-5〉 생활문화센터 인지 경로 지역별 응답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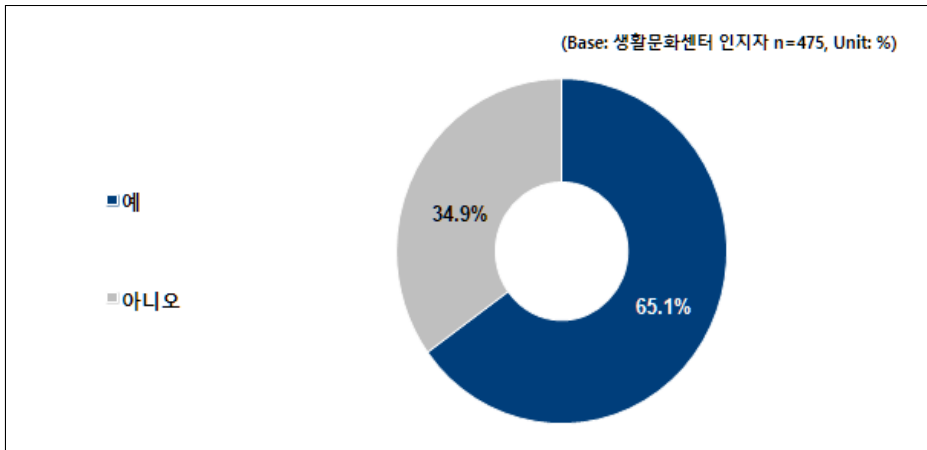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거지 또는 직장(학교) 근처에 있어서	온라인 홍보물을 통해서 (홈페이지, 유튜브, sns 등)	오프라인 홍보물을 통해서 (현수막, 리플렛 등)	지인 소개를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 내용 파악을 통해	업무상의 이유로	모름
거주 지역	서울 (84)	50.0	19.0	19.0	3.6	4.8	3.6	0.0
	경기/인천 (159)	54.1	17.0	16.4	3.8	6.3	1.9	0.6
	충청 (51)	54.9	15.7	7.8	13.7	5.9	2.0	0.0
	전라 (44)	40.9	27.3	20.5	6.8	4.5	0.0	0.0
	경북 (112)	40.2	15.2	24.1	12.5	5.4	2.7	0.0
	경남 (25)	40.0	36.0	8.0	8.0	8.0	0.0	0.0

#### 다. 생활문화센터 방문 경험

생활문화센터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475명) 중 실제로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65.1%(309명)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60세 이상은 '직접방문했다'에 71.8%가 응답하여 방문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19~29세 이하는 53.4%로 방문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4] 생활문화센터 방문 경험



<표 3-6> 나이대별 생활문화센터 방문 경험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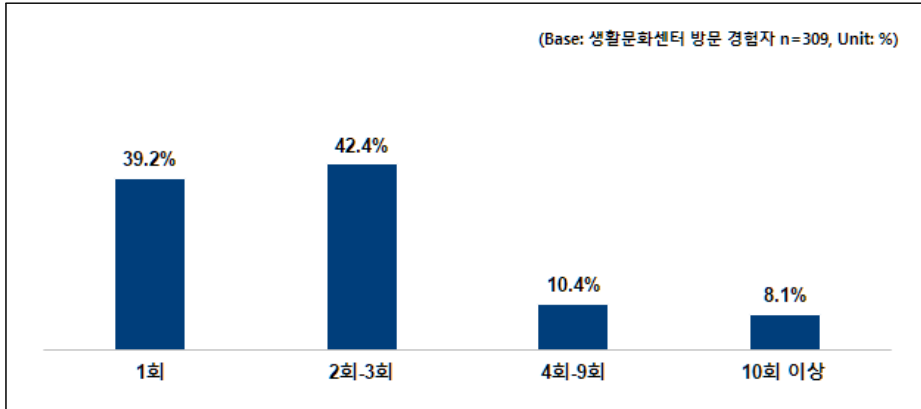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출생년도	19~29세 이하	(73)	53.4	46.6
	30~39세 이하	(64)	60.9	39.1
	40~49세 이하	(113)	66.4	33.6
	50~59세 이하	(147)	68.0	32.0
	60세 이상	(78)	71.8	28.2

## 라. 지난 3년간 생활문화센터 방문 횟수

생활문화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지난 3년(2019~2021년) 동안 방문 횟수는 2~3회가 42.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1회가 39.2%로 상당수가 1~3회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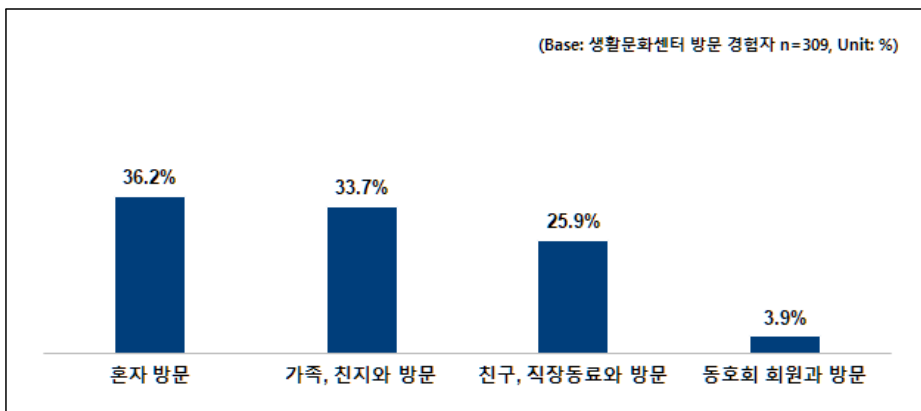
[그림 3-5] 지난 3년간 생활문화센터 방문 횟수



## 마. 생활문화센터 방문 동반자

생활문화센터 방문 동반자에 대한 질문에 혼자 방문한 경우가 3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친지와 방문한 경우가 33.7%, 친구·직장동료가 25.9%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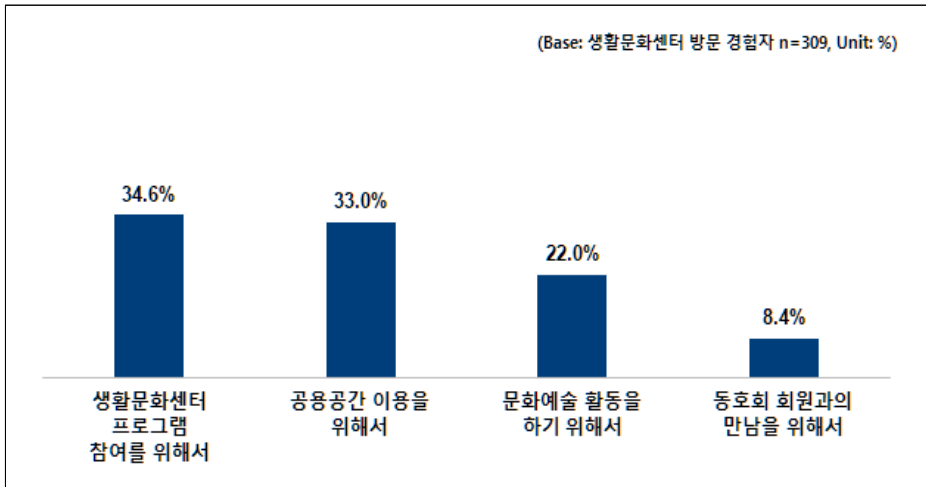
[그림 3-6] 생활문화센터 방문 동반자 조사 결과



## 바. 생활문화센터 방문 목적

생활문화센터 방문자들의 목적은 ‘센터 프로그램 참여’가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3%로 나타나 주로 센터를 활용하기 위함으로 조사됐다. 또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22%로 나타났다.

[그림 3-7] 생활문화센터 방문 목적



남성과 여성의 방문 목적 유형은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이 ‘공용공간 이용을 위해’ 방문했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던 반면, 여성은 ‘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45.1%로 1순위를 기록하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도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거주 지역 유형에서 읍/면 지역이 45.5%로 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주로 센터를 방문했다면, 특별·광역시외의 경우는 공용공간 이용이 37.7%로 가장 많았다.

〈표 3-7〉 생활문화센터 방문 목적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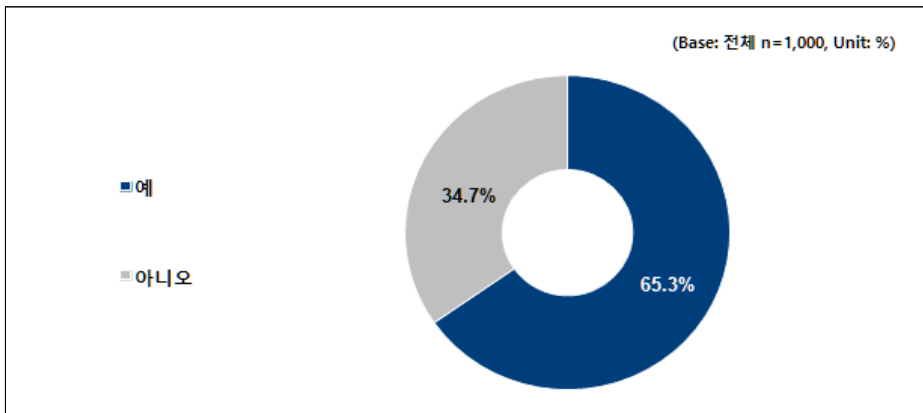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생활문화 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	공용공간 (독서공간, 부역공간 등) 이용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호회 회원과의 만남을 위해서	궁금해서	경험삼아
성별	남성	(147)	23.1	46.3	21.1	8.2	0.7	0.7
	여성	(162)	45.1	21.0	22.8	8.6	2.5	0.0
출생 년도	19~29세 이하	(39)	25.6	43.6	23.1	5.1	2.6	0.0
	30~39세 이하	(39)	15.4	48.7	25.6	7.7	0.0	2.6
	40~49세 이하	(75)	38.7	28.0	24.0	8.0	1.3	0.0
	50~59세 이하	(100)	40.0	32.0	20.0	7.0	1.0	0.0
	60세 이상	(56)	39.3	23.2	19.6	14.3	3.6	0.0
거주 지역	서울	(59)	28.8	40.7	16.9	10.2	3.4	0.0
	경기/인천	(103)	33.0	36.9	21.4	5.8	1.9	1.0
	충청	(26)	34.6	38.5	15.4	11.5	0.0	0.0
	전라	(26)	34.6	23.1	38.5	3.8	0.0	0.0
	경북	(82)	40.2	26.8	23.2	8.5	1.2	0.0
	경남	(13)	38.5	15.4	23.1	23.1	0.0	0.0
거주 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동지역	(151)	33.1	37.7	20.5	6.0	2.6	0.0
	일반 시의 동 지역	(136)	34.6	30.1	24.3	9.6	0.7	0.7
	읍/면지역	(22)	45.5	18.2	18.2	18.2	0.0	0.0
직업	대학생/대학원생	(16)	18.8	37.5	31.3	6.3	6.3	0.0
	주부	(56)	46.4	17.9	21.4	10.7	3.6	0.0
	자영업	(27)	44.4	40.7	11.1	3.7	0.0	0.0
	회사원/전문직/ 노무/서비스직	(176)	31.3	35.2	22.7	9.1	1.1	0.6
	은퇴자/무직	(17)	41.2	35.3	17.6	5.9	0.0	0.0
	공무원/교직원	(17)	23.5	41.2	29.4	5.9	0.0	0.0



### 사. 생활문화센터 향후 방문 의향

생활문화센터의 기존 방문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응답자 1천 명에게 생활문화센터 방문 의향을 물은 결과 응답자 중 65.3%가 생활문화센터를 향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방문 의향이 있는 경우 연령별로 60세 이상이 86.3%로 가장 높았으며 19~29세 이하 청년층은 51.5%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71.5%, 직업에서는 주부 78%로 생활문화센터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3-8] 생활문화센터 향후 방문 의향



〈표 3-8〉 생활문화센터 향후 방문의향 성별, 나이별, 직업별 결과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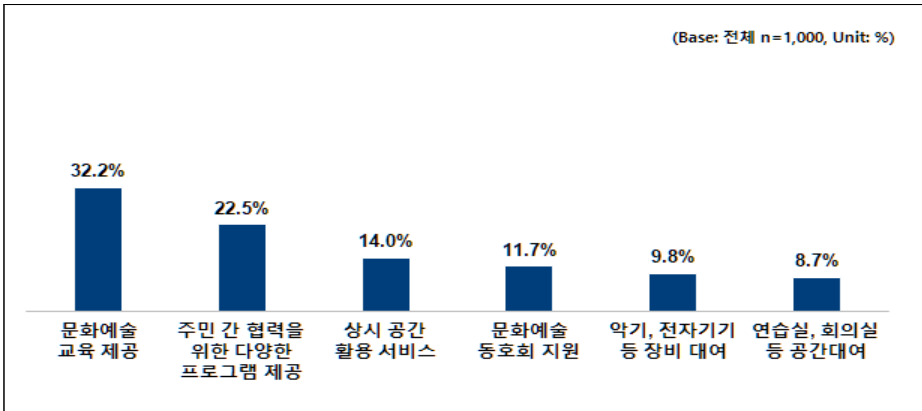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000)	65.3	34.7
성별	남성	(508)	59.3	40.7
	여성	(492)	71.5	28.5
출생년도	19~29세 이하	(206)	51.5	48.5
	30~39세 이하	(198)	54.0	46.0
	40~49세 이하	(233)	64.4	35.6
	50~59세 이하	(246)	76.8	23.2
	60세 이상	(117)	86.3	13.7
직업	대학생/대학원생	(79)	57.0	43.0
	주부	(132)	78.0	22.0
	자영업	(76)	60.5	39.5
	회사원/전문직/노무/서비스직	(574)	64.6	35.4
	은퇴자/무직	(80)	55.0	45.0
	공무원/교직원	(59)	74.6	25.4

### 아. 생활문화센터에 필요한 서비스

생활문화센터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문화예술 교육 제공’이 32.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주민 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22.5%였으며, 이외에도 ‘상시 공간활용’(14%),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11.7%), ‘악기, 전자기기 등 장비 대여’(9.8%), ‘연습실, 회의실 등 공간대여’(8.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9] 생활문화센터 필요한 서비스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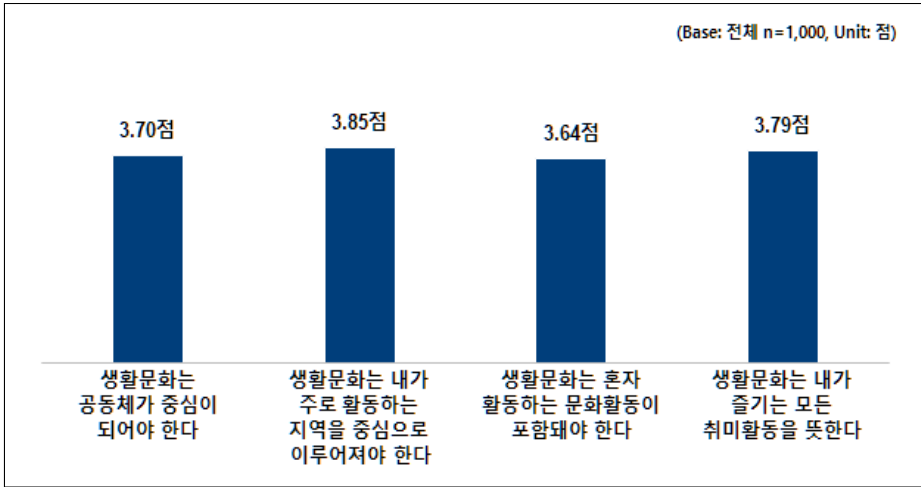
## 4.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

### 가. 생활문화 지역(공동체)성에 대한 인식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매우 동의한다 5점)로 조사를 진행했다. 총 5가지 분야(지역·공동체성, 시공간성, 예술성, 아마추어 구분, 경제성)에서 13개 항목에 조사가 이뤄졌다.

먼저 생활문화의 지역·공동체성 분야 조사에서는 4가지 항목(공동체 중심, 지역 중심, 혼자만의 문화활동, 개인의 모든 취미활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항목 중에는 ‘내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3.85점으로 타 항목에 비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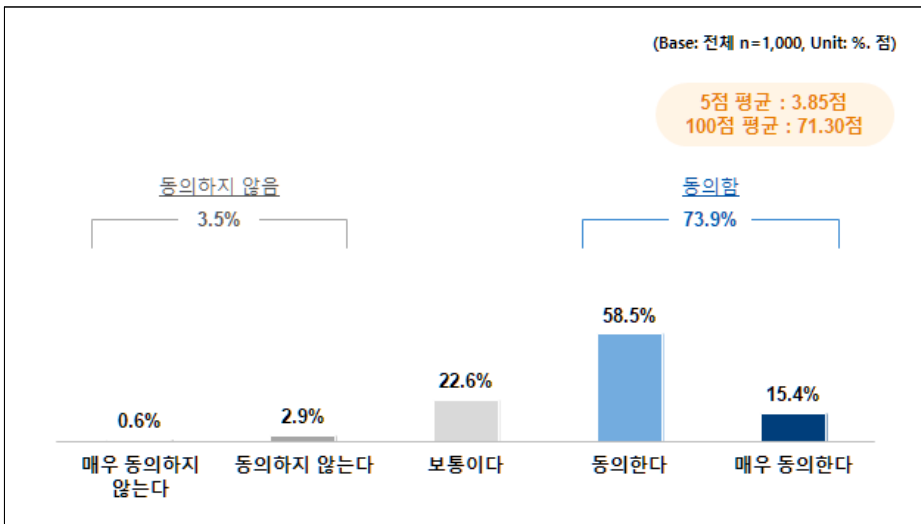
[그림 3-10] 생활문화의 지역 및 공동체성 인식 조사 결과



### 1) 생활문화의 지역성

‘생활문화는 내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거주, 학업, 일)을 중심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73.9%로 타 항목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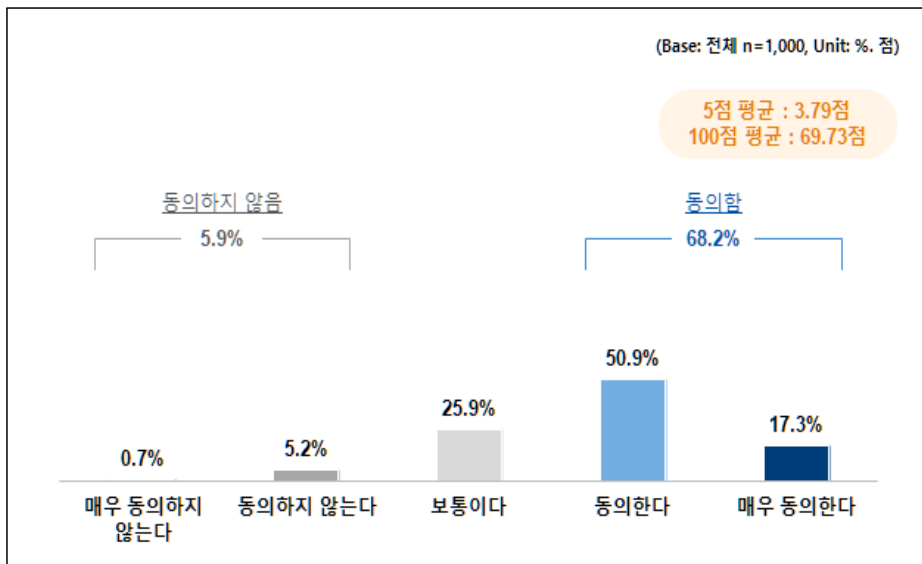
[그림 3-11] “생활문화는 내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 중심으로 이뤄져야한다”의 응답 결과



## 2) 생활문화와 취미활동

‘생활문화는 내가 즐기는 모든 취미활동’이라는 항목에 대한 인식도 3.79점으로 지역성에 이어 다음으로 높아 ‘개인의 취미활동’을 생활문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문화가 취미활동이라는 인식에 동의한다(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는 비율도 68.2%를 나타냈는데, 특히 4가지 지역·공동체 항목 가운데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17.3%)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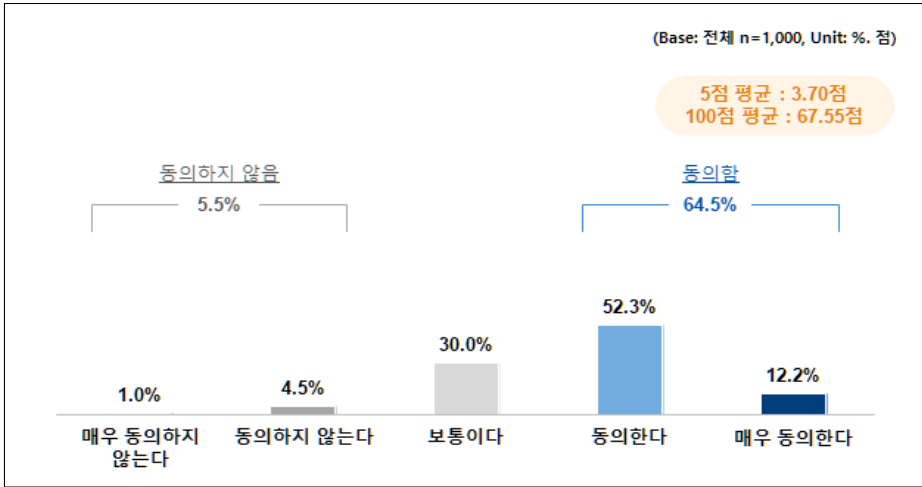
[그림 3-12] “생활문화는 내가 즐기는 모든 취미활동이다”의 응답 결과



## 3) 생활문화와 공동체에 대한 인식

‘생활문화는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항목은 3.7점이었으며, 동의한다(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64.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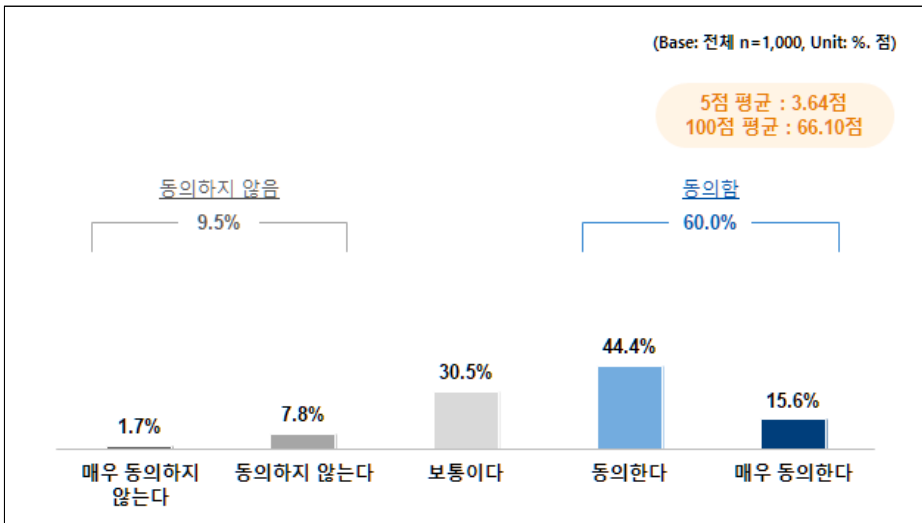
[그림 3-13] “생활문화는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의 응답 결과



#### 4) 생활문화와 개인성

혼자 활동하는 문화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평균 3.64점으로 지역·공동체 조사 항목 중 가장 낮았고, 동의한다(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의 응답률은 6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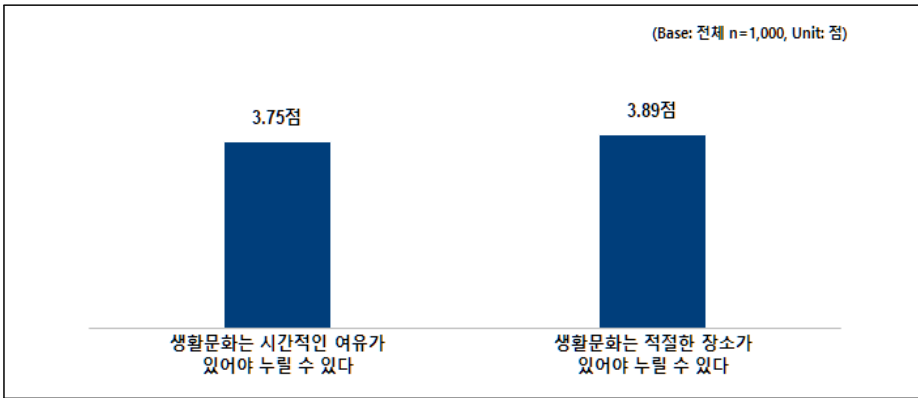
[그림 3-14] “생활문화는 혼자 활동하는 문화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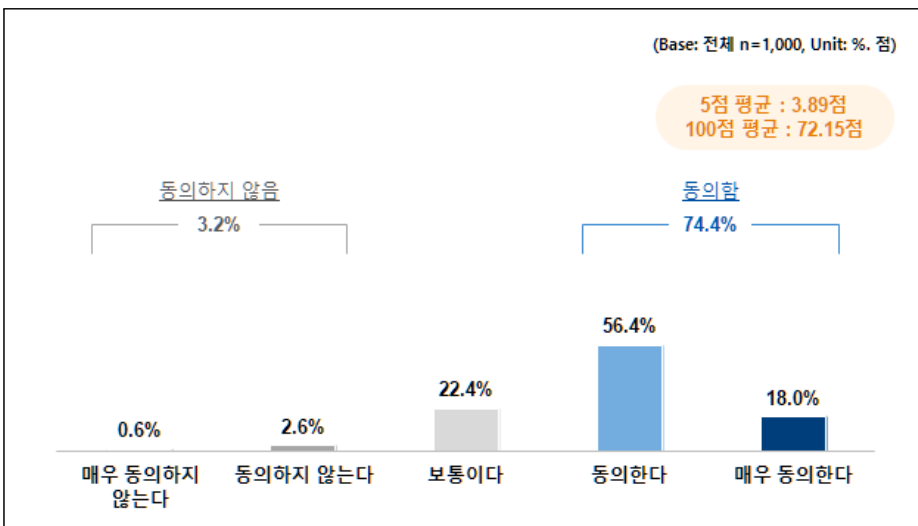
## 나. 생활문화 시·공간성에 대한 인식

시·공간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생활문화를 누리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시간적 여유, 적절한 장소의 필요성 여부를 질문하였다. 두 항목 모두 동의한다는 비중이 높게 나왔는데 특히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3.8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전체 13개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다. 즉 앞서 생활문화센터 인지 및 이용실적 조사와 마찬가지로, 생활문화 향유 시 ‘공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3-15] 생활문화 시·공간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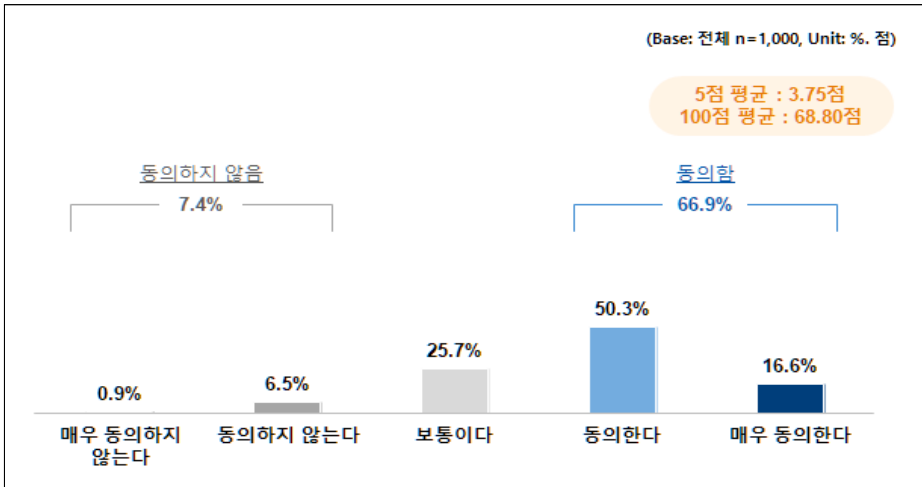


[그림 3-16] “생활문화는 적절한 장소가 있어야 누릴 수 있다”의 응답 결과



생활문화를 누리기 위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조사 역시 3.75점으로 높아,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여유도 생활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역시 66.9%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다)이 7.4%를 기록한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3-17] “생활문화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누릴 수 있다”의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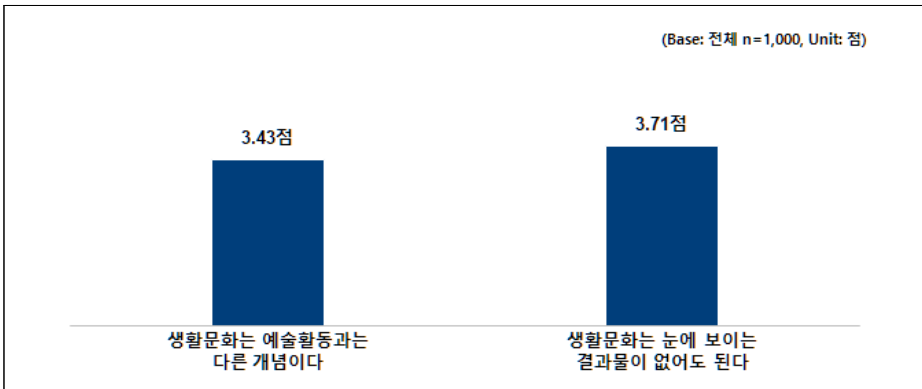


### 다. 생활문화의 예술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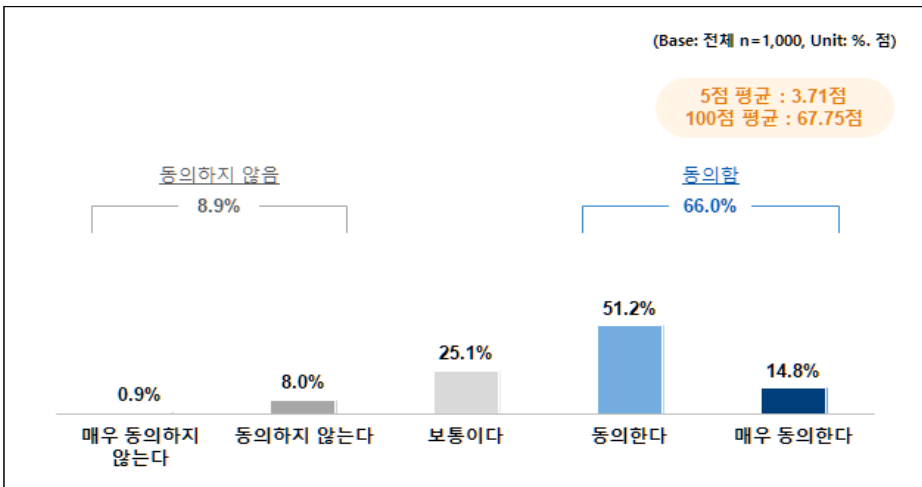
예술성의 개념으로 생활문화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항목(생활문화와 예술 활동과는 다른 개념, 생활문화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 유무)으로 조사했다.

이들 중 생활문화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도 된다는 항목은 5점 평균 3.71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문화는 예술 활동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응답은 3.43점으로 이들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크게 상회했다. 즉 생활문화에 대해 일반적인 인식은 결과물 등 특정 목표를 위한 일반 예술 활동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그림 3-18] 생활문화의 예술성에 대한 인식



[그림 3-19] “생활문화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도 된다”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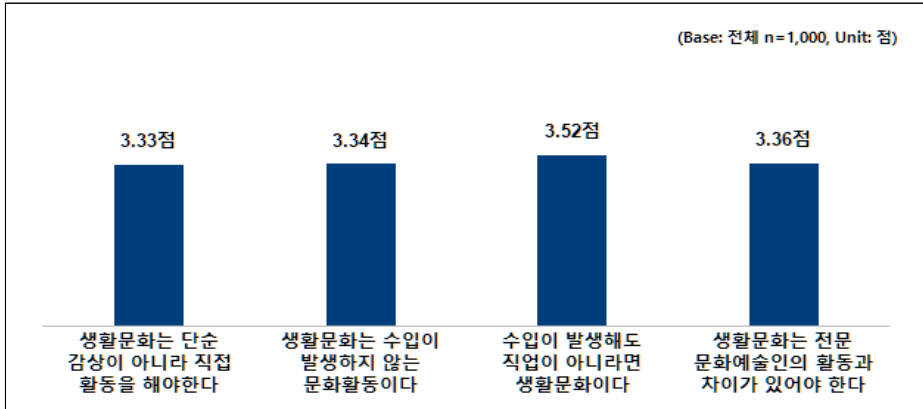




## 라. 생활문화의 구분에 대한 의견

생활문화를 수입이 발생하는 전문 문화예술인과 아마추어로 구분하는 인식에 대해서는 4가지 항목(단순 감상만이 아닌 직접 활동, 수입 없는 활동, 수입 발생해도 직업 아닌 활동, 전문 문화 예술인과 차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그림 3-20] 생활문화의 구분에 대한 인식



이들 중에는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직업이 아니라면 생활문화’라는 응답이 5점 만점 중 3.52점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동의률을 보였다. 즉 문화 분야를 ‘직업’으로 두고 있는 지에 대한 여부가 생활문화(아마추어)와 전문예술인을 구분 짓는 가장 큰 차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생활문화는 전문 문화예술인 활동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3.36점, 생활문화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활동이라는 응답이 3.34점, 단순 감상이 아닌 직접 활동이라는 응답은 3.33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생활문화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문화 활동’이라는 항목과 ‘생활문화는 전문 문화예술활동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3-9> 생활문화의 정의 구분에 대한 동의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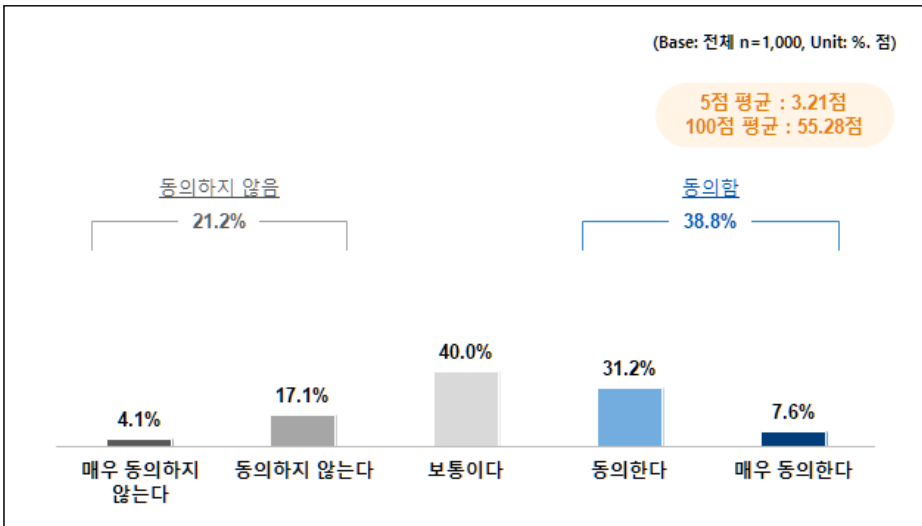
문항	생활문화는 단순 감상이 아니라 직접 활동을 해야 한다	생활문화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문화활동이다	수입이 발생해도 직업(주 수입발생)이 아니라면 생활문화이다	생활문화는 전문 문화 예술인의 활동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응답결과	44.6	42.7	53.4	45.2

### 마. 생활문화 경제성에 대한 인식

생활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 조사에서는 5점 평균에서 3.21점, 보통이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다만 생활 경제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이 38.8%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다)에 21.2%에 높았다. 즉 생활문화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어느정도 드러낸 것이다.

한편 5점 평균 및 동의·동의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비교했을 때, 앞서 조사한 ‘시·공간성 인식’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낮은 것이다. 즉 생활문화를 향유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간과 시간적 여유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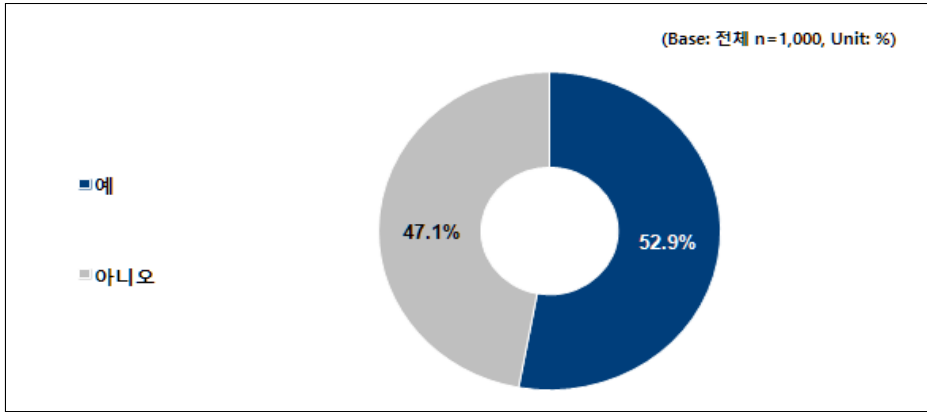
[그림 3-21] “생활문화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누릴 수 있다”의 응답 결과



### 사. 평소 생활문화 영위 여부

평소 생활문화를 영위하고 있는 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52.9%가 ‘있다’고 답하며, 대부분 세부 항목에서 영위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다만 연령별로는 40세~49세 이하, 거주 유형별로는 읍/면 지역, 직종별로는 은퇴자·무직, 생활문화 센터를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생활문화를 영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그림 3-22] 평소 생활문화 영위 여부



〈표 3-10〉 생활문화 영위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1000)	52.9	47.1
출생년도	19~29세 이하	(206)	56.8	43.2
	30~39세 이하	(198)	55.6	44.4
	40~49세 이하	(233)	47.6	52.4
	50~59세 이하	(246)	51.6	48.4
	60세 이상	(117)	54.7	45.3
거주지역 유형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동지역	(471)	53.5	46.5
	일반 시의 동 지역	(439)	53.5	46.5
	읍/면지역	(90)	46.7	53.3
직업	대학생/대학원생	(79)	69.6	30.4
	주부	(132)	55.3	44.7
	자영업	(76)	59.2	40.8
	회사원/전문직/노무/ 서비스직	(574)	50.9	49.1
	은퇴자/무직	(80)	40.0	60.0
	공무원/교직원	(59)	54.2	45.8
생활문화센터 인지도	인지	(475)	65.1	34.9
	비인지	(525)	41.9	58.1

## 제2절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

### 1. 조사개요

#### 가. 조사 목적

생활문화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생활문화센터 정책사업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가 있었다.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는 익명보장이 되는 설문 특성을 활용하여 생활문화의 정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지, 생활문화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의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 나.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문화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연구자, 교수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과 생활문화센터 및 관련 업무를 소관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집단,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운영인력 혹은 위탁운영기관 소속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표본은 교수 및 강사 30명, 공무원 집단 60명, 생활문화센터 운영 담당자 80명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 수는 총 90명이었으며 설문 참여 집단 중 문화관련 기관 직원이 44명(49%)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생활문화센터의 위탁 용역을 담당하는 문화재단, 문화원 등에 소속된 직원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로 많은 집단은 생활문화센터 소속 직원으로 21명(23%)이었다. 반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집단에서는 16명(18%)이 응답하였는데, 설문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관련하여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어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수 및 강사 집단은 6명(7%)이 참여하였다. 기타는 소속이 변경되어 4개 집단에 소속되지 않았으나 생활문화센터 관련 업무 참여 경험자로 나타났다.

〈표 3-11〉 전문가 대상 설문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표본수(명)	구성비(%)
전체		90	100
성별	남성	38	42.2
	여성	52	57.8
연령	20대	8	8.9
	30대	39	43.3
	40대	25	27.8
	50대	18	20.0
거주지역	서울	20	22.2
	경기/인천	11	12.2
	충청	13	14.4
	전라	14	15.6
	경북	9	10.0
	경남	15	16.7
	강원/제주	8	8.9
직업	교수 및 강사	6	6.7
	공무원	16	17.8
	문화관련 기관 직원	44	48.9
	생활문화센터 소속 직원	21	23.3
	기타	3	3.3

#### 다. 조사 내용

전문가 대상 설문은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과 생활문화센터 운영, 건립에 대한 인식 조사로 구성되었다.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은 법적 정의의 필요성과 장르적 구분의 필요성 및 현재까지 생활문화의 특성과 개념으로 인지되었던 지역성, 시공간성, 예술성, 전문성, 경제성 등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건립 인식조사는 시설에서 제공해야하는 서비스, 운영주체, 운영 방향성, 정책방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문가 대상 설문 중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은 대국민 질문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국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표 3-12〉 전문가 설문조사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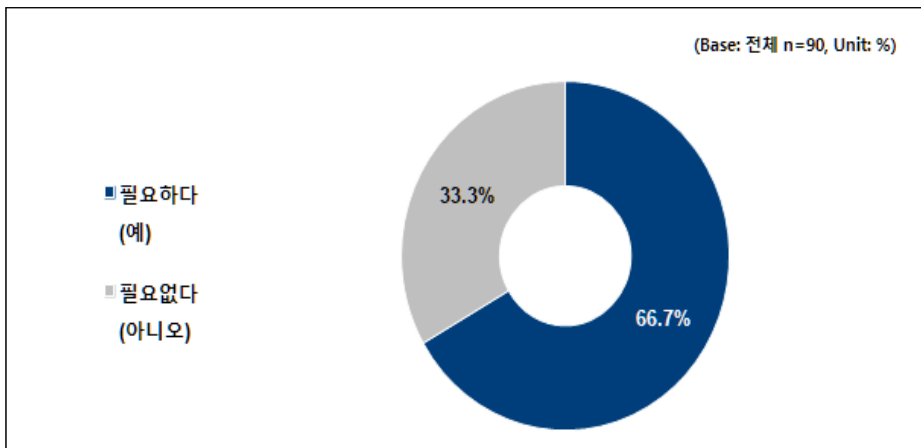
대분류	주요 내용
응답자 기본 정보	성/연령 거주지역 및 거주지역 유형 직업
생활문화 인식조사	생활문화의 법적 정의 변화 필요성 생활문화의 장르적 구분 필요성 생활문화의 지역성, 시공간성, 예술성, 전문성, 경제성 등에 대한 의견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건립 인식 조사	생활문화센터 관련 업무 또는 연구 수행 경험 생활문화센터 방문 경험 생활문화센터에서 제공 필요 서비스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주체 의견 생활문화센터 운영 방향성에 대한 의견 생활문화센터 정책 방향 의견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추가 의견

## 2. 생활문화 인식 조사

### 가. 생활문화의 법적 정의 변화 필요성

문화 관련 전문가들은 법적 정의에 대한 인식 및 개선점에 대해 절반 이상인 66.7%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높게 응답한 연령 및 직업은 20대(87.5%)와 교수 및 강사(83.3%)로 나타났다.

[그림 3-23] 생활문화의 법적 정의 변화 필요성



〈표 3-13〉 생활문화의 법적 정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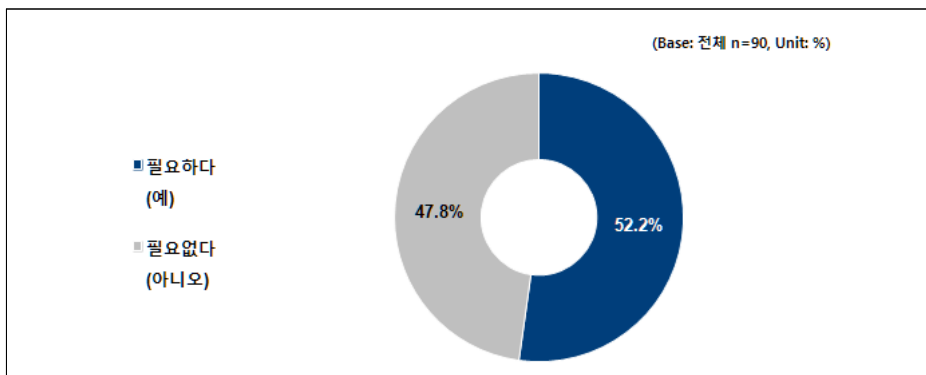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필요하다(예)	필요없다(아니오)
전체		(90)	66.7	33.3
연령	20대	(8)	87.5	12.5
	30대	(39)	64.1	35.9
	40대	(25)	60.0	40.0
	50대	(18)	72.2	27.8
거주지역	서울	(20)	75.0	25.0
	경기/인천	(11)	54.5	45.5
	충청	(13)	61.5	38.5
	전라	(14)	78.6	21.4
	경북	(9)	55.6	44.4
	경남	(15)	66.7	33.3
	강원/제주	(8)	62.5	37.5
직업	교수 및 강사	(6)	83.3	16.7
	공무원	(16)	56.3	43.8
	문화관련 기관 직원	(44)	75.0	25.0
	생활문화센터 소속 직원	(21)	61.9	38.1
	기타	(3)	0.0	100.0

### 나. 생활문화의 장르적 구분 필요성

생활문화의 장르적 구분의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52.2%, ‘필요없다’가 47.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연령별로는 장르적 구분에 대해 ‘필요없다’는 응답이 30대에서 56.4%, 지역별은 전라가 71.4%, 경기/인천이 63.6%로 높게 나타나 타 유형과 상이한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3-24] 생활문화의 장르적 구분 필요성



〈표 3-14〉 생활문화의 장르적 구분 필요성 응답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필요하다(예)	필요없다(아니오)
전체		(90)	52.2	47.8
연령	20대	(8)	62.5	37.5
	30대	(39)	43.6	56.4
	40대	(25)	60.0	40.0
	50대	(18)	55.6	44.4
거주지역	서울	(20)	55.0	45.0
	경기/인천	(11)	36.4	63.6
	충청	(13)	61.5	38.5
	전라	(14)	28.6	71.4
	경북	(9)	66.7	33.3
	경남	(15)	66.7	33.3
	강원/제주	(8)	50.0	50.0

#### 다.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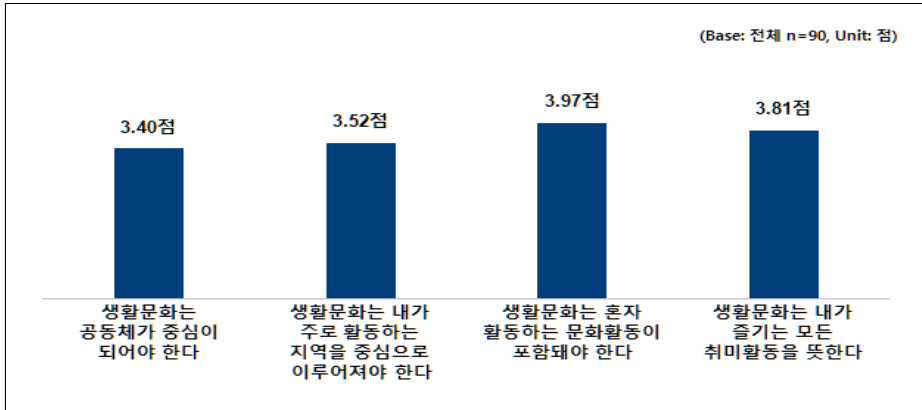
생활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대국민 조사 항목을 동일하게 조사한 결과 집단 간 의견 차이가 다소 나타났다. 대국민 조사와 마찬가지로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점~매우 동의한다 5점)로 조사를 진행했고, 총 5가지 분야(지역·공동체성, 시공간성, 예술성, 아마추어 구분, 경제성)에서 13개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 1) 생활문화의 지역(공동체) 성

먼저 지역·공동체성 분야 조사에서 4가지 항목(공동체 중심, 지역 중심, 혼자만의 문화활동, 개인의 모든 취미활동) 중 전문가들은 ‘혼자만의 문화 활동이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이 5점 기준에서 3.97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이는 해당 항목이 대국민 조사에서 3.64로 가장 낮았던 것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낮은 점수로 생활문화에서 다소 인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은 것은 ‘생활문화가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3.4점)이었는데, 이 역시 대국민 조사에서는 3.7점으로 높았던 것에 비해 다소 차이가 났다.



[그림 3-25] 전문가 대상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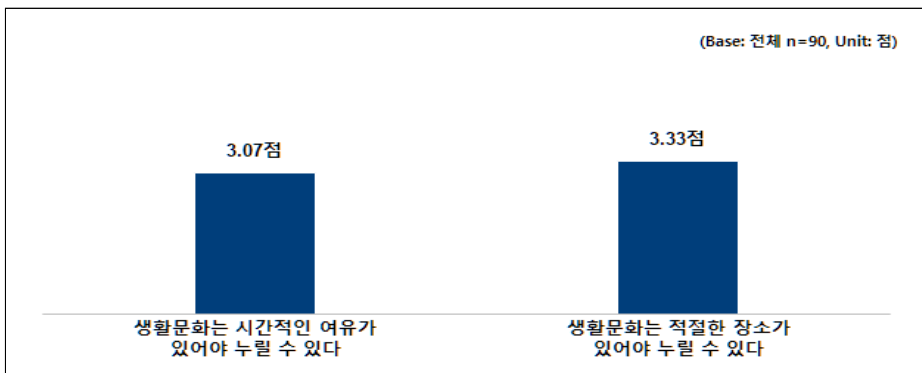


## 2) 생활문화의 시공간성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 가운데 시·공간성에서 전문가들은 ‘생활문화는 적절한 장소가 있어야 누릴 수 있다’는 물음에 5점 평균 3.33점, ‘생활문화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누릴 수 있다’에는 3.07점을 기록했다. 즉 시간 보다는 장소, 즉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인데 이는 대국민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5점 평균 점수에서는 일반인들이 3점 후반대로 동의한다는 데 주로 인식을 보인 반면, 전문가들은 3점 초반대로 보통 정도로 가벼운 인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가집단은 생활문화가 혼자 활동하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는 데에 동의율이 높았고, 생활문화 활동을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그림 3-26] 전문가 대상 생활문화의 시공간성 인식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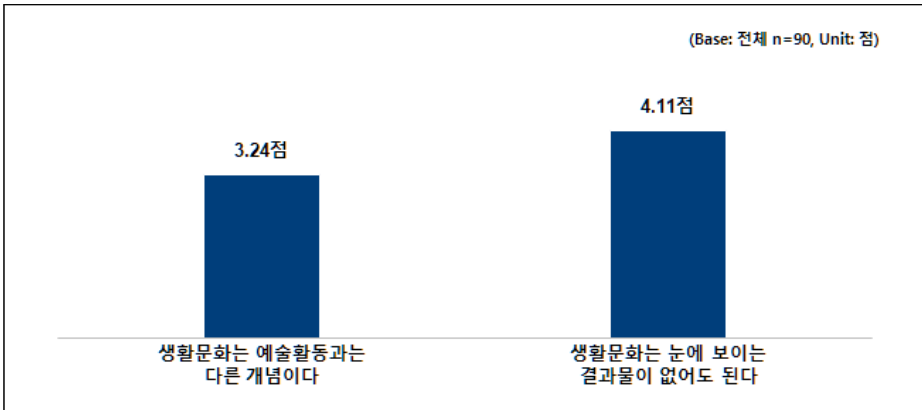


### 3) 생활문화의 예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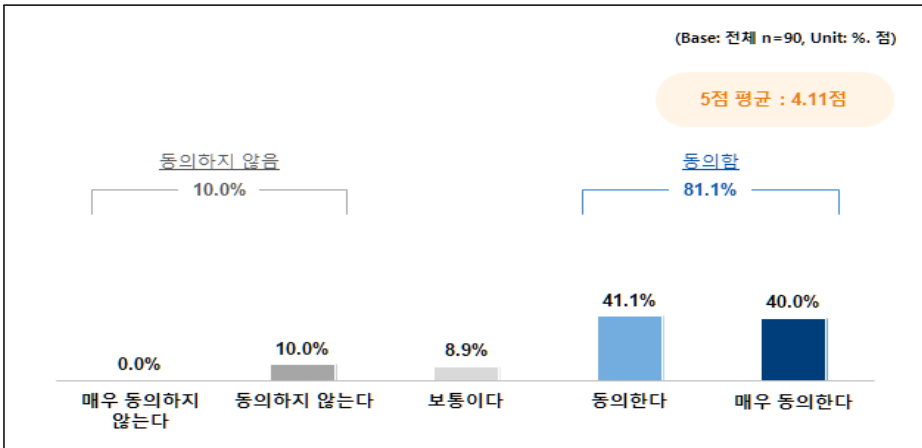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생활문화의 ‘예술성’에 대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도 된다는 데 5점 척도 기준 4.11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동의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는 대국민 조사에서 같은 항목의 동의율이 3.71점인 것으로 보았을 때 전문가들의 동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예술 활동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질문의 결과는 3.24점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문항에 비해 동의한다(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다)의 응답율의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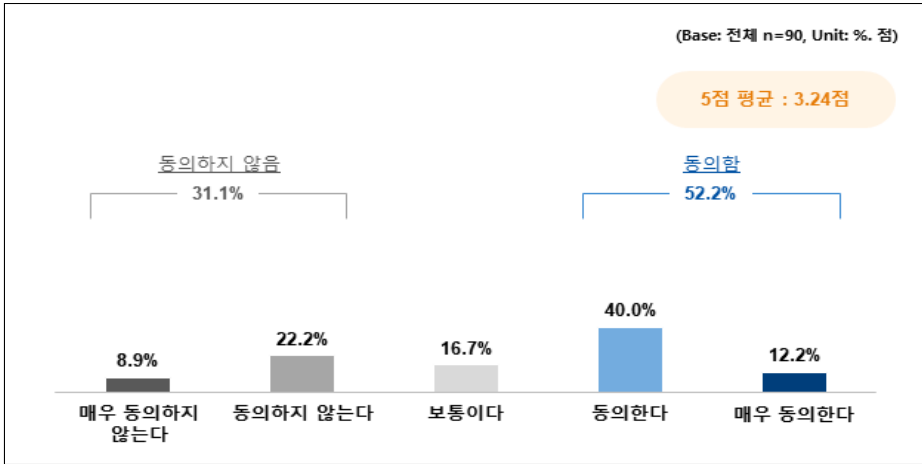
[그림 3-27] 전문가 대상 생활문화의 예술성 인식 조사 결과



[그림 3-28] “생활문화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도 된다”의 전문가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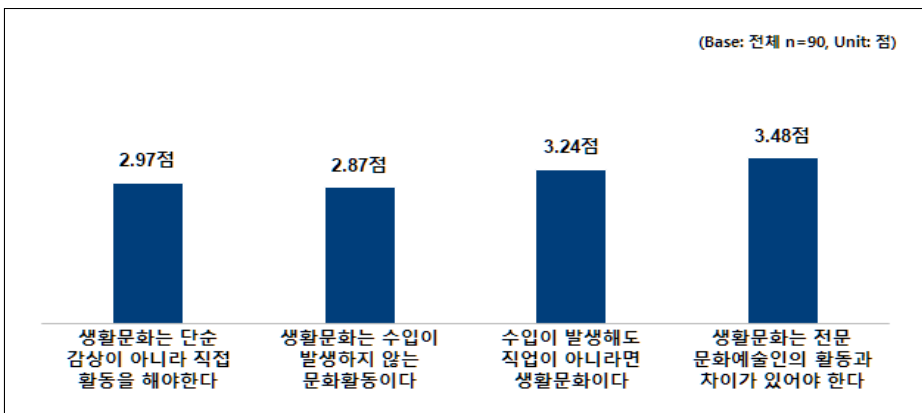
[그림 3-29] “생활문화는 예술활동과 다른 개념이다”의 전문가 응답 결과



#### 4) 생활문화의 구분에 대한 인식

생활문화를 전문 예술인과 아마추어로 구분하는 인식에 대해서는 대국민 조사와 마찬가지로 4가지 항목(단순 감상만이 아닌 직접 활동, 수입 없는 활동, 수입 발생해도 직업이 아닌 활동, 전문 문화 예술인과 차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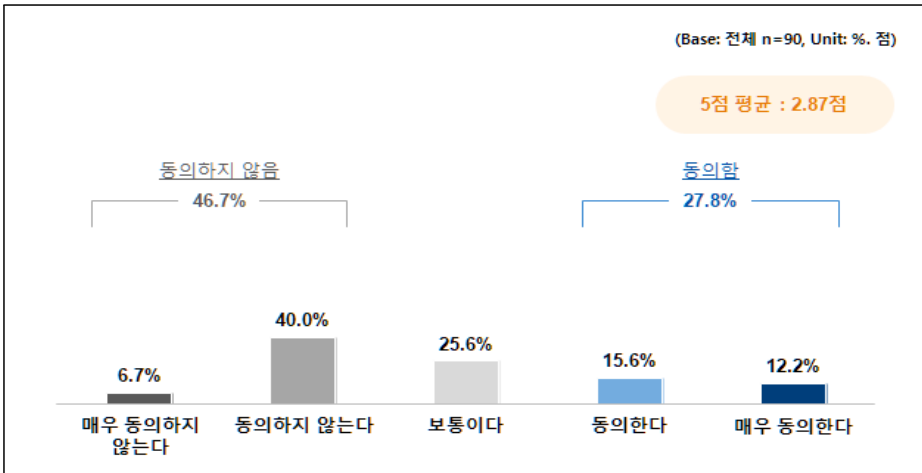
[그림 3-30] 전문가 대상 생활문화의 구분에 대한 응답 결과



이들 항목 중 전문가들은 전문 문화예술인의 활동과 일반인의 생활문화 향유가 구분되어야 한다는데 5점 평균 3.48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즉 일반인과 전문 문화예술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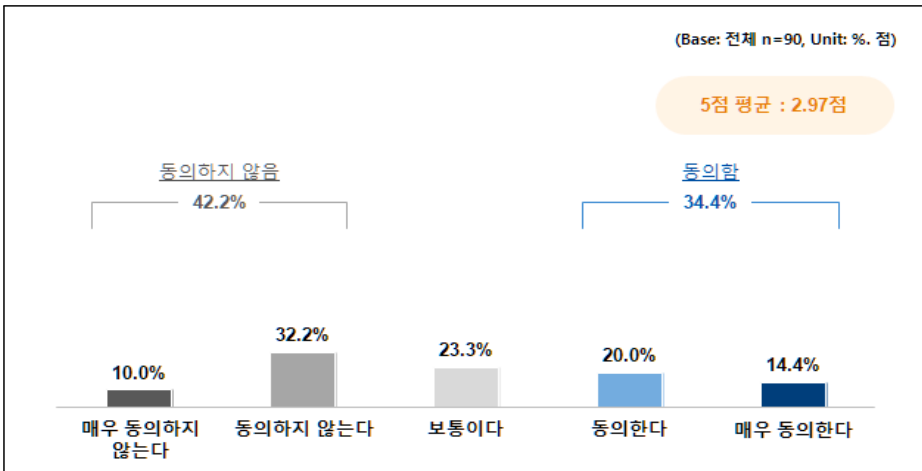
또한 전문가들은 '생활문화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문화활동이다'에 2.87점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수입에 대해 3.34점으로 높은 인식을 보였던 일반인들과 차이를 보인 것이다.

[그림 3-31] “생활문화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문화활동이다”의 전문가 응답 결과



이외에도 단순 감상이 아니라 직접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2.97점으로 보통 정도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다)이 42.2%로 동의한다(34.4%)는 응답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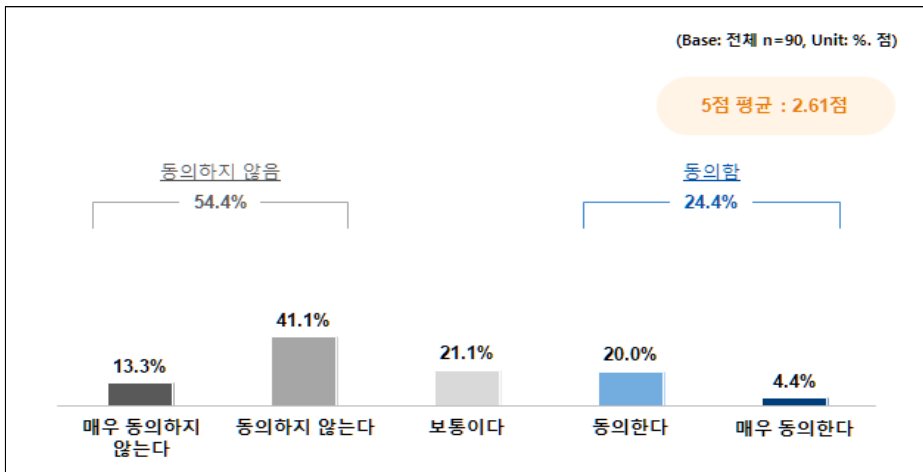
[그림 3-32] “생활문화는 단순 감상이 아니라 직접 활동을 해야한다”의 전문가 응답 결과



### 5) 생활문화 경제성에 대한 인식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중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누릴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5점 만점의 2.61점으로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전문가 전체 비율에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다)가 54.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대국민 조사에서는 3.21점, 동의한다는 응답(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도 38.8%로 비중이 높았던 것에 비해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즉 전문가들은 경제적 여유와 생활문화 향유와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국민들은 경제적 여유가 생활문화 참여에 영향을 준다고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3-33] “생활문화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누릴 수 있다”의 전문가 응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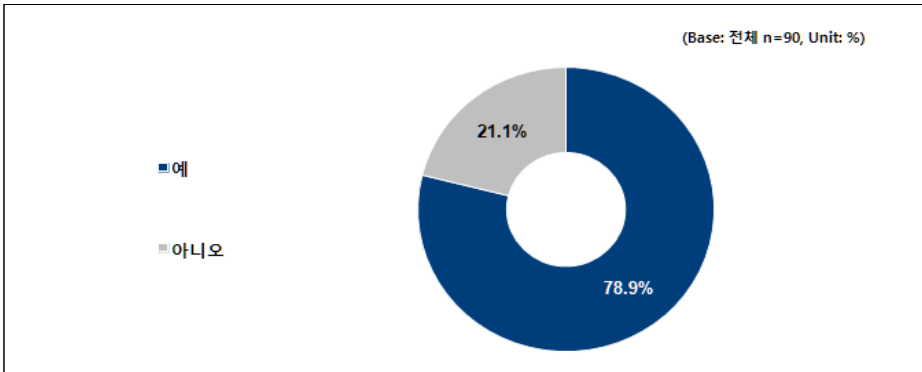


### 3.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건립 인식조사

#### 가. 생활문화센터 관련 업무 또는 연구수행 경험

전문가들 중 생활문화센터 관련 업무나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78.9%로 10명 중 8명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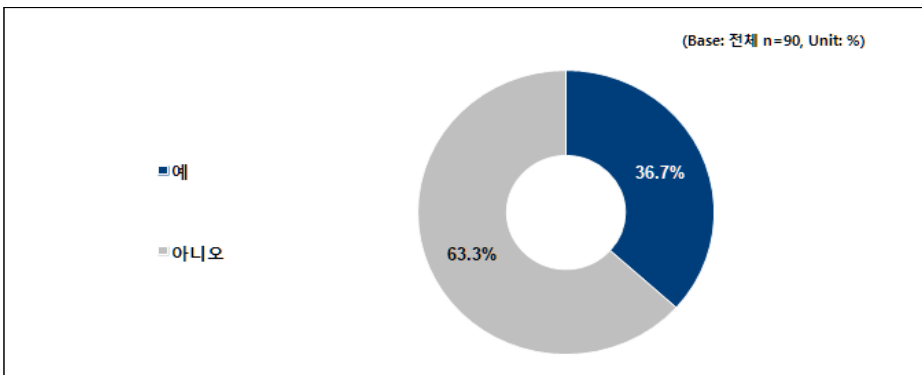
[그림 3-34] 전문가 대상 생활문화센터 관련 업무 또는 연구 수행 경험



#### 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생활문화센터 방문 여부

전문가들 중 생활문화센터 방문이 업무 외의 목적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36.7%였다. 즉 전문가는 대부분 관련 업무를 위해서 생활문화센터를 방문하며, 이들은 생활문화센터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것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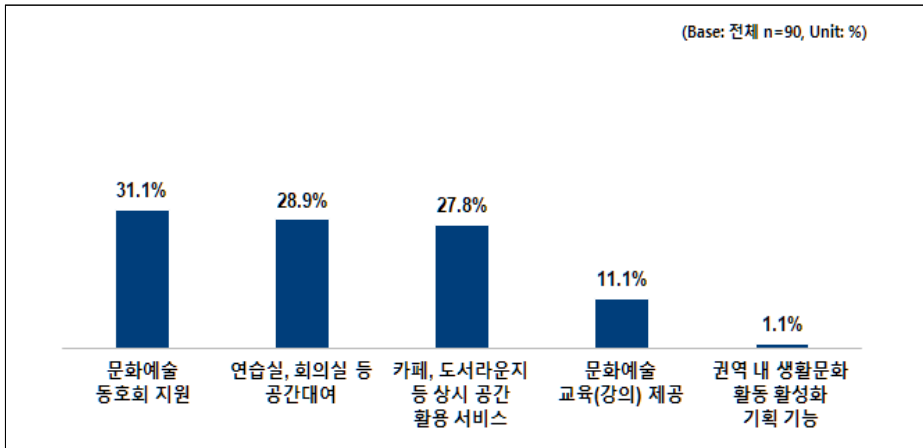
[그림 3-35] 전문가 대상 생활문화센터 방문 여부



#### 다. 생활문화센터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의견

전문가들은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에 31.1%로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연습실이나 회의실 등 공간대여(28.9%)와 카페·도서관·라운지 등 상시공간 활용에도 높은 응답(27.8%)를 보이며 주로 시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는 대국민 조사와 크게 대조를 보인 것으로 일반인은 문화예술 교육 제공과 주민들의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원했던 반면, 전문가들은 문화예술 교육에 11.1%, 권역 내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 기획 기능은 1.1%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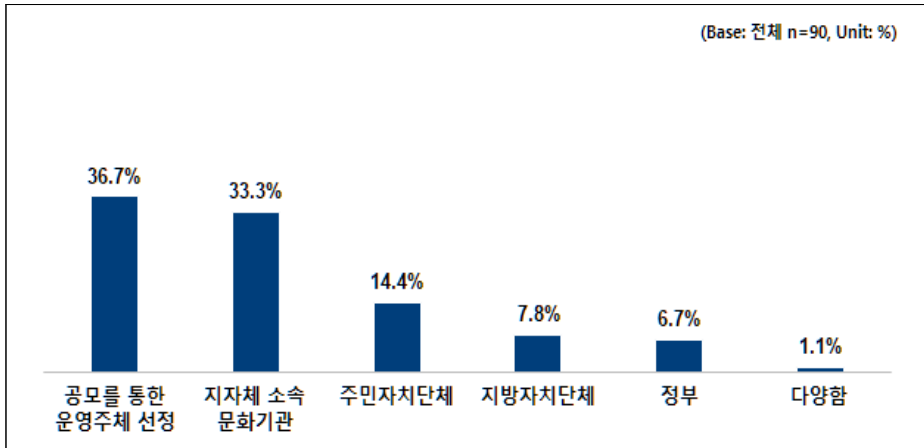
[그림 3-36] 전문가 대상 생활문화센터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의견



## 라.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주체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공모를 통한 운영주체 선정이 36.6%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소속 문화기관이 33.3%로 뒤를 이었다. 이는 전문가들이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직접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7.8%)나 정부(6.7%)가 아닌 외부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37] 전문가 대상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



## 마. 생활문화센터에 정책 방향 의견

생활문화센터 인식에 대한 5점 척도 조사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던 항목은 인력에 대한 부분이었다. ‘생활문화센터에는 상주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는 질문의 응답이 4.47점으로 대부분 동의하는 것(동의+매우동의 94.4%)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0%로 단 한명도 답하지 않아 인력의 필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시설이라는 질문의 응답도 4.23점으로 높았고, 대부분 동의하는 것(동의+매우동의 88.9%)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생활문화센터가 문화시설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생활문화센터는 타 행정 문화시설과 함께 위치하는 것이 좋다는 질문의 응답은 3.31%로 보통이나 조금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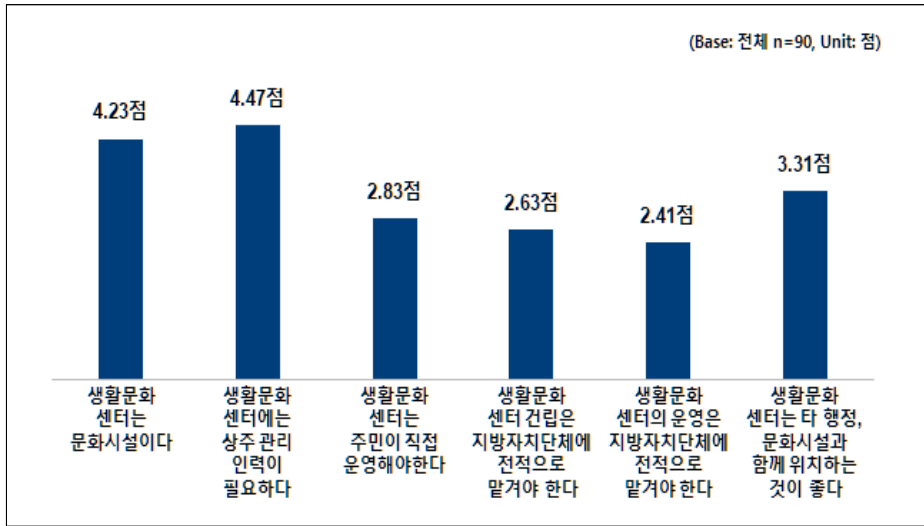
반면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질문에는 2.41%로 동의하지 않거나 보통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5%로, 동의한다(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가 25.6%에 그쳤던 것에 비해 2배 수준이었다.

또 생활문화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가 2.63점, 생활문화센터는 주민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가 2.8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자치단체가 아닌 외부 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38] 전문가 대상 생활문화센터 정책 방향 의견



### 사.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 개선 중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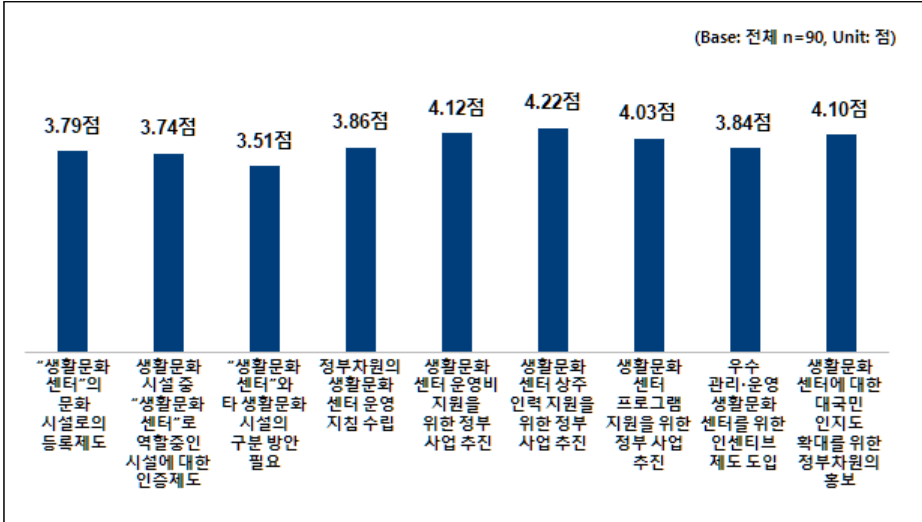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정책 인식 5점 척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였던 항목은 ‘생활문화센터 상주 인력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 추진(4.22점)’으로 대부분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문화 전문가들은 대부분 예산·홍보·인력지원 등 정부 사업을 기대하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정부사업 추진’이 4.12점,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홍보’가 4.10점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 추진’이 4.03점으로 대부분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항목에 중요성을 높게 봤지만,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은 생활문화센터와 타 생활문화 시설 구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질문의 응답이 3.51점, 이어 생활문화시

설의 생활문화센터 인증이 3.74점, 생활문화센터의 문화시설 등록이 3.79점을 기록하는 등 시설에 인증이냐 관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림 3-39] 전문가 대상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 개선 중요성 인식



## 제3절 시사점 분석

### 1. 생활문화의 정의 및 개념

#### 가.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 종합

생활문화의 특성을 지역(공동체), 시공간성, 예술성, 전문인 및 아마추어 여부, 경제성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을 때 대국민과 전문가 집단 모두 생활문화에 대해 특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었다.

〈표 3-15〉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 전체 결과표

단위: 점

구분	항 목	대국민		전문가	
		5점 평균	100점 환산	5점 평균	100점 환산
지역(공동체)성	생활문화는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3.70	67.55	3.40	60.00
	생활문화는 내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거주, 학업,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85	71.30	3.52	63.06
	생활문화는 혼자 활동하는 문화활동이 포함돼야 한다	3.64	66.10	3.97	74.17
	생활문화는 내가 즐기는 모든 취미활동을 뜻한다	3.79	69.73	3.81	70.28
시공간성	생활문화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누릴 수 있다	3.75	68.80	3.07	51.67
	생활문화는 적절한 장소가 있어야 누릴 수 있다	3.89	72.15	3.33	58.33
예술성	생활문화는 예술활동과는 다른 개념이다	3.43	60.70	3.24	56.11
	생활문화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작품, 공연 등)이 없어도 된다	3.71	67.75	4.11	77.78
전문인 및 아마추어 여부	생활문화는 단순 감상이 아니라 직접 활동을 해야한다	3.33	58.30	2.97	49.17
	생활문화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문화활동이다	3.34	58.60	2.87	46.67
	수입이 발생해도 직업(주 수입발생)이 아니라면 생활문화이다	3.52	62.93	3.24	56.11
	생활문화는 전문 문화예술인의 활동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	3.36	59.00	3.48	61.94
경제성	생활문화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누릴 수 있다	3.21	55.28	2.61	40.28

특히 대국민 대상 설문조사는 모든 항목에서 '보통이다' 수준인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이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전문가 및 아마추어 여부와 경제성 부문에 있어 의식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생활문화가 단순 감상이 아니라 직접 활동을 해야한다는 부문에서 낮은 동의율을 보였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문화활동이라는 의견에도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또한 생활문화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누릴 수 있다는 항목에서도 낮은 동의율을 보여 대국민 설문과의 답변에 차이를 보였다.

## 나. 생활문화의 인식 분석

위와 같은 결론으로 유추하였을 때 생활문화가 생활권 내에서 이뤄져야하고 공동체성과 개인성 모두를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는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가 생활문화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실제 일반 국민들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활문화를 영위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므로 실 생활에서 가깝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생활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생활문화를 영위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더 많은 수요를 보였다. 이는 생활문화가 언제, 어디에서 영위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관점과는 다소 차이가 보이는 부문으로 '생활문화'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센터 등 관련 시설의 확충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생활문화를 구분하는데 있어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구분에서도 각 대상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생활문화는 단순 감상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일반 국민이 3.33점으로 전문가 집단의 2.97점 보다 더 높은 동의율을 보여 일반 국민이 '참여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수입이 발생해도 직업이 아니라면 생활문화라는 항목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의 동의율이 더 높았다. 이는 생활체육에 대한 정의가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구분으로 인지하는 것과 유사하게 생활문화도 전문가와 일반 참여적인 부문으로 이해하는 폭이 넓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생활문화는 전문 문화예술인의 활동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항목에서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동의율을 보였는데 이는 결국 전문 예술인의 예술 활동과 일반 국민의 예술활동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전문인 및 아마추어 여부’ 항목에 있어 일반국민과 전문가집단 모두 어느정도 생활문화가 전문가의 활동과는 구분이 필요하다 혹은 구분지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다. 생활문화 정의의 변화 필요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생활문화의 법적 정의 변화의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66.7%로 나타나 ‘필요없다(33.3%)’는 의견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생활문화의 장르적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52.2%로 ‘필요없다(47.8%)’는 의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생활문화 정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이다. 이 항목에 대해 서술형으로 의견을 묻고 유사한 의견을 묶어 정리, 비율로 검토한 결과 ‘생활문화 범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11.7%)’, ‘생활문화의 개념 확장이 필요하다(10%)’, ‘구체적이었으면 한다(8.3%)’, ‘지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8.3%)’, ‘전문예술과의 구분이 필요하다(5%)’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생활문화의 개념과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는 선행 연구의 지적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문화의 장르적 구분에 대한 의견도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의 차이를 두어야한다(7.8%)’, ‘생활문화의 범주가 매우 넓다(7.8%)’,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4.4%)’ 등으로 중복 의견이 많았고 ‘지원사업의 중복성을 줄일 수 있다’, ‘유형화를 통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 등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의견들이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드러나 생활문화의 정의와 개념의 포괄성에 따른 실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전문가 집단에서 생활문화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혼돈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 법적 정의의 문제점이 아닌 생활문화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생활문화의 ‘개념’의 포괄성에서 오는 문제를 지적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생활문화를 장르나 범위로 한정할 수 없다’, ‘생활문화는 장르적 구분 없이 융합 또는 해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일부다’, ‘다양한 형태의 장르가 생겨나고 있어 한정된 구분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이 있는데 이는 생활문화의 정의, 개념의 재정립이 생활문화의 확장성을 해치게 될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2. 생활문화센터 인지 및 수요

### 가. 생활문화센터 인지와 방문

생활문화센터의 인지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대상 조사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직업군은 주부, 자영업자가 50%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48.2%가 주거지 또는 직장(학교) 근처에 있어서 생활문화센터를 알게 됐다고 응답하여 접근성이 중요성을 보였다. 그러나 경북지역은 오프라인 홍보, 경남은 온라인 홍보물을 통해서 유입된 비율도 높아 홍보로 인해 생활문화센터의 유입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접근성과 홍보가 생활문화센터를 인지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생활문화센터 서비스 수요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생활문화센터에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방문 목적을 질문한 결과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34.6%)’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두 번째로 ‘공용공간 이용을 위해서(33.0%)’로 나타나 공간 제공 만큼 프로그램이 생활문화센터의 중요한 유입 요인으로 드러났다. 또한 생활문화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질문한 결과 ‘문화예술 교육 제공(32.2%)’가 가장 많았고 ‘주민 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22.5%)’, ‘상시 공간 활용 서비스(14.0%)’ 순으로 나타나 일반 국민은 생활문화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전문가 집단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의견에서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31.1%)’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이어 ‘연습실, 회의실 등 공간대여(28.9%)’, ‘카페, 도서라운지 등 상시 공간 활용서비스(27.8%)’ 순으로 응답하여 당초 생활문화센터가 건립·조성 될 당시의 목적이었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과 공동체 간의 문화 활동을 독려하는 취지를 이해하여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생활문화를 영위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는 이를 위한 공간(인프라)을 제공한다는 생활문화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보편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생활문화 정책 사업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 생활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도가 제고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3. 생활문화센터 관련 정책 방향

#### 가.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의견

전문가를 대상으로 생활문화센터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생활문화센터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 중앙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표 3-16〉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전문가 의견

항 목	단위: 점	
	5점 평균	100점 환산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시설이다	4.23	80.83
생활문화센터에는 상주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	4.47	86.67
생활문화센터는 주민이 직접 운영해야한다	2.83	45.83
생활문화센터 건립은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2.63	40.8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2.41	35.28
생활문화센터는 타 행정, 문화시설과 함께 위치하는 것이 좋다	3.31	57.78

이 결과는 생활문화센터에는 상주관리 인력이 필요하지만 주민이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고해야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립(조성)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다만 생활문화센터가 문화시설이라는 점에는 높은 동의율을 보였으나 타 행정, 문화시설과 함께 위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동의율을 보여 기존의 복합형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활용성에 대해 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

#### 나. 생활문화센터 관련 제도 의견

전문가 집단은 생활문화센터의 상주 인력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드러냈다. 생활문화센터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가 대상 설문에서 ‘생활문화센터 상주 인력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전문가 집단 응답자 특성에서 ‘문화관련 기관 직원(48.9%)’, ‘생활문화센터 소속 직원(23.3%)’로 높은 특징이 있어 드러난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등록제도와 인증제도에 대한 필요성도 각각 69.7%, 68.6%로 높게 드러났고 대국민 인지도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홍보의 필요성도 77.5%로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제도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표 3-17〉 생활문화센터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단위: 점

항 목	5점 평균	100점 환산
“생활문화센터”의 문화시설로의 등록제도	3.79	69.72
생활문화시설 중 “생활문화센터”로 역할중인 시설에 대한 인증제도	3.74	68.61
“생활문화센터”와 타 생활문화시설의 구분 방안 필요	3.51	62.78
정부차원의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침 수립	3.86	71.39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 추진	4.12	78.06
생활문화센터 상주 인력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 추진	4.22	80.56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 추진	4.03	75.83
우수 관리·운영 생활문화센터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3.84	71.11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홍보	4.10	77.50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자유의견을 분석한 결과 ‘생활문화센터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않다(4.2%)’, ‘성과 및 실적 위주의 운영을 개선했으면 한다(4.2%)’, ‘제도, 정책적으로 체계적인 지원 관리가 필요하다(4.2%)’,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4.2%)’, ‘정부가 직접 인력 부문 등 적극 지원했으면 한다(2.8%)’, ‘민간 위탁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2.8%)’ 등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의견에서 위와같은 유사한 의견이 나타난 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되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해 정책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다. 기타 의견 종합

전문가 집단은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개방형 의견으로 타 문화시설과 생활문화센터 간의 차별성, 목적성 확립 등을 언급하며 생활문화센터의 방향성을 중앙정부가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다만 지원은 하되 자율성은 보장해야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어 팔길이 원칙이 적용되는 문화정책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생활문화센터를 특정 단체나 회원들의 장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에 이를 지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정책으로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문화의 집과 생활문화센터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문화재단,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전문문화조직과 기존 시설 간의 협력 체계에 대한 고민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문화 범위 설정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 방안

제4장

## 생활문화 정의 및 생활문화센터 정책 방안



# 제1절 생활문화 정의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조성 기준

## 1. 생활문화 정의 및 정책개념 정립

### 가. 정책 개념 정립

생활문화는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아 용어 정리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법적 정의, 정책사업 개념으로 구분하여 명확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정의는 생활문화의 다양성을 포괄하는 근거로서 작용한다. 때문에 다소 그 의미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더라도 현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생활문화가 가지는 창의성과 장르의 확장성, 융합성은 향후 새로운 예술 장르, 문화 양식으로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개념 단위로 세분화 하여 법적 정의를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 개념에 대해 새롭게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 지원의 대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은 폭 넓게 작용하되, 정부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정책 추진을 위한 생활문화의 개념은 기존에 분류해온 관점<sup>50)</sup>에서 변화한 특성을 반영한 세부 개념 정립이 이뤄져야한다.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 관점은 행위자 관점, 장르적 관점, 공간적 관점, 시간적 관점, 활동의 방식 관점을 유지하고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생활문화의 정책 개념을 아래 표와 같이 재정립하였다.

50) 기존의 생활문화 관점은 정광렬(2016)의 분류로 행위자 관점, 장르적 관점, 공간/시간적 관점, 활동방식의 관점이 있었으며 세부 내용 및 특징은 보고서 19쪽에서 다루었음.

〈표 4-1〉 생활문화의 정책적 개념 정립

관점 구분	내용 및 특성
행위자 (대상) 관점 (누가)	일반 시민, 아마추어 예술인 (전문예술인은 제외됨) 개인 활동, 공동체의 활동 모두 포함
시간적 관점 (언제)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구분 없는 일상성 (특정 시간에 관함하거나 교육받는 행위와는 구분됨)
공간적 관점 (어디서)	장소의 구분은 없음: 어디서든 가능
장르적 관점 (무엇을)	문화예술진흥법 상 '예술활동', 공예활동 등 사회 통념상 예술 분야의 범주에 포함되는 융복합 문화 활동 (생활기술, 생활체육, 오락, 여행과는 구분되는 문화활동)
활동방식의 관점 (어떻게)	단순관람이 아닌 참여 문화활동 기획과 과정의 주체가 되어야 함 (전문 예술인을 통한 단순 예술교육 수행은 '교육'의 범주이므로 생활문화 향유가 아닌 '예술교육 참여 활동'임)
목적의 관점 (왜)	삶의 질 향상 - 상업적 목적이 없어야 함 (문화산업에 포함되는 관점의 활동은 제외됨) - 정부 및 지자체 사업 등 특정 정책 및 사업의 수행 목적이 없어야 함 - 삶의 질 향상의 관점은 여가를 즐기거나,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등 개인의 삶에 있어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함

이와 같이 재정립된 생활문화의 개념을 토대로 「지역문화진흥법」 내에서 정의하는 '생활문화'가 배치되는 점은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법상에서 정의하는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먼저 “지역의 주민이”는 행위자의 관점으로, 모든 국민이 지역에 속한 주민이기에 개념에 속한다.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는 생활문화의 목적이 문화이고, 재정립한 목적의 관점인 ‘상업의 목적이 배제 된’에 배치되는 항목이 없다. 즉, 상업적인 목적이 배제된 문화 활동 목적으로 확실하게 정의가 된다. 다음으로 “자발적이거나”는 행위자의 관점과 활동방식의 관점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한데, 개인의 의지로, 스스로 기획과 과정의 주체가 된다는 관점의 범위 내로 해석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참여”는 시간적 관점으로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정립한 개념에 배치되지 않는다. “유형·무형”은 장르적 관점에 해당이 되는데, 재정립한 개념에서는 유·무형의 활동이 모두 포함 돼 있다. 이 때 무형의 활동은 노래, 춤 등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기존의 생활문화 지원 사업을 검토한 결과 무형의 활동

중 지역학의 범주에 해당되는 활동들이 있었다. 즉, “일정한 지역의 지리,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sup>51)</sup>”에 속하는 것인데, 지역문화진흥원이 분류한 생활문화 향유 방식 중 ‘사회관계활동’에 주로 포함이 된다. 현장에서는 주로 해당 활동이 마을 만들기 사업, 도시재생 사업과 연관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생활문화가 아니라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생활문화라 보기 어렵다. 만약 상업적, 사업적 목적 외의 지역학 활동이 일상적으로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향유되고 있다면 정책 지원이 인문학 정책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활동”은 「문화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상적 특성의 총체를 포함한다는 의미의 활동으로 해석되므로 재정립한 개념과 배치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생활문화 정책 개념에서 이 6가지 분류체계를 반드시 모두 수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생활문화가 일상성과 참여성이 강조되는 만큼,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삶의 양식을 토대로 주체적인 기획 활동을 추진하는 것 또한 생활문화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즉, 6개의 정책적 개념에서 4개 분류 이상을 충족하면 정책 사업의 대상으로 보는 등의 추가적인 지침을 세우는 방식이다.

## 나. 장르 범위 검토

### 1) 생활문화 장르 구분의 목적

생활문화의 장르적 관점 검토는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었다. 정광렬(2016)은 생활문화의 개념 중 ‘장르적 관점’을 지적하며 “예술적·심미적 개념에서 확장된 생활양식 등 다양한 문화활동”, “전통생활문화, 가정생활문화, 정서적 취미활동” 등으로 정의를 한 바 있다. 즉, 뚜렷한 장르를 지적하기에 앞서 장르적 관점으로 개념을 설정하는 데에 대한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생활문화 정책 사업의 추진 주체, 생활문화센터 이용자들이 가장 혼돈하는 부분은 “다양한 활동을 모두 생활문화의 장르로 인정해야하는가”의 부분이었다. 전문가 대상 설문에서는 장르적 요소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미세하게 높았는데 장르적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와 “유형화를 통한 맞춤형

51) 네이버 국어사전 발췌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C%A7%80%EC%97%AD%ED%95%99>)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 “기존 예술영역의 경계 확장으로 생활예술의 분리가 필요하다”, “실태조사 및 기본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등이 있었다. 반면 생활문화에 장르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의 이유로는 “생활문화는 장르나 범위로 한정지을 수 없는 개념”, “다양한 형태의 장르가 생기기 때문에 한정된 구분이 혼란을 야기함”, “이미 구분이 잘 되어 있다”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에서 내재 되어 있는 공통점은 이미 생활 문화 정책 분야에서 장르적 접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 추진 현장의 의견 및 전문가 의견에서는 생활문화의 장르적 구분이 현재 문화분야 정책 지원에서 중복되고 있는 사업들을 선택과 집중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즉, 예술활동 지원 분야와 지역문화정책 중 생활문화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는 장르적인 접근이 있어야만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낸 것이다.

## 2) 생활문화 장르 구분의 근거

생활문화의 장르를 구분하는 필요성을 정책 지원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 지원이 명확하게 가능한 범위에서 설정될 필요성이 있다. 정책 사업 소관 기관들과 전문가 인터뷰, 생활문화 활동인들의 인터뷰를 통해 추출한 정책 지원을 위한 생활문화 장르 구분 조건은 세 가지로 크게 설정할 수 있다. ①민간이 관심을 갖지 않지만 보존과 진흥이 필요한 문화 활동 및 예술분야는 생활문화에 해당된다. ②투기, 사행성을 띠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사례가 있는 활동은 제외한다. ③지역문화진흥 정책 범위 내에서 확정한다.

“민간이 관심을 갖지 않지만 보존과 진흥이 필요한 문화 활동 및 예술분야”가 해당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가장 정책적 합의가 필요한 기준이다. 생활문화 지원과 생활문화센터의 건립에 있어 지역주민과 가장 마찰이 많이 일어난 부분은 지역 상권에 관한 부분이었다. 예술분야의 경우 민간 문화센터나 학원을 통해 예술교육, 문화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예술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자체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데 무료로 연습장소를 대여할 수 있고, 매우 적은 비용으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의 시설이 생기므로 인해 예술인 일자리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주로 민간 문화센터, 학원이 많은 대도시, 지역 중심지역에서 많았고 소도시에서도 대형마트 내에 문화센터가 위치해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이 경쟁력이

약해진 경우에 두드러졌다. 국민의 문화향유,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민간 영역이 닿지 않는 지역에 공공이 지원해야 한다는 기본 관점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시장실패 영역이나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지원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전통을 계승하는 활동은 적극적인 지원으로 보존 및 창의적 발전을 도모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의 근거를 적극 수용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표 4-2〉 문화관련 법률 내 정의 요약

법률명	소관부처	정의	내용
문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문화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
문화예술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기반과,예술정책과	문화예술	문학, 미술(응용예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문화산업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지역문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
		생활문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
		문화예술	문화예술진흥법 내 '문화예술' 정의와 동일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공예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교육부 학술진흥과	인문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인문학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학문 분야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각 법률 내 정의 발췌

두 번째로 투기, 사행성을 필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사례가 있는 활동은 제외해야 한다. 이는 불법을 행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부문인데 이 구분은 법률에서 정의한 '사행산업'의 기준을 따르고, 광의의 문화적 정의 내에서

사행성을 띠 위험이 있는 활동들을 사례 파악을 통해 제외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에서 사행행위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이를 근거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성'을 '요행을 바라는 성질이 있음'으로 정의하고 '사용자 상호간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상호 손익의 직거래' 등을 사행성으로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사행성을 띠 위험이 있는 오락 분야는 정책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지역문화진흥 정책 범위 내에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정책지원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생활문화의 범주가 포함된 지역문화 정책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육분야와의 구분도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와 체육 분야 모두를 소관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화분야 지원 정책과 체육분야 지원 정책은 정책 사업의 방식과 사업 소관 부서 및 기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생활문화 분야 지원에 있어서 법률 내 정의를 기준으로 지역문화진흥원이 분류한 생활문화 장르를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3〉 생활문화 장르 분류표

생활문화 장르 분류표 내 구분		법률 내 정의 해당사항 및 분석
대분류	중분류	
생활 예술	미술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
	문학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
	무용, 댄스	무용: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 댄스: 해당없음
	서양 음악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 (음악)
	전통 음악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
	사진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
	만화, 웹툰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
	영화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
	건축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
생활공예	생활공예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내 공예에 속하나 판매의 목적(공예문화산업)이 없는 활동
생활기술	요리	해당없음
	제과/제빵	해당없음
	바리스타, 다도	해당없음



생활문화 장르 분류표 내 구분		법률 내 정의 해당사항 및 분석
생활운동 여행/캠핑	미용	해당없음
	요가 (필라테스 등)	생활체육 종목
	야외 활동	해당없음
생활지식언어	인문/역사/경제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내 인문학의 범주
	과학	해당없음
	언어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내 인문학의 범주
	심리 치료	해당없음
생활취미오락	놀이	해당없음
	꽃꽂이, 원예	해당없음
	수집	해당없음
	살공유워크숍, 토론	해당없음
사회관계활동	마을활동	해당없음
	장터 마켓	해당없음
	미디어	해당없음
미디어	미디어	해당없음
기타	기타 활동	해당없음
	융합활동	해당없음

## 2.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건립 기준

### 가. 역할 검토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생활문화시설로 생활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이다. 생활문화센터는 단순히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아닌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sup>52)</sup> 건립, 조성되어 왔다.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기 시작한지 약 6년이 지난 현재, 공간적 개념과 더불어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더 많은 인식을 하고 있다. 이는 기존 문화시설과의 차별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역문화진흥원이 실시한 생활문화센터 대상 설문에서도 생활문화센터가 타 시설과의 차별이 되는 특이 사항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9.1%였다. 차별점이 있다고 응답한 분야 중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것은 최신 장비 보유(12.1%), 다양한 문화프로그램(10.3%), 큰규모에 활동에 적합한 시설(10.3%)이었다.<sup>53)</sup> 한편 본 연구에서 추진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생활문화에 필요한 서비스가

52)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2019),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북」, 10쪽 발췌

53)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2020), 「2020 생활문화 실태조사 및 효과성 연구」 211쪽 발췌

'문화예술 교육 제공(32.2%)', '주민 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22.5%)로 응답비율이 높았던 반면 '연습실, 회의실 등 공간 대여(8.7%)', '악기, 전자기기 등 장비 대여(9.5%)'로 지금까지 생활문화센터가 주력해온 공간대여, 장비대여 서비스보다 참여형 프로그램 제공을 더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생활문화는 모든 시민이 언제든지 융복합 문화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행위다. 생활문화센터는 이러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하거나, 생활문화를 영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기존의 문화기반시설보다 진입 장벽이 낮고 접근성이 높아야 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다. 즉, 기존의 건립이 '공간대여'에 중점을 두었다면, 공간대여와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립 유형별로 역할에 대한 별도 고민이 필요하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 건립, 조성 위치에 따라, 단독건물 또는 복합건물인가에 따라 생활문화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세부 역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나. 건립 및 조성 유형 검토

현재 생활문화센터는 별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생활 SOC 건립으로 지원하기 이전에는 거점형, 준거점형, 생활권형으로 구분을 하였고 유형에 따라 기능적인 측면을 달리 계획하였다. 유형 구분의 기준은 생활문화센터가 건립 또는 조성되는 위치인데, 시·군·구 단위로 조성되는 곳은 '거점형'으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허브 기능과 공연장을 포함한 대규모 발표공간 등의 시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준거점형'은 광역 읍·면·동 단위 또는 광역시의 구 단위인데, 거점형에 비교하여 소규모 다목적 홀을 필수로 조성하도록 제안되었다. '생활권형'은 읍·면·동 단위로 조성되는데, 의무공간만 필수로 조성하도록 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자율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제안되었다. 즉, 세 분야로 분류한 것은 인구 규모와 이에 따른 문화 공간 조성에 차별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인구밀도와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문화시설의 균형적 배치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을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생활문화센터를 건립 또는 조성할 때에는 지자체의 정책 목표뿐만 아니

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공급 요구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읍·면·동 단위일 수록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 수가 적어 소규모의 시설을 요구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농촌, 읍·면·동 단위일수록 폐교 등 대규모 유휴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민간 공연장, 회의실 등이 부족함으로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지역 인구밀도와 수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지역의 내부 시설에 대한 수요 현황과 사업준비성을 검토하여 건립 또는 조성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021년 건립 및 조성 건부터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 자본보조를 통해 건립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운영의 현실성을 고려한 분류체계가 도입되어 검토해야 한다. 사업준비성은 부지 또는 유휴공간 확보와 연계가 되는데 선행된 생활문화센터의 건립 사례에 따르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 1) 단독형

단독형은 유휴건물을 단독으로 활용하고 있거나, 신축 건립한 유형을 말한다. 상주생활문화센터, 김포시 월곶생활문화센터 등이 이러한 시설에 해당되며 건물 전체를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필수조성시설 외에도 다양한 지역 맞춤형으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일부는 야외공간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야외공간도 생활문화센터의 공간으로 인정하고 자체 분류를 통한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4-1] 단독형 생활문화센터 사례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 2) 문화복합형

문화복합형은 문화관련 시설이 모여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생활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된 경우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여문화원과 부여 청소년문화의집, 작은도서관이 함께 설치된 부여생활문화센터, 지역미디어센터가 함께 있는 기벌포생활문화센터가 있다. 단, 문화재단이 함께 있는 경우는 문화재단 시설과 생활문화센터가 분리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재단은 문화기반시설이 아닌 운영조직이기 때문이다.

시·군·구 단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예회관과의 복합화 된 생활문화센터도 문화복합형에 해당된다. 대구 북구 어울아트센터 내 공간에 조성된 대구 행복북구 생활문화센터, 대구 동구의 아양아트센터 내에 조성된 대구 동구생활문화센터 등이 해당된다. 특히 해당 지자체는 문예회관뿐만 아니라 예술아카데미, 갤러리 등과 더불어 문화원, 문화재단 등도 함께 조성하여 모든 문화예술 분야의 서비스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경우는 생활문화센터에 필수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공간들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례에서는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 되어 있으며 필수공간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문화복합형의 경우 주민들은 해당 공간이 어느 문화기반시설에 속한 공간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복합적으로 인식하며 교육을 받고, 동호회를 조직하고, 생활문화센터를 대관하여 연습실로 활용하며 지역민의 네트워크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그림 4-2] 문화복합형 생활문화센터 사례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 3) 행정복합형

행정복합형은 주민센터,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과 함께 조성된 형태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서는 사업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행정시설들이 복합화되어 조성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신규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기에 이러한 형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건립 및 조성된 행정복합형의 사례는 면사무소 내에 조성된 보령시의 웅천생활문화센터,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등과 함께 조성된 대구 서구생활문화센터, 여성회관과 다문화지원센터 등과 함께 조성된 세종시 조치원생활문화센터 등이 있다.

행정복합형은 다른 유형보다 마주침공간, 학습공간 등이 활용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민원이 많은 시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방음공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소음이 높은 활동 시 주민의 불편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방음시설은 필수시설로 조성은 되고 있지만 그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행정업무를 위해 공간을 찾았다가 대기실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 생활문화센터를 활용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유입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한편, 마을회관, 경로당 등도 행정복합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 직접 해당 시설에 상주하여 근무하지는 않지만, 관련 업무 관할에 포함 돼 있으며 관리 주체가 기초 지자체인 경우에 해당된다. 기존 건립 및 조성 사례로는 마을회관과 함께 조성된 제주 내도동생활문화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작은도서관과 함께 조성된 제주의 사평마을 생활문화센터 등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읍·면 단위에서 더욱 많은 사례를 보였다.

[그림 4-3] 행정복합형 생활문화센터 사례



출처: 연구진 직접 촬영



2014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추진 되었을 때에는 기본공간으로 마주침공간, 주민자율공간(연습실, 회의실), 다목적홀(공연·전시, 교육·강의), 공용시설(화장실, 사무실, 창고), 방음시설 동아리방이 제안되었는데 시기를 비교할 때 점차 필수 시설이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4〉 2014년 및 2022년 기준 생활문화센터 지원 조건 및 공간구성

구분	2014년 기준	2022년 기준
의무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리방(연습공간, 물품보관함 등),</li> <li>• 다목적홀(공연·전시발표 공간, 교육·강의 공간 등)</li> <li>• 작은도서관, 공용시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주침공간 1개소 이상</li> <li>• 방음공간 1개소 이상</li> <li>• 마루공간 또는 학습공간 1개소 이상</li> </ul>
규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형 1,000㎡이상</li> <li>• 준거점형 500~1000㎡이내</li> <li>• 생활권역 200㎡ 내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주침공간 50㎡이상</li> <li>• 방음공간 30㎡이상</li> <li>• 마루 또는 학습공간 최소 30㎡이상</li> </ul>
지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비 확보) 조성 사업비의 70%이상 확보</li> <li>• 지자체 제공 시설 및 기존 공간의 건물가액(부지비 제외)등 현물을 지방비로 인정</li> <li>• 국고보조율 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시설 국비 40%, 복합시설 국비 50%(용지매입비 제외)</li> <li>• 조성면적 600㎡기준 최대 9억원 지원</li> </ul>

생활문화센터의 건립이 생활SOC 복합시설로 포함되어 건립 및 조성이 추진되는 만큼 의무시설과 규모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 방향성과는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민의 인식과 필요성이 높아질수록 수요로 하는 공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조성된 생활문화센터도 기존에 조성된 공간을 축소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였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가변형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즉,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축소하여 소규모 모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면 대규모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존 의무시설을 유지하되 유형별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복합형과 기타복합형은 상대적으로 문화기반시설과 성격이 다른 시설과 함께 건립 또는 조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음 발생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운영 성격을 정하여 방음공간 또는 마루공간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묶는 것이 필요하다. 방음공간의 용도는 주로 악기연주 등 소음을 대비한 공간이고 마루공간은 무용 등 움직임을 염두한 공간인데, 마루공간도 소음 발생이 잦은 활동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방음공간과 마루공

간을 동시에 조성하여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반면 단독형과 문화복합형은 상대적으로 소음과 연습환경에 대한 제약을 덜 받는 한편 마주침공간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건물 로비 등 공용 공간이 마주침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때문에 현안의 조성 규모를 유지하되 가변형이 가능함을 공지하여 유동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명확한 규모를 설정하고 있으나 전체 규모 대비 비율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체 건물에서 생활문화센터가 차지해야 하는 비율을 명확히 하는 안으로 공간의 역할을 명확히 제안하고 설치 규모는 지자체가 유동성을 일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 공간의 넓이를 자유롭게 조정하되 전체 규모 대비로 설정하여 개인 연습이 잦은 지역은 소규모 공간을 대거 확보하고, 공동체 모임이 잦은 지역은 대규모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침화 하여 자율성을 높이되 필수 공간 조성 범위는 지키는 안이다. 필수시설 변경 2안의 공간 비율은 생활문화센터 조성면적 600㎡기준 현행을 준용하였다.

〈표 4-5〉 생활문화센터 공간구성 변경(안)

구분	필수시설 변경 1안	필수시설 변경 2안
단독형	마주침공간 1개소 이상 -가변형 가능, 최소 50㎡ 이상 확보 방음공간 1개소 이상 -최소 30㎡ 이상 확보 마루공간 또는 학습공간 1개소 이상 -가변형 가능, 가변시 최소 30㎡공간 확보	마주침공간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간 대비 8% 이상 확보 방음공간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간 대비 5%이상 확보 마루공간 또는 학습공간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간 대비 5% 확보
문화복합형	단독형과 동일 ※단, 생활문화센터 전용 공간으로 확보, 타 문화기반시설과 공용 공간 조성 시 인정하지 않음	마주침공간 또는 학습공간 - 가변형 가능,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간 대비 8% 이상 확보 방음공간 -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간 대비 5%이상 확보 마루공간 -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간 대비 5%이상 확보 ※단, 생활문화센터 전용 공간으로 확보, 타 문화기반시설과 공용 공간 조성 시 인정하지 않음
행정복합형	마주침공간 또는 학습공간 1개소 이상 -가변형 가능, 가변시 최소 50㎡ 이상 공간 확보 방음공간 또는 마루공간 1개소 이상 -최소 30㎡ 이상 확보	마주침공간 또는 학습공간 -가변형 가능,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간 대비 8% 이상 확보 방음공간 또는 마루공간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간 대비 5%이상 확보
기타복합형	행정복합형과 동일	행정복합형과 동일



이러한 조정안은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공간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한편 공용시설 및 특성화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안 시 유동성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생활문화센터 건립 또는 조성의 방향성을 지키되 해당 공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경우 공간의 용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제약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유지해야 한다. 필수공간은 가변형으로 이러한 부분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특성화 공간은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의 수요로 ‘공동부엌’을 조성하였으나, 향후 수요가 줄고 ‘공방’의 수요가 늘어나면 해당 공간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지자체가 감지하고 유동성 있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시설을 사전에 계획하여 신청하도록 추진하는 것 보다 ‘자율공간’화 하여 조성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자율성을 맡기는 방안이 필요하다.

### 3. 생활문화센터 운영 기준

생활문화의 특성은 언제든지 일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생활문화센터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개방시간 이외에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기반은 공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조연하고 기획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때문에 생활문화센터는 기존 문화기반시설과는 다르게 운영의 시간적 범위가 유동적일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주민의 문화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운영 영역을 ‘계획수립’, ‘운영조직과 인력 확보’, ‘지역주민 참여’, ‘공간운영’, ‘프로그램운영’, ‘홍보’, ‘재원조성’, ‘성과관리’로 구분하고 9단계의 과정을 거쳐 운영계획을 수립하길 권고하고 있다.

〈표 4-6〉 생활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 단계별 방안

기초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초조사 (지역환경분석)		
수립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본방향/전략 수립	세부계획 수립	특수목적사업 실행계획 수립
추진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연차별 추진 계획	연차별 조직구성 방안	연차별 계획에 따른 예산 규모 산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2019),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북」, 20쪽 재구성

이 가이드는 생활문화센터를 직접 수행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안되었지만 실제 지자체 담당자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건립 또는 조성 이후에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관련 가이드라인 이행에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생활문화센터의 기본 방향, 이용자 욕구 조사 등은 정책 사업 주체인 지역문화진흥원이 컨설팅을 추진하는 가운데 파악을 하게 되거나, 별도의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추진하며 검토하게 되는 실정이다.

결국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더라도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컨설팅과 운영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생긴다.

또한 생활문화센터는 조성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이 담보로 되지 않는다. 이는 강제성이 부족하고 운영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나, 실제 운영주체인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생활문화센터를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운영 지침을 세워야 하는지 담당자가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고, 특히 기초 지자체일수록 담당자가 전문성을 갖고 일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최소운영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7〉 생활문화센터 운영 영역

운영 영역	세부영역	구체적 실무 영역
운영계획	지역현황 분석	센터 이용자층 분석, 이용자 욕구 조사
	비전 및 전략 수립	센터의 비전과 이행을 위한 전략 수립
	실행계획 수립	세부 프로그램 등 세부계획 수립
	연차별 계획 수립	연차별 추진 계획, 조직개선방안 등 수립
인력	운영조직	기본 조직 구조, 상근조직과 운영위원회
	인력확보 및 관리	자격기준, 채용방법, 직원교육, 직원복지 등
	업무분장	업무분장 내용, 주요 업무

운영 영역	세부영역	구체적 실무 영역
공간운영	기본방향 수립	운영시간, 공간대관 방식, 특성화공간 검토
	시설 안전관리	안전점검, 관리, 보험가입, 화재 및 전염병 예방 등
프로그램	정책프로그램 참여	공모사업 추진
	주민 제안 프로그램	주민 제안 의견 수렴 및 프로그램화 추진
	지역 연계활동	타 기반시설 및 문화 조직과의 협력
홍보	이용자 조사와 개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용자 유치 등
	홍보	홍보 방법, 대상 등 계획 수립
자원조성	예산편성과 수립	예산편성(인건비, 프로그램, 건물운영 등), 예산 수립
	예산 확보	지자체 보조금, 공공기금, 중앙정부 공모사업, 자체수입, 후원금 등
성과관리	성과관리	성과관리 방식, 방법 기획
	피드백	시기 및 방법, 대상 등 검토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2019),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북」, 8쪽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영역”의 틀에서 수정 제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북」을 기준으로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조성, 운영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2021년 설립의 건 이후는 복합 생활SOC 건립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며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컨설팅을 지원할 당시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숙지하게끔 하고, 조례 등을 근거로 운영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이었다.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 환경에 맞는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 운영 방식을 검토하는 하는 데에는 컨설팅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현재 지역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생활문화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생활문화센터 건립·조성 및 운영 컨설팅’에 할애하고 건립·조성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과정은 생활문화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의 갈등, 특정 주민단체의 독점화, 지자체와 운영주체간의 갈등 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제2절 생활문화센터 정책 방안

### 1. 타 시설 제도 검토

#### 가. 등록제도

등록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특정한 등록 기관에 마련해 둔 장부에 기재하는 일”이다.<sup>54)</sup> 즉 등록제도는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 증명하는 준법률행위적 공증행위로 말할 수 있다.<sup>55)</sup> 이와 같은 등록제도는 진입규제의 한 종류이며, 특정 사업 혹은 활동 개시에 대한 법적 요건을 부여하고, 품질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관리 차원에서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반면에 등록제도 시행에는 문제점도 다수 존재한다. 사회적 활용도 저하, 등록기준의 경직성, 안정성 확보 및 유지관리 전문성 부족, 참여저하, 사후적 통제 미약, 행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sup>56)</sup>

〈표 4-8〉 등록제도의 기능과 문제점(박소현, 2012)

구분	내용
기능	자격 없는 사업자의 진입규제의 한 종류
	특정 사업이나 활동의 개시에 대한 자격 등 법적요건 부여(면허 등록)
	공급자에 일정 기준의 서비스 제공을 강제하여 품질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사회적 위해 방지를 위한 위험정보 제공자의 관리 차원에서의 수단
문제점	설계 시 제도 오류의 발생 가능성
	제반 법제와의 연계성 저하 및 사회적 활용도 저하 문제
	등록기준의 경직성
	등록제도의 안정성 확보 및 유지관리 전문성의 부족 발생
	유인전략 및 인센티브의 부재로 인한 참여 저하
	제제수단 미비로 인한 사후적 통제 미약
행정부담의 가중 우려	

자료: 박소현(2012), 「박물관 설립·등록기준 및 평가인증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8~30쪽

54) 법률용어사전

55) 박재욱(1999), 「등록제도에 관한 현행법 검토」, 『법제지』

56) 박소현(2012), 「박물관 설립·등록기준 및 평가인증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8~30쪽

현행법에 의거한 등록제도를 살펴보면, 각 부처별로 시설, 사업, 자격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등록제도가 존재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제도에는 박물관(미술관) 등록, 관광사업 등록, 체육시설업 등록, 신문 및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 공연장 등록, 게임제작업 등록,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이 있으며, 각 법령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따르고 있다.

〈표 4-9〉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등록제도

등록제도	근거 법	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등록 필요
관광사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록	관광진흥법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자할 때 필수적으로 등록 필요 -여행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체육시설업 등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됨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업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아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고자 할 때 등록 필요 -필요사항: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 신문사업자와 신문의 발행인·편집인,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와 기사 배열 책임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발행소의 소재지,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발행 구분,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공연장 등록	공연법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시설 기준을 갖추어 등록 필요 -안전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
게임제작업 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등록 필요 -등록 제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록제도	근거 법	내용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 필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업무: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운용 및 처분,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1)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제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은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다. 국·공립박물관의 경우에는 16년 11월부터 부실 운영 방지를 위해 등록 의무화를 도입하였으며, 사립박물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6조(등록 등)

-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시설명세서(명칭, 종류, 유형, 부지면적,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화재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자료명, 수량, 물질, 시대, 출처, 사진첨부 등),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은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나누어진다. 각 유형의 등록 개별 요건을 충족시켜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제1종에는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이 있으며, 제2종에는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과 문화의 집이 있다. 제1,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의 개별 요건은 <표 4-10>과 같이 나타난다.

<표 4-10> 제1,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개별 요건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종합 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전문 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미술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동물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식물원	실내: 100종 이상 야외: 2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育種室: 품종 개량 및 개발 연구 공간) 4) 양묘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수족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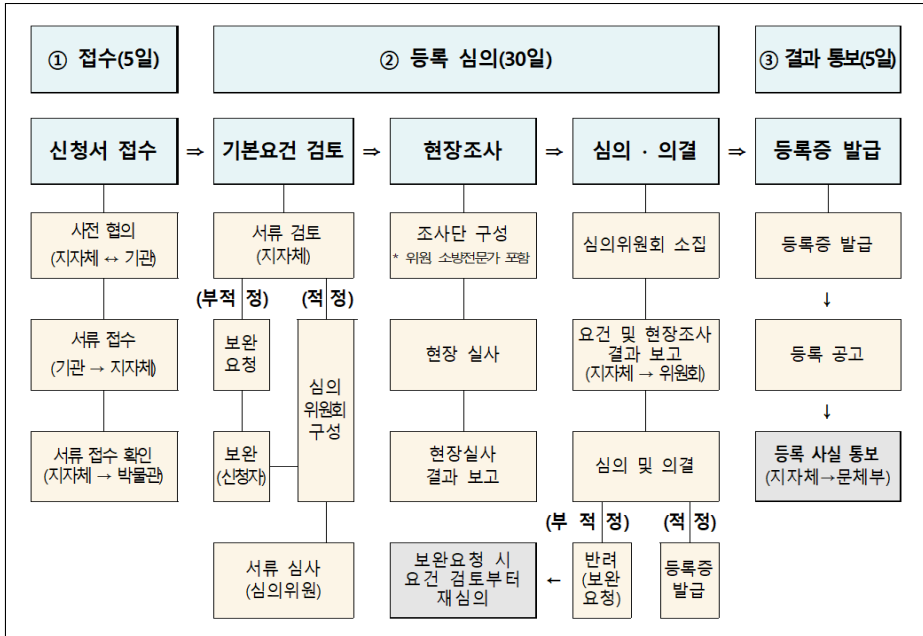
####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문화의 집	도서·비디오테이프 및 콤팩트디스크 각각 300점 이상		1) 다음의 시설을 갖춘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 가) 인터넷 부스(개인용 컴퓨터 4대 이상 설치) 나) 비디오 부스(비디오테이프 레코더 2대 이상 설치) 다) 콤팩트디스크 부스(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 4대 이상 설치) 라)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터 1대 설치) 마) 문화창작실(공방 포함)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포함) 2) 도난 방지시설

등록절차는 접수(5일)-등록 심의(30일)-결과통보(5일)로 40일이 소요되며, 세부 절차는 [그림 4-5]와 같이 나타난다. 등록 절차의 가장 초기 단계인 신청서 접수는 사전협의, 서류접수 및 확인으로 이루어지며, 등록심의회는 기본요건 검토(서류검토, 심의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현장조사(조사단 구성, 현장실사, 현장실사 결과보고), 심의 및 의결(심의위원회 소집, 요건 및 현장조사 결과보고, 심의 및 의결)로 이루어진다. 등록 심의가 완료되어 등록이 결정난 박물관 및 미술관은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후 등록 공고, 등록 사실 통보의 순서로 등록 과정이 마무리 된다. 등록증은 국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홈페이지 등에 등록 표시를 해야 한다(법 제17조 제2항).



[그림 4-5] 박물관(미술관) 등록 절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업무 지침」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정보(① 명칭, 설립자 또는 대표자, ② 종류, ③ 소재지, ④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주소, ⑤ 시설명세서, ⑥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⑦ 학예사 명단, ⑧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 나. 인증제도

인증이란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인증제도는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sup>57)</sup>

국내의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법정인증제도가 되며,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민간인증제도가 된다. 법정인증제도는 강제성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

57) e나라표준인증(<https://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로 나누어진다. 법정 의무인증은 안전, 환경 보건 등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되며, 의무인증의 마크는 KC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정 의무인증은 강제성은 없지만 법률에 의해 시행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KS표시인증제도,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 국토교통부의 신기술인증(NET마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간인증제도는 시험연구원, 협회, 감정원, 조합, 기술원 등에서 자체적인 규정과 기준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제도,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기념상품인증,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등이 있다.

〈표 4-11〉 인증제도의 개념 및 운영방식

구분	내용
인증제도의 정의	인증제이란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ISO/IEC 17000, KS A ISO/IEC Guide 2)
인증제도의 구분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제도는 또다시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증제도의 운영	대부분의 인증 절차는 국가기관 등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증과 표준, 검사, 시험, 시험소 인정 등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Testing):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것(일반적으로 자재, 제품 또는 프로세스에 적용)</li> <li>- 검사(Inspection): 제품설계, 제품, 공정(프로세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공정(프로세스) 검사에는 사람, 시설, 기술 및 방법에 대한 검사가 포함될 수 있음)</li> <li>- 인증(Certification): 제품, 시스템, 자격,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인증대상에 따라 제품인증, 서비스인증, 시스템인증, 자격(인력)인증 등으로 구분되며 인증, 형식승인, 검정, 지정,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li> </ul>

자료: e나라표준인증(<https://standard.go.kr/KSCI/portalex.do>)

부처별 법정인증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표 4-12〉와 같이 나타난다.

〈표 4-12〉 부처별 법정인증제도 현황

담당부처	등록인증수	유형	
		법정 의무	법정 임의
고용노동부	4	2	2
공정거래위원회	2	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2	8
관세청	1	0	1

담당부처	등록인증수	유형	
		법정의무	법정임의
교육부	4	0	4
국토교통부	34	17	17
기상청	3	2	1
농림축산식품부	19	2	17
문화재청	1	0	1
문화체육관광부	10	4	6
방송통신위원회	1	0	1
방위사업청	4	2	2
보건복지부	10	3	7
산림청	10	2	8
산업통상자원부	26	15	11
소방청	7	4	3
식품의약품안전처	5	4	1
여성가족부	2	0	2
중소벤처기업부	1	0	1
특허청	1	0	1
해양경찰청	2	1	1
해양수산부	22	11	11
행정안전부	9	3	6
환경부	19	11	8
<b>합계</b>	<b>206</b>	<b>84</b>	<b>122</b>

자료: e나라표준인증(<https://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2021년 8월 23일 최종확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는 인증제도는 국가표준인증 이외에도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문화예술교육사(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한국관광품질인증제(한국관광공사의 민간인증제도), 국민체력인증제(국민체육진흥법)가 있다.

#### 1) 문화체육관광부 인증제도 현황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현재 10개의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법적 의무 인증은 4건, 법적 임의 인증은 6건이다. 법정의무 인증은 시설과 관련 안전성에 대한 인증 내용이 주를 이룬다.

법정의무 유형에는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관광진흥법)’, ‘유원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 검사(관광진흥법)’, ‘무대시설안전진단(공연법)’이 있으며, 법정임의 유형에는 ‘한국관광품질인증(관광진흥법)’,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인증(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문화상품 지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있다.

〈표 4-13〉 문화체육관광부 인증제도

제도명	관련법률	유형	분야	소관부처	최초시행일
한국관광 품질인증	관광진흥법	법정임의	품질	문화체육관광부	2018-06-14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관광진흥법	법정의무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1996-01-01
유원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 검사	관광진흥법	법정의무	안전	문화체육관광부	1998-08-01
우수문화상품 지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정임의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2002-01-01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법정임의	보건	문화체육관광부	2015-05-29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인증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법정임의	서비스/디자인	문화체육관광부	2014-07-29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법정임의	서비스/디자인	문화체육관광부	2014-07-09
무대시설안전진단	공연법	법정의무	안전	문화체육관광부	2000-01-01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법정임의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2005-07-28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법정의무	품질	문화체육관광부	2017-01-31

자료: e나라표준인증(<https://standard.go.kr/KSC>), 2021년 8월 23일 최종확인

## 2)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증제도 중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제도는 시설 건립 중심의 박물관 정책으로 박물관 난립 및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2012년 5월 23일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을 통해 “박물관 제도의 체계화를 위해서 우선 ‘박물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박물관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증된 박물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고 있던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sup>58)</sup> 2013년 4월 「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영역 및 평가기준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2013년 7월 「박물관 및 미술

5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33649>)

관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를 거쳐 2016년 5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공식적인 법적 근거가 생겨났다.<sup>59)</sup> 법 개정 이후 같은 해 11월 개정이 시행되었으며, 2017년 1월 평가 대상기관 확정을 시작으로 평가가 진행되었고, 2018년 3월 최초로 인증기관이 선정되었다.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의 법적 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 조항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증하고 인증서 발급 및 인증사실 등을 공표하고 있다. 평가인증의 기준은 ① 설립 목적의 달성도, ②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③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④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⑤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시행령 제17조의2).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으로 나누어 인증하고 있으며, 평가기준 별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7조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면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도**
  2.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4.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⑥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미술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실시 및 평가인증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은 2018~2019년 시범운영을 통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7~2019년 기준 국립박물관 50개관 중 등록 후 3년이 지난 33개관(시설

59) 문화체육관광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설명

([https://mcst.go.kr/kor/s\\_open/realnmPolicy/realnmPolicyView.jsp?pSeq=170](https://mcst.go.kr/kor/s_open/realnmPolicy/realnmPolicyView.jsp?pSeq=170))

리모델링으로 평가가 어려운 3개관은 제외)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하였으며, 26개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인증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는 법률의 내용과 동일하게 5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개의 지표 및 28개의 세부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던 국립박물관의 평가지표 체계보다 세부지표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표 4-14〉 국립박물관 평가지표 체계

범주/배점	지표	세부지표	소계	정량	정성
설립 목적의 달성도 (15)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9	1	4
		운영관리의 적정성		2	2
	기관장 전문역량	박물관장 리더십	6	1	2
		박물관장 전문성		1	1
내부구성원 이해도	0	1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25)	조직 및 인력 관리	조직구성 적정성	8	2	2
		조직구성원 역량강화		2	2
	시설 관리	시설구성 적정성	9	1	2
		시설관리 전문성		2	2
		이용자 편리성		0	2
재정 관리	예산규모 및 배정·집행의 적정성	8	5	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20)	자료 수집	소장품 확보 노력	5	2	3
	자료 관리	소장품 관리 적정성	7	1	2
		소장품 보존 적정성		2	2
자료 활용	연구 및 성과 공유 일반인 대상 접근성 확장	8	2 3	1 2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30)	전시	상설전시 운영	12	4	2
		특별전시 운영		4	2
	교육	교육 프로그램 기획	12	2	2
		교육 운영 전문성		3	2
		문화향유 기회 확대(취약계층)		2	1
	관람객 정책	홍보마케팅 적극성	6	2	1
관람객 관리 적극성		2		1	
공적책임 (10)	법적, 정책적 책임 준수	법적 책임 준수	3	1	1
		정책 이행 노력		0	1
	상생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7	1	2
		지역사회 협력 강화		1	1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1	1			
합계			100	50	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또한 국립박물관 평가인증과 같이 시범운영 이후 2020년 처음 시작되었다. 2020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은 전국 64개 공립미술관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55개관이 평가를 받았으며, 41개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평가지표 체계는 5개의 범주와 14개의 지표 및 3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박물관 평가지표와는 다르게 정성평가(40)보다 정량평가(60)의 점수배분이 더 높게 나타난다.

〈표 4-15〉 공립미술관 평가지표 체계

범주/배점	지표	세부지표	소계	정량	정성
설립 목적의 달성도 (15)	미션에 부합하는 운영 노력도	운영계획의 적정성	8	-	3
		운영관리의 적정성		3	2
	리더십	관장 리더십 확보	5	-	2.5
		관장 전문성		2	0.5
	운영계획 이해도	지자체, 유관기관의 이해도 강화노력	2	-	1
내부구성원의 기관 이해도 강화노력	-	1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25)	조직 및 인력 관리	조직구성 적정성	5	-	2
		전문인력 고용 및 인적 자원 역량강화 노력		-	3
	시설관리	수장고 시설관리 적정성	6	3	1
		전시공간 관리 적정성		-	1
		이용자 시설관리 적정성		-	1
	재정 관리	재원분배 적정성	14	7	1
재원 지속성 및 조성 노력		6		-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20)	소장품 수집	소장품 수집 전문성 및 적극도	6	4	2
	소장품 관리	소장품 보존 적정성	11	3.5	2
		소장품 정보관리 적정성		5	0.5
	연구 및 아카이빙	연구 및 아카이빙의 적극성 및 전문성	3	2	1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30)	전시	전시 기획의 전문성	12	-	2
		전시 구현의 전문성		6	2
		전시이해 증진 노력		-	2
	교육	교육 기획의 전문성	12	-	2
		교육 운영의 전문성		7	1
		교육대상 다양화 노력		-	2
	관람객 개발	홍보마케팅	6	2.5	0.5
		관람객 관리		2	1
공적책임 (10)	법적, 정책적 책임 준수	박미법 준수여부	4.5	-	1
		관련 법령 준수 정도		1.5	1
		주요정책 이행실적		-	1
	상생협력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5.5	2	-
		지역사회 활동 적극도		2	-
		자원봉사 진흥		1.5	-
합계			100	60	4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의 경우 평가인증제도가 시작된 2017년에는 총 190개관을 평가하여 123개관을 인증했으며, 2019년에는 총 227개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우수기관 157개관을 인증했다. 인증 결과는 인증과 미인증으로 나누어지며, 지역별 인증률과 최우수 기관을 고시한다.

평가는 시설, 인력, 자료관리, 전시, 프로그램, 운영형태 등을 지표화하여 평가하고 있다. 평가인증 범주는 국립박물관·공립미술관 체계와 동일하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의 평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6〉 국립박물관 평가지표 체계

평가인증 범주	평가인증 지표	세부 평가지표	배점
1. 설립목적의 달성도 (15)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	운영계획의 적정성	5
	운영형태	운영관리 적정성	5
	<b>(정성)</b> 설립목적의 달성도		
2.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25)	박물관장 전문성	박물관장의 전문성	2
	적정한 조직 및 인력관리	조직 구성의 적정성	5
	효과적인 재정 관리	재원 지속성 및 조성노력	5
	안전한 시설 관리 (전시, 수장, 소방 등)	전시실, 수장고 등의 소방·안전	8
	<b>(정성)</b>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5
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20)	소장품 수집	소장품 수집 전문성 및 적극성	7
	소장품 관리	소장품 관리·보존의 적정성	4
		소장품 정보관리의 적정성	4
4.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30점)	전시	전시 사업 성과	10
	교육	교육·체험 사업의 성과 및 전문성	10
	<b>(정성)</b>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10
5. 공적 책임 (10)	관람객 관리	관람객 확보 및 노력	2
	소통과 사회적 기여 노력	공공 문화기관으로서의 소통 노력	2
	지역사회 협력 증진	지역사회 활동 적극도	2
	자원봉사자 운영	자원봉사자 활용	2
	<b>(정성)</b> 공적 책임		2
<b>합계</b>			<b>100</b>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2. 건립 및 조성 정책 방안

### 가. 목적과 활용 홍보 강화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조성 지원 사업은 2014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이후 2021년 건립 및 조성의 건 부터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주도한다는 지역분권의 정책 기조로 향후에도 지자체 주도의 방향성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자체 또한 주민자치 관점으로 지역 맞춤형 시설 건립 및 조성에 초점을 둔다.

때문에 중앙정부는 생활문화센터의 건립 및 조성 목적에 대한 정책 홍보와 건립·조성 및 운영 컨설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국민 1천 명 대상 설문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알고 있다는 비율이 47.5%라는 결과로 유추할 때 타 문화기반시설에 비해 여전히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인지가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문화센터라는 주민 자율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을 대국민 대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에는 생활문화 정책의 주요 장으로 생활문화센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유휴 공간 및 기존 행정공간의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 나. 지역문화 활동시설의 통합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시설’에 속한 대표적인 지역 근린문화시설이다. 그리고 가장 유사한 형태로 ‘문화의집’이 있다. 문화의집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역문화 활동시설이다.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였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1996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 건립 및 조성되어 2021년 현재 10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문화의집은 건립 및 조성 정책이 활발했던 당시 필수공간으로 문화관람실, 문화시청각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정보자료실을 구축했는데 이 중 문화사랑방은 생활문화센터의 마주침공간, 문화창작실은 생활문화센터의 특성화 공간인 공방 등과 유사한 특징이 있다. 한편 책, CD, 비디오, 컴퓨터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음악감상, PC사용 등의 행태가 바뀌어 사실상 문화의집의 문화시청각실, 정보자료실은 불필요한 공간이 되었다.

때문에 문화의집을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시설

은 정책 목적이 유사하고, 문화의집은 지방이양 이후 새로운 방향성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모색해야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문화의집이 조성된 지 6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정부는 생활SOC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해당 시설의 생활문화센터화 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조성가점을 부여해 사업 추진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정책지원을 받아 조성한 시설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예외적으로 한시 허용하는 방침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시설 근거법도 정리가 필요하다.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지역문화활동시설과 「지역문화진흥법」 내 생활문화시설 간의 차이를 명확히하고, 일부는 「지역문화진흥법」 내의 ‘생활문화시설’의 종류로 변경을 하여 시설의 지역성을 강조하기 보다 ‘생활문화’ 등 역할 수행의 관점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공연장, 미술관·박물관 등을 ‘지역 공연장’ 등으로 표현하지 않듯 지역문화활동시설도 역할 관점에서의 정리를 추진하고 지역문화진흥정책 내에서 분류하여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한편 문화의집은 (사)한국문화의집 협회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사)한국문화의집 협회는 문화의집 운영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공간 운영자 역량 강화 연수, 동네지식인 발굴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현재 지역문화진흥원이 진행하는 사업들과 유사성이 높다. 반면 생활문화센터는 범 지역 네트워크 형성이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사)한국문화의집 협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생활문화센터 네트워크 협력망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

### 3. 지속성 담보를 위한 정책 제언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 혹은 지역특별회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초지자체, 공모 신청을 추진 할 인력조차 없는 문화낙후지역의 생활문화센터에는 영향력이 부족하다. 즉,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생활문화 정책 및 생활문화센터의 건립 및 조성, 운영을 위해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제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 조성된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기반시설로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 마련을 해야한다.

## 가. 생활문화센터 등록제

정부지원을 통해 건립 또는 조성된 생활문화센터는 문체부를 통해 현황파악이 가능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생활문화 조사를 통해 규모와 운영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조사는 생활문화센터의 조성 요소 변화 등을 기민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지자체 주도로 설립된 생활문화센터는 문체부를 거치지 않고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정보의 신뢰성 또한 낮은 문제가 있다. 때문에 생활문화센터의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선된 이후 정책 지원 사업 개발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생활문화센터 등록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한 행정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조성된 모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등록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다.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인 「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등록제는 중앙정부의 건립 지원을 받은 시설뿐만 아니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건립 및 조성된 모든 생활문화센터를 대상으로 추진되기에 전국의 생활문화센터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생활문화센터로의 등록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지침들이 늘어난다면 이는 지자체의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조성의 동력 저하가 될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 등록제의 경우 등록 이후 예산지원 등 명확한 인센티브가 있기에 필수화 되어 있으나 생활문화센터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을 가진 기반시설이기에 강제성을 띤 등록제가 과도한 행정 간섭으로 지적 될 우려가 있다.

〈표 4-17〉 생활문화센터 등록제도 안

구분	주요내용
추진방안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모든 생활문화센터의 등록을 의무화
장점	문체부 및 중앙정부(생활 SOC) 건립 지원을 받은 시설의 모니터링 가능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생활문화센터의 현황까지 범위 확장 가능
단점	행정 절차 추가로 인해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조성의 동력 저하

## 나.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는 강제성을 띄지 않는 방안으로 지자체가 문체부에 인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역문화진흥원과 같은 생활문화센

터 운영 지원기관이 일정한 평가를 거쳐 인증하는 방식을 추진이 가능하다. 생활문화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 공간과 최소한의 운영조건을 달성하면 정부가 인증하는 생활문화센터로 기능하는 방식이다. 유사한 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베키니아 호텔체인 가맹’이 있다. 생활문화센터가 유사한 형태로 인증제를 추진하게 되면 지자체 생활문화센터 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기대할 수 있다.

인증제는 강제성이 없기에 초기 인증 유입을 위해 운영 지원기관의 공모사업에 우선권(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제와 동시에 도입을 고려해야한다. 특히 건립 및 조성의 초기단계이거나 계획을 하는 단계의 지자체의 경우 사업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제는 2~3년에 한 번 재 인증을 받는 형태로 계획하여 건립 및 조성 지원 시 필수 공간으로 조성한 부분과 안정적인 운영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인증하는 생활문화센터로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지자체는 생활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게 되고, 이는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참여율을 높이게 하는 간접적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는 것은 생활문화센터에 관심이 낮은 지자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건립 및 조성 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생활문화센터도 원치 않으면 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기에 자칫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도화 한 인증은 법적 의무와 법적 임의로 나뉘는데 의무는 주로 안전과 품질검사 등에 행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법적 의무 인증제는 대표적으로 “무대시설안전진단(공연법 근거)”, “카지노전산시설의검사(관광진흥법 근거)”가 있다. 법정 임의 인증은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 향상 촉진을 위해 임의적으로 받는 인증으로 문체부는 “문화상품의품질인증(문화산업진흥기본법 근거)”, “문화관광해설사양성교육과정인증(관광진흥법 근거)”, “도서·문화전용상품권인증(문화예술진흥법 근거)” 등이 있는데 제품 또는 자격에 대한 인증이 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인증제를 추진할 경우 베키니아 호텔 체인의 사례처럼 ‘협업’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 제도의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4-18〉 생활문화센터 인증제도(안)

구분	주요내용
추진방안	문화체육관광부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원기관(예:지역문화진흥원)이 일정한 평가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 도입.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배키니아 호텔체인 가맹'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 가능
장점	건립 및 조성 지원을 받은 시설의 경우 정기적인 인증을 받도록 건립 지원 시 필수 제도로 제안 가능 (2년마다 한 번 등) 건립 시 요구되었던 필수공간 등을 유지하는지 모니터링이 가능 생활문화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으며 현재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지자체를 유인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음
단점	건립 및 조성 지원을 받은 시설 중 인증을 원하는 시설에만 적용이 가능 (강제성 없음)
보완방안	성과대회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추진함으로 참여 동력을 높임 (가칭)생활문화센터 협회 등 네트워크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협력망 구축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

#### 다. 생활문화센터 평가제

생활문화센터의 건립 및 조성은 생활문화 정책과 문화기반시설 정책의 복합적인 성격 을 띄고 있다. 생활문화센터가 건립 또는 조성되는 것은 시설로서의 추진이지만 이후 운영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생활문화 정책 방향에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생활문화센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생활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현황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이하 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량, 정성 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기에 생활문화 정책 전반을 평가 및 현황파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이 생활문화를 가장 최소한으로 영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모니터링 한다는 측면에서 정책 효율성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다. 또한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성과를 뚜렷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지자체 합동평가의 지표는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생활문화센터가 모든 지자체에 건립 또는 조성된 이후에 적용이 가능하다.

주요 지표로는 생활문화센터 개관일, 프로그램 수, 운영 동호회 수, 만족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조성 수가 많지 않은 초반에는 '생활문화시설(또는 센터) 조성 증가율', '생활

문화동호회 지원 수/동호회원의 만족도' 등의 지표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정량지표 개발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표 4-19〉 생활문화 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안

구분	주요내용
추진방안	지자체 합동평가 내 지표를 통한 평가
장점	생활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정책 전반을 정책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음. 지자체의 정책 반영 및 수행을 강하게 담보할 수 있고 생활문화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정책 전반의 성과 확인 가능
단점	지자체 합동평가의 지표는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함. 생활문화센터와 관련된 개관일, 프로그램 수, 운영 동호회 수, 만족도 등은 지표가 될 수 없음.
보완방안	생활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생활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함 초반 지표로 '생활문화시설(또는 센터) 조성 증가율'이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수/동호회원의 만족도' 등의 지표를 추가로 하여 지속적인 정량지표 개발이 가능함

### 라. 생활문화 성과평가 및 포상제

지자체가 수행하는 생활문화 정책과 지역문화진흥원의 공모를 받은 생활문화 프로그램, 생활문화센터를 대상으로 성과평가제도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기존의 포상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생활문화센터 우수 운영 시설에 대한 지자체 대상 포상을 추진하고 있어 실무 담당자나 위탁운영조직, 주민조직에 대한 동력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로 그쳐 실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생활문화 정책, 생활문화센터 운영,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성과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관련 포상을 지자체, 담당자 또는 위탁운영기관, 주민협의체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점으로는 생활문화의 경우 지자체마다 정책 반영 특성과 예산 확보에 차이가 있어 공정한 평가 추진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차원에서는 자칫 공모사업 추진에만 집중하게 될 수 있어 자율적인 운영 보다 중앙정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고자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제도 초반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와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시행하며

관련 지표체계를 고도화 시킨 이후 생활문화 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등을 함께 추진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가 단독으로 건립 또는 조성한 생활문화센터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20〉 생활문화 성과평가 및 포상제

구분	주요내용
추진방안	지자체가 수행하는 생활문화 정책과 지역문화진흥원의 공모를 받은 생활문화 프로그램, 생활문화센터를 대상으로 성과평가제도를 실시
장점	생활문화센터 및 운영주체, 생활문화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문화정책 및 센터 운영의 동력이 될 것
단점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지자체의 정책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보완방안	지역문화진흥원의 공모사업 대상 기관 및 담당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추진하여 인증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평가 포상제를 도입





생활문화 범위 설정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 방안

제5장

결론



# 제1절 연구 결과

## 1. 생활문화의 정의

생활문화의 법적 정의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과 문화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점진적으로 해석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며, 생활문화 분야를 통해 창의적으로 생산되는 새로운 문화 장르, 문화 특성에 대한 다양한 존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다만 생활문화에 대한 정책적 개념의 정립으로 정부 지원의 대상 범위를 설정하였다. 기존에 분류해온 행위자적 관점, 장르적 관점, 공간/시간적 관점, 활동의 방식 관점을 기본 토대로 하여 몇 가지 기준을 근거로 세부 근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립하였다.

즉, 생활문화의 정책 개념을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구분 없이 일상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장소의 구분 없이 행하는 융·복합 문화 활동으로 재정립 하였다.

〈표 5-1〉 생활문화의 정책적 개념 재정립 결과

관점 구분	내용 및 특성
행위자 (대상) 관점 (누가)	모든 국민 (개인 활동, 공동체의 활동 모두 포함)
시간적 관점 (언제)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에 구분 없는 일상성
공간적 관점 (어디서)	장소의 구분 없이 어디서든 가능
장르적 관점 (무엇을)	문화예술진흥법 상 '예술활동', 공예활동 등 사회 통념상 예술 분야의 범주에 포함되는 융복합 문화 활동
활동방식의 관점 (어떻게)	문화, 예술 활동을 수행하는 활동
목적의 관점 (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하지만 정책사업 추진 시 이 6개 분류체계를 모두 반영하는 것 보다, 3~4개의 기준을 중심으로 일상성, 참여성 및 지역문화정책의 주요 방향성인 공동체성을 추가로 반영해 지침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지만 논의가 추진되기 어려웠던 '장르적 관점'은 몇 가지 근거로 접근을 하였다. 해당 근거는 총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민간이 관심을 갖지 않지만 보존과 진흥이 필요한 문화 활동 및 예술분야는 생활문화분야로 인정하는 방안, 두 번째는 투기, 사행성을 뿔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사례가 있는 활동은 제외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역문화진흥 정책 범위 내에서 확정한다는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지역문화진흥원이 분류한 생활문화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축소하였다.

〈표 5-2〉 생활문화 장르적 분류

대분류	중분류
생활 예술	미술, 문학, 무용, 댄스, 서양 음악, 전통 음악, 연극, 사진, 만화, 웹툰, 영화, 건축
생활공예	생활공예
생활지식언어	인문/역사/경제, 언어

생활문화의 장르적 관점에 따른 분류는 법을 근거로 하는 큰 범위의 장르이다.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융·복합된 분야도 정책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분류가 생활문화센터가 추진해야 하는 주요 사업의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다. 생활문화센터는 주민의 모든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해당 분류는 정책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최소한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범위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생활문화센터 최소 기준

### 가.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조성 기준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조성 지원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 약 6년 간 추진되어 왔다. 건립 및 조성의 방향성은 기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권고해 왔고,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대여, 장비대여를 주요 목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추진으로 복합 시설 신규 건립 시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고, 기 건립된 생활문화센터가 단순 공간대여가 아닌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조성 시 공간 분류체계에 대한 검토와 유형 구분을 재구성 하였다.

〈표 5-3〉 생활문화센터 공간구성 변경(안)

구분	유형 특징	필수시설 변경 1안	필수시설 변경 2안
단독형	유휴건물을 단독으로 활용하여 조성되거나 신축으로 전체 공간을 생활문화센터로 건립한 유형 야외공간을 특성화공간으로 조성한 사례가 많은 특징을 가짐	마주침공간 1개소 이상 -가변형 가능, 최소 50㎡ 이상 확보 방음공간 1개소 이상 -최소 30㎡ 이상 확보 마루공간 또는 학습공간 1개소 이상 -가변형 가능, 가변시 최소 30㎡공간 확보	마주침공간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간 대비 8% 이상 확보 방음공간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간 대비 5%이상 확보 마루공간 또는 학습공간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간 대비 5% 확보
문화 복합형	문화관련 시설이 모여있는 형태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등 문화관련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된 유형임 마주침공간, 학습공간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넓은 특징을 가짐	단독형과 동일 ※단, 생활문화센터 전용 공간으로 확보, 타 문화기반시설과 공용 공간 조성 시 인정하지 않음	마주침공간 또는 학습공간 - 가변형 가능,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간 대비 8% 이상 확보 방음공간 -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간 대비 5%이상 확보 마루공간 -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간 대비 5%이상 확보 ※단, 생활문화센터 전용 공간으로 확보, 타 문화기반시설과 공용 공간 조성 시 인정하지 않음
행정 복합형	주민센터, 체육시설, 복지시설, 여성회관 등과 함께 건립 또는 조성된 형태 마주침공간, 학습공간의 활용율이 높으며 방음공간이 미흡할 시 민원 발생율이 높은 특징을 가짐	마주침공간 또는 학습공간 1개소 이상 -가변형 가능, 가변시 최소 50㎡ 이상 공간 확보 방음공간 또는 마루공간 1개소 이상 -최소 30㎡ 이상 확보	마주침공간 또는 학습공간 -가변형 가능,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간 대비 8% 이상 확보 방음공간 또는 마루공간 -전체 생활문화센터 조성공간 대비 5%이상 확보
기타 복합형	공공시설, 문화시설 회 시설과 함께 있는 형태 근린상가 등과 함께 조성되어 접근성이 높지만 방음, 층간소음 등에 유의한 형태로 조성이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음	행정복합형과 동일	행정복합형과 동일

## 나.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라인

생활문화센터는 기존 문화기반시설과는 다르게 운영의 시간적 범위가 유동적이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문화 수요에 맞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생활문화센터의 모든 운영 지침은 지자체의 소관이지만 행정기관의 특성상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해당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낮고, 전문성 있는 조직에 위탁을 하거나 주민협의체에 자율적 운영을 맡겼을 때 생기는 갈등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표 5-4>와 같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필요 시 전담기관을 통한 공모사업, 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표 5-4> 생활문화센터 운영 최소 가이드라인

운영 영역	세부영역	구체적 실무 영역
운영계획	지역현황 분석	센터 이용자층 분석, 이용자 욕구 조사
	비전 및 전략 수립	센터의 비전과 이행을 위한 전략 수립
	실행계획 수립	세부 프로그램 등 세부계획 수립
	연차별 계획 수립	연차별 추진 계획, 조직개선방안 등 수립
인력	운영조직	기본 조직 구조, 상근조직과 운영위원회
	인력확보 및 관리	자격기준, 채용방법, 직원교육, 직원복지 등
	업무분장	업무분장 내용, 주요 업무
공간운영	기본방향 수립	운영시간, 공간대관 방식, 특성화공간 검토
	시설 안전관리	안전점검, 관리, 보험가입, 화재 및 전염병 예방 등
프로그램	정책프로그램 참여	공모사업 추진
	주민 제안 프로그램	주민 제안 의견 수렴 및 프로그램화 추진
	지역 연계활동	타 기반시설 및 문화 조직과의 협력
홍보	이용자 조사와 개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용자 유치 등
	홍보	홍보 방법, 대상 등 계획 수립
재원조성	예산편성과 수립	예산편성, 예산 수립
	예산 확보	지자체 보조금, 공공기금, 중앙정부 공모사업, 자체수입, 후원금 등
성과관리	성과관리	성과관리 방식, 방법 기획
	피드백	시기 및 방법, 대상 등 검토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2019),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북」, 8쪽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영역”의 틀에서 수정 제안

## 제2절 정책 과제

### 1.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건립·조성 과제

#### 가. 정책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

생활문화센터는 건립 및 조성 초기부터 주민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적 측면에 집중해 왔다. 때문에 문화기반시설이라는 인식보다 연습실, 회의실로 역할이 정해지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문화센터로의 인식이 생기는 등 운영 주체의 방향성에 따라 주민의 이해도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생활문화센터가 주민의 생활문화를 지원하고, 공동체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활문화센터가 타 문화기반시설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는 점에 주목하여 문화예술 관람, 교육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임을 강조하여 지자체 정책 개발과 생활문화센터 건립 또는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정책 홍보는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타 문화기반시설,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직접 홍보를 하는 것과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방향을 기획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직접 홍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건립·조성 사례를 노출하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장기적인 방향은 생활문화센터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건립 및 조성 현황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내실을 다져 많은 이들이 생활문화센터에 유입되게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인 공간 조성,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도록 전문인력을 통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재 관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건립·조성 및 운영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모델을 홍보하고, 향후에는 지역 간의 인력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가칭)생활문화센터 협회 등이 자발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공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 나. 문화의집 대상 변경 조성 검토

문화의집은 생활문화센터와 가장 유사한 '지역문화 활동시설'이다. 2021년 현재 102개소가 운영 중이며 필수 공간으로 문화관람실, 문화시청각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정보자료실을 구축했는데 이 중 문화사랑방은 생활문화센터의 마주침공간, 문화창작실은 생활문화센터의 특성화 공간인 공방 등과 유사한 특징이 있다.

문화의집 조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종료되고 지방이양 된 이후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조성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성격의 유사성과 문화의집 내부 시설의 필요성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생활문화센터로 변경 된 사례도 발생하였다. 때문에 문화의집을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문화의집이 조성된 지 6년 이상이 지났고 불필요한 내부 시설의 처리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활SOC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해당 시설의 생활문화센터화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조성가점을 부여해 사업 추진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정책지원을 받아 조성한 시설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예외적으로 한시 허용하는 방침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설 근거법도 정리가 필요하다.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지역문화활동시설과 「지역문화진흥법」 내 생활문화시설 간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일부는 「지역문화진흥법」 내의 '생활문화시설'의 종류로 변경을 하여 시설의 지역성을 강조하기 보다 '생활문화' 등 역할 수행의 관점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공연장, 미술관·박물관 등을 '지역 공연장' 등으로 표현하지 않듯 지역문화활동시설도 역할 관점에서의 정리를 추진하고 지역문화진흥정책 내에서 분류하여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생활문화센터 모니터링 제도

기 조성된 생활문화센터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수요와 특색 있는 문화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정부 지원을 통한 건립 또는 조성 당시의 기준을 이행하고 있는지, 국민의 문화 향유 방식의 변화로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모니터링을 통한 생활문화센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네 가지 방안을 도출하였다.

생활문화센터의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방안은 ‘등록제’와 ‘인증제’가 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성의 유무다. 등록제는 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얻을 경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건립 및 조성한 생활문화센터도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증제는 생활문화센터의 협력망 구축의 방식으로 일종의 체인을 갖게 되는 것인데, 강제성이 없기에 모든 생활문화센터를 모니터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통해 건립 또는 조성된 생활문화센터에 한해서는 명확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지역 간 생활문화센터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자체 합동평가의 경우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센터 전반에 대한 성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지표를 적용하기 어렵고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빠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생활문화 성과평가 및 포상제는 앞서 제안한 세 가지 제도와 동시에 추진할 수 있으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여 추진할 수 있어 가장 현실성이 높은 방안이다. 또한 도입 6년차에 진입한 생활문화센터의 성과에 대한 직접 인센티브 제도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성과평가 및 포상제는 생활문화 정책 파트에서 지자체 대상,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대상,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파트에서 지자체 대상, 위탁운영 기관 혹은 주민협의체 대상, 그리고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생활문화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과평가를 하는 데 있어 사전 연구를 통한 지표 개발, 현황 파악 등이 필요하므로 도입 방식과 시기를 재검토 해 봐야 한다.

〈표 5-5〉 생활문화 정책 및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제도(안)

	생활문화센터 등록제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지자체 합동평가	생활문화 성과평가 및 포상제
방안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모든 생활문화센터의 등록을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원기관(예: 지역문화진흥원)이 일정한 평가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 도입.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베키니아 호텔체인 가맹'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 가능	지자체 합동평가 내 지표를 통한 평가	지자체가 수행하는 생활문화 정책과 지역문화진흥원의 공모를 받은 생활문화 프로그램, 생활문화센터를 대상으로 성과평가제도를 실시
장점	문체부 및 중앙정부(생활 SOC) 건립 지원을 받은 시설의 모니터링 가능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생활문화센터의 현황까지 범위 확장 가능	건립 및 조성 지원을 받은 시설의 경우 정기적인 인증을 받도록 건립 지원 시 필수 제도로 제안 가능 (2년마다 한 번 등) 건립 시 요구되었던 필수공간 등을 유지하는지 모니터링이 가능	생활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정책 전반을 정책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음. 생활문화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정책 전반의 성과 확인 가능	생활문화센터 및 운영주체, 생활문화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문화정책 및 센터 운영의 동력이 될 것
단점	행정 절차 추가로 인해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조성의 동력 저하	건립 및 조성 지원을 받은 시설 중 인증을 원하는 시설에만 적용이 가능	지자체 합동평가의 지표는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함. 생활문화센터와 관련된 개관일, 프로그램 수, 운영 동호회 수, 만족도 등은 지표가 될 수 없음.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지자체의 정책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보완 방안	-	성과대회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참여 동력을 높임	생활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생활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함 초반 지표로 '생활문화 시설(또는 센터) 조성 증가율'이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수/동호회원의 만족도' 등의 지표를 추가로 하여 지속적인 정량지표 개발이 가능함	지역문화진흥원의 공모사업 대상 기관 및 담당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생활문화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추진하여 인증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평가 포상제를 도입

### 3. 연구 한계

본 연구는 생활문화의 개념 재정립을 통해 생활문화센터의 건립 및 조성 방향성과 운영 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를 위해 현장조사와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를 비롯하여 대국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의견이 모든 생활문화센터의 현황을 반영하고 있진 않다.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역과 생활문화센터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생활문화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상에서 정의를 명시 하였지만, 이 정의가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양식이 발전하는 것에 발맞춰 생활문화를 영위하는 방식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특색에 따라 인지하는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의 차이도 존재함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책은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생활문화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민의 주도로 정책 개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센터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생활문화 정책 사업 또한 연계 분석이 필요하나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생활문화 정책 사업에 대한 분석은 지역의 생활문화 정책 현황과 향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다. 현재 주로 생활문화센터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에 시설의 건립·조성 지침과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는 향후 후속 연구에서 다룰 수 있길 바란다.



---

## 참고문헌

### 〈단행본〉

- 이병태(2016),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 임광진(1988), 『생활문화 프로그램』, 정음사.

### 〈논문 및 연구보고서〉

- 강수현(2020),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보정역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경희사이버대학교 연구지원팀(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관계부처 합동(2021),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 교육부(2021), 「2020년 평생교육통계조사」.
- 김나영·유영미(2020), 「생활문화 관련 조례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1호.
- 김면(2016). 「독일의 문화정책과 국가브랜드 전략」. 『문화콘텐츠연구』 제8호.
- 김세훈·서순복(2015), 「지역문화진흥조례 제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27호.
- 노영순(2016),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재청(202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2006), 「문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연구책임:강윤주.
- 문화체육관광부(2014), 「생활문화센터 가이드북」.
- 문화체육관광부(2017),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업무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2017),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연구책임: 최혜자.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 공연예술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년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0년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0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2018). 「2018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2019), 「생활문화센터 운영 가이드북」.
-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2020), 「2020 생활문화 실태조사 및 효과성 연구」.
- 박소현(2012), 「박물관 설립·등록기준 및 평가인증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재옥(1999), 「등록제도에 관한 현행법 검토」, 『법제 통권』, 제496호.
- 배준규(2010),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문화정책」, 『프랑스문화연구』, 제20호.
- 양진열(2014), 「생활문화형성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역할제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여성가족부(2021), 「20년말 기준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
- 유지연(2018), 「생활문화공간조성을 통해 본 생활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2권 2호.
- 이미애(2017), 「일본의 고령화와 공민관의 역할」, 『일본어문학』, 제79호.
- 이장섭(1993), 「전통생활문화 실태조사 조사시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제5집.
- 전병태(201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원봉사자 활동 지원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광렬(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광호(2015),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지역문화진흥원(2018), 「생활문화시설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 추미경.
- 지역문화진흥원(2019),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안 연구」, 연구책임: 추미경.
- 지역문화진흥원(2021). 「2020 생활문화 실태조사 및 효과성 연구」, 연구책임: 박찬원.
- 지역문화진흥원(2021), 「2021년 생활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 사업내용서」.
- 최혜자(2018), 「지금 다시 짚어보는 생활문화의 개념」, 생활문화 토론회: 지역이 문화다 생활문화와 지역화 발제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1991), 「생활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 행정안전부(2020),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

###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nile.or.kr/contents/contents.jsp?bkind=html&bcode=EADADAA&bmode=view&idx=EADADAA>)
- 국민체육진흥공단  
(<https://www.kspo.or.kr/kspo/main/contents.do?menuNo=200104>)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main.do](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네이버 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33649>)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중점관리 대상사업 설명)  
([https://mcst.go.kr/kor/s\\_open/realnmPolicy/realnmPolicyView.jsp?pSeq=170](https://mcst.go.kr/kor/s_open/realnmPolicy/realnmPolicyView.jsp?pSeq=170))
- 영화진흥위원회  
(<https://www.kobis.or.kr/kobis/business/mast/thea/findAreaTheaterStat.do>)
- 위키피디아 (<https://fr.wikipedia.org/>)
-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https://www.mext.go.jp/>)
- 일본 e-gov 법령검색 홈페이지([elaws.e-gov.go.jp](http://elaws.e-gov.go.jp))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krmedia.org/pages/page\\_123.php](http://www.krmedia.org/pages/page_123.php))
-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 한국문학관협회 (<http://www.munhakwan.com/>)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https://kaswc.or.kr/centerlist>)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서점on (<http://www.booktown.or.kr/>)
- e나라표준인증(<https://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 〈신문기사〉

- 경상일보(2021.04.27.), “[우리동네 새공간 생활문화센터] 지역민 주도로 ‘문화마중물’ 역할”





---

# ABSTRACT

## **The Scope of Culture-into-Life and the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Culture-into-Life Centers**

Nho Soo-Kyoung·Son Yu-jin

In 2014, South Korea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a culture-into-life (CIL) policy with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and the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Since then, the country has promoted this culture-into-life policy for people based on the culture-into-life center construction project.

The concept of culture-into-life is based on the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According to Article 2 (Definition) of the same Act, culture-into-life (CIL) refers to tangible and intangible activities where local residents engage in voluntarily or on a daily basis to meet their cultural needs. Used in operating CIL centers and CIL policy projects, this legal definition is too broad to understand and apply. In this regard, this study reviewed the scope of CIL and reestablished the basis for its policy use. Based on this goal, this study also reviewed the standards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CIL centers.

This study was based on literature analysis, on-site research at CIL centers, interviews with project managers, and surveys with the public and experts in related fields.

For the definition of culture-into-life, data from 2014, when the legal basis for the CIL policy was established, to 2021 was reviewed. Additionally, analysis and on-site research was carried out for current CIL centers as of December 2020.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concept of CIL was re-defined in six perspectives: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doers, it is defined to include all the activities of ordinary citizens, amateur artists, individuals, and communities.

Second, from the temporal perspective, it is described as routine, which does not distinguish working hours from leisure time.

Third, from the spatial perspective, CIL is defined as something that can be enjoyed anywhere, regardless of location.

Fourth, the perspective of genres explains that CIL is an integrated cultural activity that i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art in terms of social norms, such as arts and craft activities specified in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Fifth, the perspective of activity methods interprets that CIL should be engaged in rather than simply being watched. In other words, those who enjoy CIL should participate directly in the process of planning cultural activities.

Sixth, based on the perspective of purpose, CIL activities should have the purpose of cultural participation rather than commercial purposes.

In addition, this study classified facility types to develop the minimum standard for establishing CIL centers into the independent type for CIL centers using a single vacant building as a whole; the cultural integration type for those created with culture-related facilities; the administrative integration type for those with other administrative facilities, including community centers, sports facilities, welfare institutions, and women's centers; and the other type for those established with general commercial facilities, such as public facilities, cultural facilities, and shopping malls. The study suggests that each facility secures a resident community space larger than 50 m<sup>2</sup>(or 8% or more of the entire space) for free communication, and sound proof space, space with hard wood floors, and study rooms larger than 30m<sup>2</sup> (or 5% or more of the total space).

The study also suggests four measure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CIL centers:

First, a system for CIL center registration should be introduced to make the registration of CIL centers, which is specified in the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mandatory. Since CIL centers are operated and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the central government cannot obtain exact inform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se center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CIL centers first through a registration system. As they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 law must be changed to make it mandatory.

Second, a system for CIL center certification is required fo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evaluate and certify CIL centers based on a set process. This system will enable the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standards and operations of the facilities, while there is no obligation.

Third, new CIL-related criteria can be added to the existing system of Combined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can be promoted by evaluating various aspects, including the increasing number of new CIL centers and the use of these centers. The criteria applied to Combined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 must be equally applicable to all local governments. Since not all local governments have CIL centers, the evaluation criteria should be developed through a meticulous process.

Fourth, the CIL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ward system should be further improved. This system will reward local governments when their CIL policies and centers are operated with excellent results. Introducing this system together with the CIL center certificate system will allow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CIL centers and to award good-performance centers prizes, encouraging local governments to better implement relevant policies.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CIL microscopically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policy projects, failing to reflect the scalability and creativity of CIL. CIL changes continuously according to human lifesty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stently monitor what types of CIL are enjoyed from the viewpoint of policy. To this end, the government needs to support local governments and develop policies for the creation and proper operation of CIL centers. This study did not investigate CIL policies other tha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IL centers, which are expected to be examined in follow-up research.

## **Keywords**

Culture-into-life, Culture-into-Life Centers



부록





# 부록 1 대국민 설문조사 양식



##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시설 인식 대국민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 관광 분야의 조사, 연구를 통해 정책개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시설 인식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반드시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 7.

주 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 임 연 구: 노수경 연구원 (02-2669-8473)  
조 사 업 체: 엠브레인 퍼블릭

설문조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답례제공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 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해당 설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② 응답자의 정보는 답례제공(성명, 연락처)시 사용합니다.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선택항목: 답례제공을 위한 성명, 연락처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①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는 답례제공 후 즉시 파기됩니다.

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①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답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안내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하시면 아래에 체크 해 주십시오

선택항목 동의(제3자 제공) 성명, 연락처

기본 정보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② 여자

SQ2. 귀하의 연세는 현재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SQ3. 귀하의 현 거주 시·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세종시 포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3-1. 귀하의 현 거주 지역은 어떤 유형에 속해 있습니까?

①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동지역      ② 일반 시의 동 지역      ③ 읍/면 지역

SQ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중·고등학생                                      ② 대학생/대학원생                                      ③ 주부    ④ 자영업  
 ⑤ 회사원/전문직/노무·서비스직                                      ⑥ 은퇴자/무직    ⑦ 공무원  
 ⑧ 교직원    ⑨ 기타

문화기반시설 이용 실태와 생활문화센터 이용 경험

문01. 귀하께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래의 문화시설을 직접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각 연도별로 이용하신 적이 있다면 '예', 이용한 적 없다면 '아니요'에 체크해 주십시오.

항목	2019년	2020년	2021년
① 박물관·미술관			
② 공연장(문예회관, 야외음악당 포함)			
③ 영화관			
④ 도서관(작은도서관 포함)			
⑤ 문화의 집			
⑥ 청소년문화의집			
⑦ 문화원			
⑧ 생활문화센터			
⑨ 문학관			









## 부록 2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양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시설 인식 전문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 관광 분야의 조사, 연구를 통해 정책개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시설 인식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반드시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 7.

주 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 임 연 구: 노수경 연구원 (02-2669-8473)  
조 사 업 체: 엠브레인 퍼블릭

설문조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답례제공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 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해당 설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② 응답자의 정보는 답례제공(성명, 연락처)시 사용됩니다.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선택항목: 답례제공을 위한 성명, 연락처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①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는 답례제공 후 즉시 파기됩니다.

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①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답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안내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하시면 아래에 체크 해 주십시오

선택항목 동의(제3자 제공) 성명, 연락처











## 집필내역

---

### 연구책임

노수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장, 제2장 제2절, 제3장, 제4장, 제5장, 연구총괄

### 연구진

손유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위원: 제2장 제1절, 제3절

### 연구 참여

이종화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 제2장 제2절, 제3절

## 생활문화 범위 설정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 방안

---

발행인 김대관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1년 10월 15일

발행일 2021년 10월 15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873-7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1.e11>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노수경(2021), 생활문화 범위 설정 및 생활문화센터 건립·운영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http://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1.e11>

